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I

－ 孝宗代 －

발 간 사

이번에 발간된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해 절실한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한 제주역사 편찬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조선후기 제주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1차 사료인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 정리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승정원의 일기체 기록으로, 국왕의 동정과 국정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정치의 주요 현안 자료나 지방에서 올린 상소문 등을 원문 그대로 수록한 1차 사료입니다. 《승정원일기》는 1999년 4월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UNESCO)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총 3,245책에 2억4천250만자가 기록된 단일기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편년체 역사 기록물로서, 888책 5천400만자의 《조선왕조실록》에 비해서도 무려 4배나 되는 분량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는 역주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작업 성과물을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할 뿐만 아니라 왕대별로 묶어서 책자로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은 그 첫 작업으로, 《승정원일기》 효종대(1649~1659)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한 성과입니다.

본서에 소개된 《승정원일기》의 효종대 제주기사는 총 158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가 39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통해 제주 역사를 더욱 알차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목사를 비롯한 삼읍 수령의 인사 및 동향, 마정(馬政), 진상, 유배인 등과 관련된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출·정리된 《승정원일기》 제주 관련 기사들은 원문과 함께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에 탑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간서적과 인터넷 아카이브 탑재를 통해 제주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및 시민들에게 원문 1차사료를 쉽게 해독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함으로써 제주학의 전문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홍기표, 김일우,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기표 선생님께서 해제 및 출간 교열 작업에 이르기까지 손수 번거로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자료집 후속편 발간을 비롯해서 제주역사 기초사료의 수집 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제주연구원 원장 **강기춘**

해 제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관청은 승정원이다. 그 승정원에서는 왕에게 올리는 모든 문서와 왕이 신민에게 내리는 모든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 간에 이루어지는 정책 토론 및 심의 결정과 경연 등의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를 낱짜별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승정원일기》이다.

‘왕명 출납’의 업무는 조선 건국 직후 반포된 관제에 의하면 고려의 제도를 이어 받은 중추원의 속아문인 승지방에서 담당하였다. 물론, 이때의 중추원은 왕명 출납 이외에 군기(軍機)도 관장하는 강력한 기구였다. 그러나 왕자의 난 이후 태종이 정권을 장악하자, 1400년(정종 2) 4월 중추원의 기능을 축소, 분할하였다. 군기의 사무는 의흥삼군부로 이관하고, 왕명 출납을 위하여 승지방을 승정원으로 독립시켰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는 이 시기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이 불타면서 200여 년간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32년간의 일기 역시 1624년(인조 2)에 있었던 ‘이괄의 난’ 때 대부분 유실되어 현재는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순종 4) 8월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승정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명이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등으로 바뀌어 갔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명칭도 각각 달리 부르게 되었지만, 승정원의 기능은 계속 이어가면서 일기를 남겼다. 현재 전하는 《승정원일기》는 모두 3,24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 일기의 명칭과 책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승정원일기의 명칭과 책수

명 칭	책수	기 간
승정원일기	3,047	1623. 3. ~ 1894. 6.
승선원일기	4	1894. 7. ~ 1894.10.
궁내부일기	5	1894.11. ~ 1895. 3.
비서감일기	8	1895. 4. ~ 1895.10.
비서원일기	115	1895.11. ~ 1905. 2.
비서감일기	33	1905. 3. ~ 1907.10.
규장각일기	33	1907.11. ~ 1910. 8.

《승정원일기》는 무엇보다 매일의 기록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를 통해 하루의 정치, 한 달의 정치, 일 년의 정치 흐름을 당시 상황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왕의 동정을 비롯하여 왕정 체제하에서 국정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정치의 주요 현안이 되는 자료나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린 상소문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여 1차 사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승정원일기》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9년 4월 국보 제 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UNESCO)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총 3,245책에 2억4천250만자가 기록된 단일기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편년체 역사 기록물이다. 888책 5천400만자의 《조선왕조실록》에 비해서도 무려 4배나 되는 분량이다.

《승정원일기》의 원본은 활자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초서(草書)로 직접 손으로 써서 작성된 것이어서 해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1961년부터 1977년까지 원본의 초서를 해서(정자체)로 고치고 구두점을 달아 영인본 144책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이 영인본의 한자를 전산 입력하기 시작해 2015년 12월 드디어 승정원일기 전 내용이 DB화 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4년부터 《승정원일기》에 대한 한글 번역 작업에 들어가 2030년대 완역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인조(1623~1649), 고종(1864~1907), 순종(1907~1910) 때의 일기가 완역되어 있다. 그리고 효종 즉위년(1649) 5월(13일~30일)과 영조 때의 일부 기간(즉위년 9월~3년 9월)이 번역되어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

이리하여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승정원일기》 한문 원문 전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인조, 고종, 순종대의 전 시기 및 효종, 영조 때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한글로 번역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대한 사료적 가치와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제주에서도 일찍부터 이에 주목하여 그 관련 사업을 펼쳐왔었다. 먼저 관 주도로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1년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제주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상하 2권의 영인본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이 두 권은 영인된 한문 원문이 너무 작게 되어 있고, 희미할 뿐 아니라 연도별 편차 구분도 정리되지 않아 전문적인 학자도 독해하기가 어려웠다. 하물며 번역 없이 영인된 한문 원문만 제공된 책이어서 일반인은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효종’대의 제주

관련 기사 발췌 건수가 83건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동시기 제주 기사는 총 147건(동일 날짜의 기사 중 주제가 다른 내용을 별도의 기사로 계산하면 총 158건)으로 조사되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탈락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민간 주도로 도서출판 제주문화(경신인쇄사)에서 2012년 《승정원일기》 중 제주기사(제주문화총서 58-78) 전질 21권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승정원일기》 원문 중 1623년(인조 1) 3월부터 1825년(순조 25) 12월까지 기간 중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과 ‘추자(楸子)’의 네 검색어로 발췌한 모든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학계 및 관계의 지원 없이 오로지 출판사 편집부만의 힘으로 검색과 편집을 도맡아 21권의 전질을 발간하여 제주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번역 없이 한문 원문만 제공하였기에 역시 일반인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자료이다.

이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는 역주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였다. 물론 그 내용을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뿐 아니라, 왕대별로 묶어 책자로도 발간하기로 하였다. 본서는 그 첫 작업으로 《승정원일기》 효종 대(1649~1659)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한 성과이다.

이 작업에는 제주학 연구 및 역주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낸 전공자 4인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역할분담을 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으며, 제주기사의 채록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는 총 16,39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지막 순종을 제외한 인조에서 고종까지의 기사만 하더라도 16,351건에 달했다. 이는 동시기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 총 1,638건의 10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이 사실을 도표화한 것이 다음의 [표 2]이다.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왕대별로 살펴보면 1,000건이 넘는 다수 기사가 소개된 때는 정조(4,747), 영조(3,951), 고종(1,797), 순조(1,775), 숙종(1,132), 헌종(1,052)의 순이다. 이 중 영조, 정조 때의 기사가 8,698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영정조와 순조 때를 합하면 10,473건으로 전체 기사의 2/3에 달한다. 또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8,775), 대정(3,542), 추자(1,987), 정의(1,537), 탐라(553)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특징은 ‘제주’가 절반이 넘는 다수의 기사가 수록되었으며, ‘추자도’에 대한 기사가 ‘정의현’의 기사보다 많다는 점이다. 또한 대정현의

기사가 정의현보다 두 배 이상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 연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지만 유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표 2]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현황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승정원일기(인조~순종)	8,775	1,537	3,542	1,987	553	16,394
승정원일기(인조~고종)	8,741	1,532	3,538	1,987	553	16,351
조선왕조실록(인조~고종)	1,096	154	204	83	101	1,638

[표 3]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제주	정의(旌義)	대정	추자	탐라	계
인조	302	20	26	2	3	353
효종	139	16	13	1	5	174
현종	213	29(1)	104	4	1	351(1)
숙종	877	116(1)	109	1	29	1,132(1)
경종	104	19	158	3	4	288
영조	2,090	432(2)	940	148	341	3,951(2)
정조	1,908	390(1)	1,691	631	127	4,747(1)
순조	1,183	125(1)	139	305	23	1,775(1)
헌종	321	171(1)	204	354	2	1,052(1)
철종	458	88	47	104	2	699
고종	1,122	118	107	434	16	1,797
순종	34	5	4			43
은대조례	5					5
은대편고	19	(1)				19(1)
계	8,775	1,529(8)	3,542	1,987	553	16,386(8)

본서에 소개된 《승정원일기》의 효종대 제주기사는 총 174건으로 수집되었다. 이 중 중복 기사 27건을 제외하면 총 147건인데, 동일 날짜의 기사 중 주제가 다른 내용을 별도의 기사로 계산하면 총 158건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시기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는 총 47건인데, 이 중 중복 기사 8건을 제외하면 39건에 불과하

다. 《승정원일기》의 158건과 《조선왕조실록》의 39건 기사 중 동일 내용의 기사는 14건이었다. 즉 《조선왕조실록》에만 소개된 제주 기사는 25건이지만, 《승정원일기》에만 소개된 제주 기사는 144건이나 되어 《조선왕조실록》보다 《승정원일기》의 내용이 제주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효종대 제주기사를 두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시기와 내용별 구분을 한 것이 다음의 [표 4]와 [표 5]이다.

[표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효종대 제주기사 시기별 분류

	즉위년 1649	1년 1650	2년 1651	3년 1652	4년 1653	5년 1654	6년 1655	7년 1656	8년 1657	9년 1658	10년 1659	계
조선 왕조 실록	2	2	11	7	3	6	3	1	2	1	1	39
승정원 일기	19	7	26	12	14	8	13	17	18	18	6	158

[표 5]에 의거 《승정원일기》의 효종대 제주기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주목사를 비롯한 삼읍 수령과 관련된 기사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제주목사, 정의현감, 대정현감 등의 관직 제수나 수령 교체 및 추고 청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사에 5배나 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제주 삼읍 수령으로 선임된 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마정에 대한 기록도 50건이나 소개되어 전체의 1/3에 달하고 있다. 매년 세공마 및 진상마 등에 대해 마필 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마의 관리 및 이송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 한 건의 관련 기사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주 마정에 대한 연구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보다 깊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셋째 감귤, 추복 등의 제주 특산물에 대한 진상 기사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데 《승정원일기》에는 다수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반면 자연재해 및 흉년을 당해 그 구휼 과정과 내용에 대한 기록은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가 더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표 5]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효종대 제주기사 내용별 분류

주제	세부 내용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마정	세공마, 진상마	24	•
	제주마 이송 및 타 목장 방목	11	•
	제주마 관리	14	•
	기타	1	•
	소계	50	•
삼읍 수령	관직 제수	23	5
	수령 추고 및 처벌 청원	15	2
	수령 선임 교체 청원	13	3
	수령 추고	5	1
	전 제주목사 동향	6	4
	기타	8	•
	소계	70	15
진상	감귤, 추복 등	8	•
유배	유배 및 이배	5	4
표류인	한인 및 서양인	5	6
안핵어사	장계 및 시취	5	1
자연재해/구휼	풍채, 수재 및 흉년	2	9
기타	노비, 호적 등	13	4
총계		158	39

이상의 특징을 감안하면 효종대 뿐 아니라 조선후기 전 시기에 걸친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 역주는 향후 제주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할 수 있다. 특히 제주에 파견되는 관리에 대해 제수 및 교체 등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해 세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제주목민관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마정, 진상 등의 분야에서 자세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 향후 제주의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리라 여겨진다.

2017년 6월

홍 기 표

□ 일러두기

1. 본서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 제주역사 편찬사업은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고 연차별로 역주 계획을 수립하여 왕대별로 발간할 예정이다.
3. 제주기사의 채록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4. 본서는 그 첫 작업으로 《승정원일기》 효종 대(1649~1659년)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5.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 ‘탈초본’ 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6.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7.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 1) 김일우 : 1649년(효종 즉위) 5월 17일 ~ 1650년(효종 원년) 11월 6일
 - 2) 백종진 : 1651년(효종 2) 2월 13일 ~ 1653년(효종 4) 12월 19일
 - 3) 오창명 : 1654년(효종 5) 2월 22일 ~ 1656년(효종 7) 11월 22일
 - 4) 홍기표 : 1657년(효종 8) 1월 18일 ~ 1659년(효종 10) 4월 20일

목 차

발 간 사..... 1	元年 8月 初7日(戊子) 48
해 제..... 3	元年 10月 13日(癸巳) 50
일러두기..... 9	元年 11月 初6日(丙辰) 52

孝宗

1649年 13	1651年 55
即位年 5月 17日(乙亥)..... 14	2年 2月 13日(庚申) 56
即位年 6月 23日(辛亥)..... 15	2年 2月 20日(丁卯) 57
即位年 6月 23日(辛亥)..... 16	2年 2月 22日(己巳) 58
即位年 6月 23日(辛亥)..... 17	2年 2月 22日(己巳) 60
即位年 6月 23日(辛亥)..... 18	2年 3月 9日(丙戌)..... 61
即位年 6月 24日(壬子)..... 19	2年 4月 25日(辛未) 62
即位年 7月 13日(庚午)..... 21	2年 4月 26日(壬申) 64
即位年 7月 14日(辛未)..... 23	2年 5月 11日(丁亥) 65
即位年 8月 初7日(甲午) 25	2年 5月 11日(丁亥) 66
即位年 8月 17日(甲辰)..... 26	2年 5月 13日(己丑) 67
即位年 8月 18日(乙巳)..... 28	2年 5月 20日(丙申) 68
即位年 8月 26日(癸丑)..... 29	2年 5月 21日(丁酉) 69
即位年 9月 29日(乙酉)..... 30	2年 5月 21日(丁酉) 70
即位年 10月 初4日(己丑) 31	2年 6月 3日(戊申)..... 71
即位年 10月 14日(己亥) 34	2年 6月 5日(庚戌)..... 72
即位年 10月 15日(庚子) 35	2年 6月 19日(甲子) 73
即位年 10月 17日(壬寅) 38	2年 7月 5日(庚辰)..... 74
即位年 11月 初3日(戊午)..... 41	2年 7月 21日(丙申) 75
即位年 12月 初9日(癸巳)..... 42	2年 8月 10日(乙卯) 76
	2年 10月 6日(庚戌) 77
	2年 10月 8日(壬子) 78
	2年 10月 10日(甲寅)..... 80
1650年 43	2年 10月 15日(己未)..... 81
元年 1月 初9日(癸亥) 44	2年 10月 28日(壬申)..... 82
元年 7月 16日(丁卯)..... 45	2年 11月 13日(丁亥)..... 85
元年 7月 16日(丁卯)..... 46	2年 12月 11日(甲寅)..... 86
元年 8月 初4日(乙酉) 47	

1652年	89	5年 9月 21日(丁未)	132
3年 2月 4日(丙午)	90	5年 10月 3日(己未)	135
3年 2月 18日(庚申)	92	5年 12月 12日(戊辰).....	136
3年 4月 19日(庚申)	93		
3年 6月 17日(丁巳)	94	1655年	137
3年 7月 6日(乙亥)	96	6年 2月 23日(戊寅)	138
3年 7月 23日(壬辰)	98	6年 6月 6日(己未).....	139
3年 9月 3日(辛未)	99	6年 6月 21日(甲戌)	140
3年 9月 4日(壬申).....	100	6年 6月 25日(戊寅)	141
3年 9月 24日(壬辰)	102	6年 7月 15日(丁酉)	142
3年 10月 21日(己未).....	103	6年 7月 17日(己亥)	143
3年 10月 26日(甲子).....	104	6年 7月 19日(辛丑)	144
3年 10月 26日(甲子).....	105	6年 7月 21日(癸卯)	145
		6年 8月 2日(癸丑).....	146
1653年	107	6年 8月 17日(戊辰)	147
4年 2月 2日(己亥)	108	6年 8月 20日(辛未)	148
4年 3月 14日(庚辰)	109	6年 8月 20日(辛未)	149
4年 5月 10日(乙亥)	110	6年 9月 6日(丁亥).....	150
4年 閏7月 9日(壬寅).....	111	6年 11月 23日(癸卯).....	151
4年 閏7月 24日(丁巳)	112		
4年 8月 5日(丁卯).....	113	1656年	153
4年 11月 19日(辛亥).....	115	7年 3月 3日(壬午).....	154
4年 11月 24日(丙辰).....	116	7年 6月 11日(戊子)	156
4年 11月 25日(丁巳).....	117	7年 6月 23日(庚子)	157
4年 11月 30日(壬戌).....	118	7年 7月 6日(壬子).....	158
4年 12月 2日(甲子)	119	7年 7月 11日(丁巳)	159
4年 12月 4日(丙寅)	121	7年 7月 12日(戊午)	160
4年 12月 5日(丁卯)	122	7年 7月 18日(甲子)	161
4年 12月 19日(辛巳).....	123	7年 7月 22日(戊辰)	162
		7年 7月 26日(壬申)	163
1654年	125	7年 8月 29日(甲辰)	164
5年 2月 22日(癸未)	126	7年 9月 18日(癸亥)	165
5年 7月 23日(庚戌)	127	7年 9月 21日(丙寅)	166
5年 7月 28日(乙卯)	128	7年 9月 24日(己巳)	167
5年 7月 30日(丁巳)	129	7年 11月 6日(庚戌)	168
5年 9月 18日(甲辰)	130	7年 11月 21日(乙丑).....	169

7年 11月 22日(丙寅)..... 170

1657年 173

8年 1月 18日(辛酉) 174

8年 1月 19日(壬戌) 175

8年 3月 17日(庚申) 176

8年 4月 8日(庚辰) 178

8年 5月 18日(庚申) 179

8年 6月 2日(癸酉) 180

8年 7月 13日(甲寅) 181

8年 7月 13日(甲寅) 183

8年 8月 11日(辛巳) 185

8年 8月 23日(癸巳) 186

8年 8月 25日(乙未) 187

8年 8月 27日(丁酉) 188

8年 8月 28日(戊戌) 189

8年 9月 5日(甲辰) 190

8年 9月 15日(甲寅) 191

8年 12月 2日(庚午) 192

8年 12月 4日(壬申) 194

8年 12月 21日(己丑)..... 195

1658年 197

9年 2月 1日(戊辰) 198

9年 2月 2日(己巳) 199

9年 2月 3日(庚午) 200

9年 2月 4日(辛未)..... 201

9年 2月 5日(壬申)..... 202

9年 2月 13日(庚辰) 204

9年 4月 21日(丁亥) 205

9年 4月 28日(甲午) 207

9年 6月 16日(壬午) 208

9年 7月 27日(壬戌) 210

9年 8月 10日(乙亥) 212

9年 8月 11日(丙子) 213

9年 8月 11日(丙子) 214

9年 8月 23日(戊子) 215

9年 8月 28日(癸巳) 216

9年 9月 日 217

9年 9月 7日(辛丑)..... 218

9年 11月 17日(庚戌)..... 219

1659年 221

10年 1月 16日(戊申)..... 222

10年 2月 24日(乙酉)..... 223

10年 3月 3日(甲午) 224

10年 閏3月 28日(戊子)..... 225

10年 閏3月 28日(戊子)..... 228

10年 4月 20日(庚戌)..... 232

인명 색인 233

1649年



❖ 順治 六年 己丑 五月 十七日 乙亥

- 司饗院副提調鄭維城啓曰, 濟州四月朔膳來到, 而膳狀中大殿物膳, 則捧入於大行大王殯殿, 其餘兩殿所封, 則所當還送, 而越海來遠之物, 不可還送, 捧下于各該司, 以爲前頭, 殯殿祭奠補用之地, 何如? 都提調之意, 亦如此, 而此時不敢草記陳達, 臣待罪例兼提調, 敢此啓稟. 傳曰, 如是處置, 甚當. 依爲之. 【以上司饗院膳錄】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5월 17일(을해)

□ 제주에서 올라온 4월 삭선(朔膳)의 용도에 대한 사옹원(司饗院)의 계

- 사옹원(司饗院)¹⁾ 부제조(副提調) 정유성(鄭維城)²⁾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4월분 삭선(朔膳)³⁾이 도착했는데 삭선의 목록 가운데 대전(大殿)에 올릴 물품은 대행대왕의 빈전(殯殿)으로 들여 넣고 그 나머지 양전(兩殿)에 봉진(封進)할 물건인 경우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멀리서 온 물건인지라 돌려보내기가 마땅치 않아 각 해당부서로 내려 보내 곧 다가올 빈전(殯殿)의 제전(祭奠)에 보태 쓰게 하심이 어떠한지요? 도제조(都提調)의 생각 또한 이와 같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감히 초기(草記)로 아될 수 없어서 신이 제조(提調)를 의뢰 겸하고 있기에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傳教)하기를, “그와 같이 처리함이 매우 마땅하다.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옹원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사옹원, 정유성, 제주, 삭선.

1) 사옹원(司饗院):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2) 정유성(1596~1664):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덕기(德基), 호는 도촌(陶村). 강화 출신. 정몽주(鄭夢周)의 9대손. 한성판윤, 형조판서, 우의정 등을 지냄. 저서로 《은대일기(銀臺日記)》가 있다. 시호는 충정(忠貞).

3) 삭선(朔膳): 각 도에서 매달 초하루에 올린 물품으로 차려서 임금에게 올리는 수라상.

❖ 順治 六年 己丑 六月 二十三日 辛亥

○ 傳于吏批曰, 海外絶島, 尤不可尋常差遣, 極擇改望.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6월 23일(신해)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보낼 관원을 잘 선택해 다시 의망(擬望)하라는 전교

○ 이비(吏批)⁴⁾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는) 바다 밖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인지라 더욱 예사로이 파견할 수 없으니 잘 가려 뽑아 다시 의망(擬望)⁵⁾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제주목사.

4)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5) 의망(擬望):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는 일을 이르던 말.

❖ 順治 六年 己丑 六月 二十三日 辛亥

- 吏批啓曰, 濟州牧使極擇差出事, 傳教矣. 文官堂上中, 除老病有故在外, 可當之人甚少, 承旨中可合人, 竝擬何如? 傳曰, 近侍之人, 似不可擬望, 而字惠絕域之民爲重, 依啓.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6월 23일(신해)

□ 제주목사를 승지(承旨) 중 적합한 사람도 추천할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제주목사를 잘 가려 뽑아 보내라고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문관 당상관(堂上官)⁶⁾ 중, 늙어 병들거나 사고가 있거나 지방에 있는 자들을 제외하면 맡길 만한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승지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울러 추천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 가까이 있는 신하를 의망하는 것은 불가할 듯싶으나, 멀리 떨어진 곳의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롭게 함은 중요하다.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제주목사, 당상관.

6)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 때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계(官階) 또는 그 관원을 말함. 품계로 말하자면, 문관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해당됨.

❖ 順治 六年 己丑 六月 二十三日 辛亥

- 又啓曰, 濟州, 乃絕域莫重之地, 每以武官差送, 民生多被侵害, 故今番, 則欲以文官差送, 而難得可當之人, 不得已承旨竝擬事, 啓稟矣. 臣等竊復思量, 則近侍之人, 似不可擬望, 誠如聖教, 而且念本鎮, 非但治民而已. 海外緩急之際 必須有將才者, 可以爲恃, 前監司金素, 以將才有稱, 曾被儒將之薦, 又經兵使之任. 奇震興, 亦是將薦之人, 并與武弁表著者, 備擬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6월 23일(신해)

□ 제주목사로 김소(金素)·기진흥(奇震興)을 후보자로서 들인다는 이비(吏批)의 계

- 다시 아뢰기를, “제주는 멀리 떨어지고 매우 중요한 지역이어서 매번 무관을 파견하였는데 백성들의 삶이 많은 침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문관을 파견하려 하였는데 일을 맡길 만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승지(承旨)까지 포함해 의망(擬望)할 일을 아뢰었습니다. 신 등이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하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을 의망하기는 불가할 듯싶습니다. 진실로 일전의 전교(傳教)처럼 해야 할 듯하나, 또한 본진(本鎭: 제주)을 생각해보면 다만 치민(治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다 밖 위태롭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급할 때는 반드시 무장으로서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믿을 만합니다. 전(前) 감사(監司) 김소(金素)는 무장으로서의 재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일찍이 유장(儒將)⁷⁾으로 천거되었고, 또한 병사(兵使)의 직임을 거쳤습니다. 기진흥(奇震興)⁸⁾도 역시 무재(武才)가 있는 문신(文臣)이라 마땅히 천거할만한 사람으로, 여타의 무관들과는 차이가 현저한 자입니다. 후보자로 갖추어 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제주목사, 김소, 기진흥.

7) 유장(儒將): 선비의 풍모를 지니거나, 혹은 선비 출신의 무장.

8) 기진흥(1596~1651): 본관은 행주(幸州). 자(字)는 원립(元立). 1644년 갑신년 문과급제. 이후 부사직(副司直)을 거쳐 비변사에 들어감. 1649년에는 지포(紙砲)를 제조한 공으로 통정대부에 가자(加資)됨. 1649년 6월 23일 제주목사로 갔으나, 하루 만에 교체됨. 1651년(효종 2) 경기수사(京畿水使)를 지낼 때 김자점(金自點)의 아들 익(弼)의 모반사건에 연루돼 파직 당함.

❖ 順治 六年 己丑 六月 二十三日 辛亥

○ 以愼天翊爲弘文典翰 …… 奇震興爲濟州牧使 …….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6월 23일(신해)

□ 기진흥(奇震興)을 제주목사에 제수함.

○ 신천익(愼天翊)⁹⁾을 홍문관(弘文館) 전한(典翰)으로 삼고, <중략> 기진흥(奇震興)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신천익, 제주목사, 기진흥.

9) 신천익(1592~1661):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백거(伯舉), 호는 소은(素隱). 1612년(광해군 4) 증광문과 을과급제. 홍문관정자와 이조참의 지냄. 광해군의 실정을 보고 사직한 뒤 전남 영암 은거하던 중 인조반정 후 요직에 제수됐으나, 출사치 않음. 1654년(효종 5) 다시 출사한 뒤 홍문관부제학·대사간·이조참의·한성부우윤 등 역임한 뒤, 귀향함. 문명(文名)도 크게 떨침. 저서로는 《소은유고(素隱遺稿)》가 있음.

❖ 順治 六年 己丑 六月 二十四日 壬子

- 司諫趙贊獻納俞榮正言沈世鼎權大運啓曰, 濟州, 孤島也. 風氣有所隔闕, 王化未盡宣布, 苟非牧守之得人, 必貽生民之毒虐, 聖教極擇差送, 實非偶然, 而新牧使奇震興, 卑諂庸瑣, 見棄於清議久矣. 雖被將薦, 實無其才, 除目一下, 物情驚怪, 請奇震興遞差. 其代, 以有風力廉謹着稱, 可以矯舊弊者擇差, 以慰遠民之心. 答曰, 依啓. 【以上騰錄】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6월 24일(임자)

□ 기진흥(奇震興)의 직임 · 교체 를 청하는 조빈(趙贊) 등의 계

- 사간(司諫) 조빈(趙贊)¹⁰⁾, 헌납(獻納) 유계(俞棨)¹¹⁾, 정언(正言) 심세정(沈世鼎)¹²⁾ · 권대운(權大運)¹³⁾이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고도(孤島)인지라 풍화의 기운이 멀리 떨어져 막힌 바가 있어서 왕의 교화가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수령의 직에 적합한 인사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생민(生民)에게 해악이 미칠 것이니 임금께서 극히 잘 가려 뽑아 보내라는 교지는 진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사 기진흥(奇震興)은 천하게 아침 떨고 용렬하면서도 좀스러워 청의

10) 조빈(1587~?):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계언(季彦), 호는 은성(隱星). 1624년(인조 2) 문과급제. 지평(持平)·사간원정언·홍문관수찬 등 역임. 1636년 병자호란 때 척화를 부르짖고 척화파와 함께 처벌해줄 것을 주장. 인조의 특명으로 평안도사에 임명됐으나, 척화 주장의 사람을 서도(西道)에 돕은 옳지 않다는 조정신하의 간언으로 충청도사로 감. 이후 청의 힐책으로 유배된 적도 있음. 1647년 《서연비람(書筵備覽)》을 지음.

11) 유계(1607~1664): 본관 기계(杞溪). 호 시남(市南).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윤선기(尹宣舉)·이유태(李惟泰)와 함께 충청도 유림의 오현(五賢)으로 칭해짐. 1633년 문과급제. 병자호란 때 척화 내세웠던 일로 임진 유배. 1639년 풀려났으나 은거 후 학문 전념. 이때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씀. 1644년 재등용 이후 유배와 재등용 거듭다 1663년 병으로 사직. 학문적으로는 이이(李瑋)·김장생의 학통 계승. 시호 문충(文忠).

12) 심세정(1610~?): 본관은 청송(靑松). 호는 시약헌(蒔藥軒). 1641년(인조 19) 문과급제. 1642년 이후 춘추사(春秋使)·정언(正言)·장령(掌令) 역임. 1652년(효종 3) 암행어사 지냄. 집의(執義) 때 대청(臺廳)에 있으면서 대비를 인피(引避·물러나 피함)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직됨. 이후 보덕·사간·부교리 거침. 1661년(현종 2) 실록찬수의 공로로 가자(加資)되고, 승지·병조참지·병조참의·예조참의 등등의 관직에 나아감.

13) 권대운(1612~1699):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석담(石潭). 1649년 문과급제. 이후 경·외직을 두루 거친 뒤 1670년 호조판서로 발탁. 1674년 숙종 즉위 이듬해 우의정으로 승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파직·유배된 적도 있으나, 1689년 남인이 재집권하자 등용돼 영의정에 오름. 이때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사사토록 함. 이후 사직.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관련 유배 감. 사후 왕의 특명으로 직첩이 환급됨.

(淸議)로부터 버림받은 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비록 문신(文臣)으로 무재(武才)가 있어 할 만하다는 추천(將薦)을 입었다 하나 실로 재능도 없는데, 제수하는 명단이 단번에 내려오니 세상 사람의 심정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청컨대 기진흥을 직임에서 교체하고 그 대신 청렴과 성실함에 힘쓴다고 현저한 칭함이 있어 구폐를 바로잡을 만한 이를 가려 뽑아 보내야만 먼 지방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조빈, 유계, 심세정, 권대운, 기진흥, 제주목사.

❖ 順治 六年 己丑 七月 十三日 庚午

- 府啓, 北兵使柳廷益, 居官處事, 百無一觀, 徒以善事, 累經闔鉞. 曾爲洪清兵使時, 廣占田土, 多取民怨. 及授濟州牧使之後, 島中物貨, 狼藉鄉市. 貪黷之狀, 人皆唾罵. 加以爲人, 縱恣無忌, 全昧體面, 驕蹇極矣. 如此之人, 不可付以北關專闔之任, 請命罷職. 載寧郡守申晉翼, 本以微賤之人, 猥授字牧之任, 多行不法, 縱恣無忌, 濫率子婦於衙中, 擅用大同木, 自買私馬, 不治之聲, 道內藉藉. 如此之人, 不可在官, 請命罷職. 答曰, 依啓. 柳廷益, 非闔茸武夫, 似不至此, 更加詳聞處之.

❖ 호종 즉위년(1649) 기축년 7월 13일(경오)

□ 유정익(柳廷益)과 신진익(申晉翼)의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司憲府)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 유정익(柳廷益)¹⁴⁾은 관직에 있으면서 일처리가 백에 하나도 불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윗사람을 잘 섬겨 여러 번 변경의 장수 직을 거쳤으며 일찍이 홍청병사(洪淸兵使)를 지낼 때, 전토를 넓게 점유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많은 원성을 받았습니다. 제주목사를 제수 받은 이후 섬안의 물화(物貨)가 지방 장터에 난삽하게 마구 흩뜨리게 하였으니 그 탐하고 더러움의 실상에 사람들 모두 침 뱉고 욕하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됨이 멋대로 방종하면서도 꺼림이 없었으며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교만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북쪽 관문을 지키는 직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을 명하십시오. 재령군수(載寧郡守) 신진익(申晉翼)¹⁵⁾은 본디 미천한 출신으로 외람되이 고을의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자목(字牧)¹⁶⁾)의 직임을 제수 받아 불법을 저지름이 많았고 방종하면서도 꺼림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자신의 가족들을 멋대로 거느려 갔으며, 대동목(大同木)¹⁷⁾을 멋대로 전용하고 스스로 사사로이 말도 사들임으로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원성이 관할 구역에 자자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관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파직을 명하십시오.

14) 유정익(?~?): 본관은 문화(文化).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충청병사(忠淸兵使)·제주목사(濟州牧使) 등을 지냄. 제주목사는 1645년(인조 23) 부임하고, 1647년 떠남. 이 사이에 정의현(旌義縣)의 세공선(歲貢船)이 추자도(楸子島)에서 풍랑으로 침몰되었다고 치계해 임금의 홀전(恤典)을 받아냄. 또한, 제주 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아뢰어 전라도의 진휼 곡식 2천석을 받기도 함.

15) 신진익(1602~?): 본관 미상. 자는 익지(翼之). 34세 때 1636년(인조 14) 무과급제.

16) 자목(字牧):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일.

17) 대동목(大同木): 대동법에 의하여 쌀, 콩 등을 대신하여 바치던 무명을 말함.

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유정익은 천하고 어리석은 무부(武夫)가 아니므로 이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상세히 알아보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북병사, 유정익, 신진익, 대동목, 제주목사, 재령군수.

❖ 順治 六年 己丑 七月 十四日 辛未

- 府啓, 臣等伏承聖批, 以柳廷益, 非闖茸武夫, 似不至此爲教, 臣等竊惑焉. 廷益之貪量驕傲, 人所共知, 臣等請詳言之. 廷益之爲洪清兵使也, 廣占巨庄於水原地, 又作大屋, 多積財貨於其中, 及其濟州遞來之後, 島中物貨, 狼藉於鄉市 傍近數邑之人, 欲買猪尾戰笠等物, 則必求於廷益之家, 國言藉藉, 安可誣也? 且其爲人驕亢, 自恃官高, 不有體面既驕且貪, 餘無足觀, 縱非闖茸, 何取於斯? 況今貪風日甚, 紀綱漸壞, 此而不懲, 則無以尊朝綱而革痼弊也. 臣等之論, 非泛然風聞之比, 實出於目擊而明知也. 請亟命罷職. 今月十二日臺諫留門時, 忽有一人, 掠臂先出, 卽爲執捉, 問其役名, 則乃御營軍官蔣俊稱名者也. 御營軍官, 雖直闕下, 當出, 則閉門時出去, 當直, 則留在直所而已, 豈有留門出入之理乎? 事極可駭, 請令攸司, 囚禁治罪. 答曰, 依啓. 柳廷益遞差.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7월 14일(신미)

□ 유정익(柳廷益)의 파직, 장준(蔣俊)의 구금치죄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전하의 답변을 받들때, ‘유정익(柳廷益)은 천하고 어리석은 무부(武夫)가 아니니 이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신 교지라 신 등은 살짝 의아스럽습니다. 유정익의 탐욕과 교활함[貪量]¹⁸⁾ 및 오만함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입니다. 신 등이 청컨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유정익이 홍청병사(홍청은 충청도를 말함)가 되었을 때, 경기 수원(水原) 지역에 거대한 장원을 넓게 점유하였으며 또한 큰 집을 짓고 그 안에 재화를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제주목사로 교체되어 간 이후에 이르러서는 섬 안의 물화들이 지방 장터에 난삽하게 마구 흩뜨리게 해 인근의 몇몇 마을 사람들이 새끼돼지와 병거지 등의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유정익의 집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공론이 자자한데 어찌 무고라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됨이 건방지고 자존심이 강하고, 스스로 관직이 높음을 믿고 체면 없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니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설령 천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도 어찌 이런데서 취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은 탐욕스런 기풍이 날로 심해지고 기강은 점차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조정의 기강을 높이고 고질적인 폐단을 개혁할 도리가 없어집니다. 신들의 논의는 풍문에 들떠서 쫓는 것이 아니고 진실

18)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貪量”의 ‘量’은 “墨”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로 목격해 명백히 알고 있는데서 나온 것입니다. 청컨대 신속하게 파직을 명하십시오. 이번 달 12일 대간(臺諫)에서 유문(留門)¹⁹⁾하고자 할 때, 홀연히 어떤 이가 팔을 휘두르며 먼저 나가려 하기에 즉시 붙잡아 그의 신분과 이름을 물으니 ‘어영군관(御營軍官) 장준(蔣俊)’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어영군관이 비록 대궐숙직을 마치고 나가려 한다면 문을 닫을 때 나가고, 당직(堂直)이라면 재직소에 머물러 있어야 할뿐이거늘 어찌 유문 때 출입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일이 매우 경악할 만하니, 청컨대 유사(攸司)에게 명하여 잡아 가두고 죄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유정익은 교체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유정익, 제주목사.

19) 유문(留門): 조선시대 때 밤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 궁궐 문이나 성문 닫는 것을 중지시키던 일.

❖ 順治 六年 己丑 八月初七日 甲午

○ 下直濟州牧使金壽益.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8월 초7일(갑오)

□ 김수익(金壽益)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 김수익(金壽益)²⁰⁾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익.

20) 김수익(1600~1673): 위의 효종 즉위년(1649) 8월 7일조 “濟州牧使金壽益” 중 ‘益’은 ‘翼’의 오기로 보임. ‘金壽翼’은 본관이 안동(安東), 호가 청악(靑岳). 1630년(인조 8) 문과급제. 이어 관직에 나아감. 1636년 병자호란의 화의성립 후 척화론자로서 귀향해 있다가 1640년 괴산군수가 됨. 이후 여러 관직 거쳐 1649년 제주목사로 왔다가 탐관오리로 탄핵받아 영남에 유배됨. 1658년(효종 9) 방환. 저서로 《남악집(南岳集)》이 있음.

❖ 順治 六年 己丑 八月 十七日 甲辰

- 大司諫李之恒, 司諫沈大孚, 獻納洪處亮, 正言李正英啓曰, 近來賊法不嚴, 人不畏戢, 生民之因悴, 紀綱之解弛, 皆由於此, 豈不痛哉? 濟州前牧使金汝水, 曾以貪縱不法, 重被臺彈, 而略不懲懼, 縱恣益甚, 其所侵虐工匠, 剝割軍民, 縱恣肥己, 罔有紀極. 靈巖本家缸運絡繹, 馬畜成群, 濟民咸曰, 雖梁賊之貪黷, 亦不至此, 非但湖南之人, 有口皆言, 洛中所聞, 亦甚藉藉, 當此新化之日, 如此貪婪特甚者, 不可尋常論罪, 請於遞任過海之日, 卽爲拿問, 從重科斷, 以爲懲一儆百之地. 答曰, 此非小事, 似不可率爾, 更加詳聞處之.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8월 17일(갑진)

- 즉시 탐욕·방자한 김여수(金汝水)의 엄중처단을 청하는 이지항(李之恒) 등의 계
- 대사간(大司諫) 이지항(李之恒)²¹⁾, 사간(司諫) 심대부(沈大孚)²²⁾, 헌납(獻納) 홍처량(洪處亮)²³⁾, 정언(正言) 이정영(李正英)²⁴⁾ 등이 아뢰기를, “근래 장물죄와 뇌물죄가 엄하지 않고 사람들도 꺼리고 단속하지 않는다. 백성이 괴롭고 생기 없으며(因悴)²⁵⁾, 기강의 해이함은 모두 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어찌 애통치 않

21) 이지항(1605~1654): 본관은 전주(全州). 1633년(인조 11) 과거급제. 1631년에는 태학 유생으로서 선조 추승 반대의 소를 올림. 1636년 검열(檢閱)과 대교 역임,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48년 우부승지(右副承旨), 1649년 대사간(大司諫)·대사성에 나아감. 당시 집의(執義) 송준길(宋浚吉)이 권문(權門)에 아첨하는 부패공직자로 거론하기도 했음. 한때 탐관오리라는 비관을 받기도 했으나, 그것이 누명이라 해명된 적도 있음.

22) 심대부(1586~1657): 본관은 청송(靑松). 호는 가은(嘉隱)·범재(泛齋). 1613년(광해군 5) 사마시합격. 1630년 봉림대군(鳳林大君) 사부(師傅)가 됨. 1633년 형조좌랑 재직 중 문과급제. 이어 여러 관직을 거치던 중 탄핵받아 보령현감으로 좌천됐으나 취임치 않음. 이후에도 재등용과 사직·복직 되풀이함. 1649년 인조 사후 그 묘호제정과 관련 왕의 노여움을 사 회양으로 유배됨. 1657년에 방환되고, 이 해에 사망. 사후 신원됨.

23) 홍처량(1607~1683): 본관은 남양(南陽). 호는 북정(北汀). 1637년 문과급제. 이후 봉교·정언을 지냄. 1642년 진하사(進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에 다녀옴. 이어 여러 관직을 지낸 뒤, 1649년 정랑으로 승진함. 이후에도 관직이 계속 올라 1668년 예조참판·개성유수, 1670년에 대사헌이 됨. 숙종 때는 제학·좌참찬·관중추부사로 나아감. 저서로는 《북정집(北汀集)》이 있고, 시호는 정정(貞靖).

24) 이정영(1616~1686):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서곡(西谷). 1636년(인조 14) 문과급제.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가 심양(瀋陽)으로 갈 때 사서로 시종함. 귀국 후 여러 관직에 나아갔고, 1649년 효종 즉위 후에는 죽 승진해 나아가 1674년 이조판서가 됨. 1677년(숙종 3) 유배된 적도 있었으나, 풀려나 재등용됨. 진서(篆書)와 주서(籀書)에 뛰어남. <이순신명량대첩비 李舜臣鳴梁大捷碑> 등 여러 비문의 글씨를 씀. 시호는 효간(孝簡).

25)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因悴”의 ‘因’은 “困”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겠습니까? 전(前) 제주목사 김여수(金汝水)²⁶⁾는 일찍이 탐학을 멋대로 해 불법을 저질러 거듭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고도 거의 징계를 두려워 않으며 멋대로 방자함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그 공장(工匠)을 침학(侵虐)하고 군민(軍民)을 약탈해 제멋대로 자신만을 살찌웠고 기강을 엄청나게 어그러지게 하여, 영암 본가에는 선운(船運)이 끝없이 이어지고 말 등의 가축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비록 양적(梁賊)²⁷⁾의 탐욕과 버릇없음일지언정 역시 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호남(湖南) 사람들만 아니라 입이 있으면 누구나 말했으며 도성에까지 알려진 바, 역시 자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교화하는 시대를 맞아 이와 같이 탐욕이 특히 심한 자는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논죄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교체되어 바다를 건너오는 날로 바로 잡아 국문하여 엄중한 벌에 따라 헤아려 처단해 일벌백계로 삼을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경솔해서는 아니 될 듯하니, 다시 자세히 들어보고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이지향, 심대부, 흥처량, 이정영, 제주목사, 김여수, 양적.

26) 김여수(1600~1670): 본관은 김해(金海). 1624년(인조 2) 무과장원급제. 1627년(인조 5) 청의 3만 군대를 강홍립(姜弘立)과 함께 맞서 싸우다 부상당했고, 1635년 병자호란 때도 참전함. 이후 함경도 경흥부사 재임 중 선정 벼품. 1647년(인조 25) 제주목사로 와 1649년(인조 27)까지 재임. 제주목사 재임 때 탐학 때문인지 1650년(효종 1) 유배됨. 이후 풀려나 1653년(효종 4) 오위장(五衛將) 역임. 호조판서에 추증됨.

27) 양적(梁賊): 1619년(광해군 11) 제주목사로 와 2년간 재직했던 양호(梁護)를 비유해 말한 것임. 양호는 제주 백성들의 뇌리에 박힐 만큼, 가렴주구가 극심하였다. 그래서 제주 백성들은 가렴주구의 상징적 존재로서 양호를 거론하곤 했는데, 김여수의 경우도 그에 못지않다고 봤던 모양임.

❖ 順治 六年 己丑 八月 十八日 乙巳

- 大司諫李之恒, 司諫沈大孚, 獻納洪處亮, 正言李正英啓曰, 請濟州牧使金汝水, 卽爲拿問, 依法科斷. 答曰, 依啓.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8월 18일(을사)

김여수(金汝水)의 처단을 청하는 이지항(李之恒) 등의 계

- 대사간 이지항(李之恒), 사간 심대부(沈大孚), 헌납 홍처량(洪處亮), 정언 이정영(李正英)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사 김여수(金汝水)를 즉시 잡아다 문초해 법에 의거해 헤하려 처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이지항, 심대부, 홍처량, 이정영, 제주목사, 김여수.

❖ 順治 六年 己丑 八月 二十六日 癸丑

○ 有政 吏批, 以李元鎭爲江原監司 …… 安緝爲旌義縣監 …… 【以上吏批政事】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8월 26일(계축)

□ 안집(安緝)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이원진(李元鎭)²⁸⁾을 강원감사로 삼고, 〈중략〉 안집(安緝)²⁹⁾을 정의현감으로 삼았다.” 〈하략〉. 【이상은 이비 정사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이원진, 안집, 정의현감.

28) 이원진(1594~1665): 본관은 여주(驪州). 호는 태호(太湖). 1615년(광해군 7) 대북의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등과 함께 귀양 갔고, 인조반정 후 방환됨. 1630년(인조 8) 문과급제. 이후 지평 등을 거쳐 1647년 우승지로 승진. 1651년~1653년 제주목사 때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표류해 왔음. 또한 남만인(南蠻人) 30여명도 표류해 오자 이들을 서울로 압송한 적도 있음. 저서로 《탐라지(耽羅志)》가 있음.

29) 안집(1623~1678): 본관은 죽산(竹山). 1645년(인조 23) 을유 무과별시 급제. 1649년(효종 즉위년) 정의현령으로 왔다가 1651년 파직됨. 재임 당시 제주목사 김수익(金壽翼) 휘하의 군관과 개인적, 혹은 김수익의 탐학에 대한 항의로 칼을 빼들고 김수익을 비방함. 이 일이 중앙정부에 알려져 정의현령에서 피직·유배됐다. 제주목사 김수익도 탐학이 중앙정부의 조사에 의해 드러나 또한 파직되고, 이어 뇌물죄와 유배형에 처해짐.

❖ 順治 六年 己丑 九月 二十九日 乙酉

○ 禁府, 前濟州牧使金汝水, 拿囚. 啓.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9월 29일(을유)

□ 의금부(義禁府)에서 김여수(金汝水)를 잡아가두었다고 아뢴

○ 의금부에서 전 제주목사 김여수(金汝水)를 잡아 가두었다고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의금부, 제주목사, 김여수.

❖ 順治 六年 己丑 十月初四日 己丑

○ 府前啓, 金自點迷國誤朝, 方論遠竄之典, 則其附麗翕訛之輩, 不可不略加懲治, 以清朝著. 全南監司李時萬, 瑞山郡守李以存, 副提學申冕, 護軍李之恒·李海昌, 前執義嚴鼎耆, 前府尹黃床等, 或諂附密結, 不恤唾鄙, 或受其籠絡, 助成氣勢, 見棄清議, 貶辱縉紳, 新化之初, 若無激揚之舉, 則化理無以清明 公論無以恢張, 不可尋常推考而止. 請竝命削去仕版. 士夫持身, 不可不謹, 勳宰名流趣向自別, 前參議李行進, 前左承旨李時楷等, 出入元斗杓之門, 人言不美, 恬不知愧, 識者譏罵, 見疵清議, 不可尋常推考而止. 請命罷職不敘. 全南左水使金汝溫, 曾以濟州圍籬別將, 交代而歸也, 臣時爲, 稷山縣監, 因公事往營門, 偶值於公州客店, 見其驅駿馬數十匹, 且有馱載甚衆, 塞路而過. 臣竊怪濟州, 雖多駿馬寶貨 汝溫以客官, 何以所得, 如此之多也. 乃後聞之, 汝溫曾爲嶺南閫帥, 貪黷狼籍 及至濟州, 多行強市云, 如此之人, 所持者不挾, 故得官也常先於人, 自濟州未及還朝, 而已除南陽, 居南陽未久, 而又遷湖閫, 近來武弁, 初得饒地, 人必謂之賈本 以其媒爵之資 可以辦也. 臣之所不見者何限, 而至如汝溫之多馬巧官, 則臣之所目覩, 有非風聞之比. 請金汝溫罷職不敘. 答曰罷職, 金汝溫事, 不允.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10월 초4일(기축)

□ 이시만(李時萬)·이행진(李行進)·김여온(金汝溫) 등의 처벌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일전에 아뢰기를, “김자점(金自點)³⁰⁾은 나라를 미혹케 하고, 조정을 그르치게 함에 바야흐로 유배형 중에서도 중형을 논의하고 있으니, 거기에 혈똥 으며 짝지어 붙는 무리도 추려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조정을 맑게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전남감사(全南監司) 이시만(李時萬)³¹⁾, 서산군수(瑞山郡守) 이이존(李以存), 부제학(副提學) 신면(申冕), 호군(護軍) 이지항(李之恒)·이해창(李海

30) 김자점(1588~1651):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낙서(洛西). 음보로 출사해 병조좌랑에까지 이르렀으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 논의에 반대하는 등 광해군 때 대북 세력에 맞서다가 정계에서 축출 당함. 인조반정에 가담해 1623년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녹훈됨. 1646년에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라감. 1651년 승선군(崇善君)을 추대하려는 역모와 연류·폭로돼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함.

31) 이시만(1601~1672): 본관은 전주(全州). 세종의 서자 영해군 당(寧海君塘)의 7대손. 1630년(인조 8) 별시문과 병과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50년(효종 1) 전라도관찰사로 나아갔으나 김자점의 일당이라 해 파직됨. 1660년(현종 1) 상주목사로 복직했으나 또한 김자점 문제로 파직 당함. 뒤에 칠원부사로 나아갔으나 수어사(守禦使) 김좌명(金佐明)과의 불화로 사직함. 또 김좌명의 청죄(請罪)로 1668년 충군(充軍)됐다 풀려남.

昌), 전(前)집의(執義) 엄정구(嚴鼎耇), 전(前)부윤(府尹) 황호(黃床) 등은 혹 아첨하며 붙고 몰래 결탁해 비루하다고 침 뱉는데도 개의치 않았고, 혹은 농락(籠絡) 당하더라도 기세 이루는 것을 도왔습니다. 청의(淸議)는 버림을 당했고 품격 높은 벼슬아치들에게는 욕을 끼쳤습니다. 지금 막 새로운 교화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만약 거세게 떨쳐 일으킴이 없다면 교화하여 다스리는 이치가 맑고 밝게 될 수 없으며 공론이 널리 펼쳐질 도리가 없게 되니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이 추고하는데 그쳐서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모두 관인의 명부에서 삭제를 명하십시오. 사대부의 몸가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은 벼슬아치와 명류(名流)의 경우는 추구하는 방향이 남달라야 하거늘 전(前) 참의(參議) 이행진(李行進), 전(前) 좌승지(左承旨) 이시해(李時楷) 등은 원두표(元斗杓)의 집안을 들락거려 사람들이 ‘불미하다’고 하는데도 태연이 여겨 부끄러운 줄 몰랐고, 식자들도 나무라고 욕합니다. 청의가 욕을 당한 것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이 추고하는데 그쳐서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과직하고 등용치 마시기를 명하십시오. 전남좌수사(全南左水使) 김여온(金汝溫)³²⁾은 일찍이 제주 위리안치소(圍籬安置所)의 별장(別將)이었다가 교체되어 돌아왔습니다. 신은 당시 직산(稷山)의 현감이었고 공사(公事)로 영문(營門)에 갔는데 우연히 그를 공주(公州)의 한 객점에서 만났는데 그가 준마(駿馬) 수십 필을 몰고 가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짐 실은 것 역시 매우 많아 길을 메우며 지나갔습니다. 신은 제주(濟州)가 비록 준마·보화가 많다 하나 김여온이 객관(客官)으로서 얻은 바가 이처럼 많을까를 슬그머니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얼마 후 들었는데, 김여온이 일찍이 영남의 군사령관을 지낼 때 탐욕과 거만하다는 말이 자자했고, 제주에 이르러서는 강제 매매를 많이 행했답니다. 이 같은 사람은 지닌 물건을 자신이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얻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마련입니다. 제주로부터 조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남양(南陽)을 제수 받았고 남양에 머문 지 얼마 안 되어 또한 주요하고 커다란 지역(경상 좌수사)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래 무관들이 초임으로 풍요로운 지역에 임명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일러 장사미천이라 했으니, 관직을 중개하는 자본으로서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직접 보지 못한 바의 것도 어찌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김여온의 많은 말과 교묘한 벼슬살이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곧 신이 눈으로 목격한 바이지, 들리

32) 김여온(1596~?):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순백(順白). 1630년(인조 8) 경오년 무과급제. 1643년(인조 21) 10월~ 1645년 10월까지 경상 좌수사를 지냄. 임기가 끝난 후, 선정비가 세워짐. 이 비는 현재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 수영 사적 공원에 남아 있음. 비의 제목은 ‘수사 김공여온선정비(水使金公汝溫善政碑)’이고, 그 옆에 ‘순치를유년십이월 일(順治乙酉十二月日)’이란 비문도 새겨 놓음.

는 소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김여온을 파직하고 등용치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파직하되, 김여온의 경우는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김자점, 이시만, 이이존, 신면, 이지항, 이해창, 엄정구, 황호, 이행진, 이시해, 원두표, 김여온, 제주.

❖ 順治 六年 己丑 十月 十四日 己亥

- 府, 前啓請, 全南左水使金汝溫, 曾在濟州, 多行強市, 及其歸也馱載塞路, 又在嶺南, 貪贖之狀, 人言籍籍, 如此貪污之人, 不可尋常推考而止, 請命罷職不敘. 汚之罪, 勿揀赦典, 自有常典, 斷不撓改, 而前濟州牧使金汝水, 貪贓無比, 人所共憤, 見捉之物, 狼藉於道臣狀啓, 此非泛然風聞之比, 拿來未久而稟秩書啓, 至蒙恩宥, 事極駭異, 請還收金汝水放送之命, 禁府當該堂上推考. 答曰, 依啓. 金汝溫既已推考, 觀其緘辭而處之可也.

❖ 孝宗 즉위년(1649) 기축년 10월 14일(기해)

- 김여수(金汝水)의 석방명령 되돌리고, 이와 관련 관리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계
- 사헌부가 일전에 아뢰어 청하기를, “전남좌수사 김여온(金汝溫)이 일찍이 제주에 있을 때, 강제로 매매를 자주 행해 돌아올 때에 이르러서는 짐 실은 것이 길을 막았을 정도였으며 또한 영남에 있을 때 탐욕과 거만함의 실상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자자했었습니다. 이 같이 탐오(貪污)한 자는 예사로이 추고하는데 그쳐서는 결코 아니 되니 청컨대 파직하고 등용치 말기를 명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죄는 사면의 법을 행하지 말아야하며 진실로 상규가 있으니 결단코 휘어 고쳐서는 아니 됩니다. 전(前)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여수는 탐욕과 불법으로 재물을 취하기가 비길 데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는 바입니다. 눈에 띄는 정황의 경우도 여러 방면에서 올리는 보고서에도 여기저기 흔하게 보입니다. 이는 풍문만으로 떠다니는 것에 비할 정도가 아닙니다. 잡아 들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쭙어 결정하는 서계(書啓)로 성은을 입어 사면됨에 이르렀으니 일이 극히 괴이하고 놀랍습니다. 청컨대 김여수를 방송(放送)한다는 명을 거두시고 의금부에서 그 관련 당사(堂上)을 추고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김여온은 이미 추고하였으니 그의 진술서〔緘辭〕³³⁾를 보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김여온, 제주목사, 김여수.

33) 함사(緘辭): 조선시대 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사람이 관아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서면으로 올리는 진술서〔招辭〕를 말함. 함답(緘答)이라고도 일컫음.

❖ 順治 六年 己丑 十月 十五日 庚子

- 府啓, 全南左水使金汝溫, 曾在濟州, 多行強市, 及其歸也. 馱載寒路, 馬匹成群之狀, 人有目見而知之者, 豈可待其緘辭而後, 處之也, 請命罷職不敘. 先王昇遐之日, 深山窮谷之民, 莫不奔走悲號, 士夫之在鄉曲者, 雖衰耄癯病, 亦皆昇擔上來, 以伸臣子之情, 而前縣監尹善道, 曾在先朝, 受國受恩, 歷敷華貫. 而丙子之亂, 終不奔問, 朝廷亦不深治, 厥後除職, 偃然不赴, 占有海島, 豪富自誤, 其優蹇玩世之狀, 已極可惡, 而國有大戚, 乃敢肆然自逸, 不爲奔哭, 有若越人之視楚, 今又送子呈疏, 隱然有操試朝廷之意, 年非衰耄, 身且強健, 而疏中張皇年老病重之狀, 尤極痛駭不, 可置而不問, 請命拿鞠定罪. 廣州乃保障重地, 守宰不可不擇, 而新府尹奇震興, 前爲濟州牧使, 不愜於公議, 論遞未久, 旋授廣州, 物情深以爲駭, 請廣州府尹奇震興遞差, 其代各別擇送. 掌令宋時烈, 引嫌而退, 疾病事故, 人所難兌, 不參陪祭, 雖或間有, 旣非無故, 何嫌可避, 請命出仕. 持平鄭承明, 引嫌而退, 激揚之論, 意非偶然, 而旣下罷職之命, 公議已伸, 出肅之後, 從容相議, 或停或否, 未爲不可? 當此百僚庭請之日, 不思所以鎮靜之道, 徑先引避, 又生鬪端, 強爲瀆擾, 殊甚不當, 請命遞差. 答曰, 依啓. 金汝溫尹善道事不允. 奇震興事, 似爲已甚, 勿爲煩論. 前啓李時萬等事, 停啓.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10월 15일(경자)

- 김여온(金汝溫) 처벌과 송시열(宋時烈) 출사(出仕) 등의 건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남좌수사 김여온(金汝溫)이 일찍이 제주에 있을 때, 강제 매매를 자주 행해 돌아올 때에 이르러서는 짐 실은 것이 길을 메웠고 마필들이 무리를 이룬 형상은 사람들도 직접 목격해서 알고 있는데 어찌 그의 진술서를 기다린 이후에 처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컨대, 과직하고 등용치 말라고 명하십시오. 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 깊고 깊은 산림과 계곡의 백성들조차 달려 나와 슬피 울부짖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사대부 중 시골에 있는 자들은 비록 늙고 병들더라도 역시 모두 가마를 타거나 등에 업혀 올라와[昇擔]³⁴⁾ 신하된 자의 정을 드러냈으나, 전(前) 현감(縣監) 윤선도(尹善道)³⁵⁾는 일찍이 선조(先朝)에 있

34)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昇擔”의 ‘昇’은 “昇”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35) 윤선도(1587~1671): 본관은 해남(海南). 호는 고산(孤山)·해옹(海翁). 18세 때 진사초시(進士初試) 합격, 20세 때 승보시(陞補試)에 1등을 한 뒤, 향시(鄉試)와 진사시(進士試)에 연이어 합격함. 정치적 열세였던 남인의 가문에 태어나 집권세력인 서인에 맞섰다가 20여 년 유배생활과 19년 은거생활을

으면서 나라의 두터운 은혜[受恩]³⁶⁾를 받아 영예스러운 명부에 두루 올랐음에도 병자년의 난리³⁷⁾에도 끝내 달려 나와 문안하지 않았는데, 조정 역시 깊게 조사치 않았습니니다. 그 후 관직을 제수하였는데도[除職]³⁸⁾ 거드름을 피우면서 부임하지 않은 채 섬을 점유하고서는 세력과 부를 스스로 즐겼습니니다[自誤]³⁹⁾. 그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을 떨며[優蹇]⁴⁰⁾ 세상을 우습게 보는 실상이 이미 극한에 달해 미워할 만하고, 나라가 크나큰 슬픔을 당했는데도 감히 방자하게 스스로 편안케 여겨 달려 나와 곡하지 않음이 마치 월(越)나라 사람이 초(楚)를 보는 것과 같음이 있었습니니다. 지금 또 아들을 보내 소(疏)를 올림이 은연중에 조정을 떠보려는 뜻이 있으니 나이가 쇠약한 늙은이가 아니고 몸 역시 강건하건만 소(疎) 가운데 나이가 들고 무거운 병에 걸린 실상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더욱 지극히 통탄하고 놀랄 일입니다. 그대로 두어 문책하지 않음은 결코 옳지 않습니니다. 청컨대 붙잡아 와 죄를 묻기를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광주(廣州)는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땅입니다. 수재(守宰)를 가려 뽑지 않을 수 없는데 새로운 부윤(府尹) 기진흥(奇震興)은 전에 제주목사가 되었을 때, 공의(公議)와 맞지 않아 교체를 논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광주(廣州)를 제수 받았으니 세상인심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광주 부윤 기진흥을 교체하시고 그 대신 각별하게 가려 뽑아 보내십시오. 장령 송시열(宋時烈)⁴¹⁾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함. 그럼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화려한 은거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 이 가운데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표출했음.

36)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受恩”의 ‘受’는 “厚”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37) 병자호란을 말함. 이는 청나라가 1636년(인조 14)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조선에 대해 제2차 침입으로 일어난 전쟁을 일컫는 것임.

38)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除職”의 ‘職’는 “職”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39)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自誤”의 ‘誤’는 “娛”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40)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優蹇”의 ‘優’는 “僂”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41) 송시열(1607~1689):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우암(尤菴) 또는 우재(尤齋). 27세 때 생원시(生員試)에 장원으로 합격함. 병자호란을 겪은 후 좌절감 속에서 낙향해 10여 년 간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전야에 묻혀 학문에만 몰두함. 1649년 효종이 즉위해 척화파 및 재야학자를 대거 기용하는 가운데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고, 효종이 내세운 북벌 계획의 핵심 인물로 발탁되기도 했음. 이후 관직생활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1689년 제주로 유배가고, 그 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음. 제주에서는 충암 김경,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과 함께 오현(五賢)으로 일컬어짐.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자신의 죽음을 무죄로 인정받아 관작도 회복됨. 다음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도 내려짐. 당파 간에 칭송과 비방이 무성했으나, 1716년 병신 처분(丙申處分)과 1744년(영조 20) 문묘배향으로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되었음. 영·정조대 노론 일당전제가 이뤄지면서 역사적 지위가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존중됨. 학문적 계통은 전적으로 주자의 학설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했으나, 조광조→이이→김장생으로 이어진 조선 기호학파의 학통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킨 것이기도 함.

물러났으나 질병은 사고이지 사람으로서는 면하기 어려운(難免)⁴²⁾ 일입니다. 제사를 맡은 일에 참례치 않은 것은 다만 간혹 간간이 있었던 일이고 까닭도 없지 않았는데 어찌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겠습니까? 청컨대 출사를 명하십시오. 지평 정승명(鄭承明)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흥분해 세차게 내세운 논의가 뜻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서 이미 파직의 명이 내려졌고, 공의도 이미 드러났으며, 관직을 받고 인사를 드린 후에 조용히 상의하였는데 후죄인의 이름에서 삭제(停啓)되었거나, 혹 그렇지 않거나 불가함이 되지 않습니다. 백관을 모이게 해 일을 논의하는 날을 맞아 가라앉힐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공동의 책임을 물어 회피한다면 또 다시 야단법석이 생기고, 애써 번거롭게 만드는 일이니 매우 부당합니다. 청컨대 교체를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김여온·윤선도의 일은 윤희하지 않는다. 기진흥의 일은 너무 심하듯 하니, 번거롭게 논의하지 말라. 전에 아뢰 이시만(李時萬) 등의 일은 삭제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김여온, 제주, 윤선도, 송시열, 기진흥, 정승명, 이시만.

42)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難免”의 ‘免’는 “免”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 順治 六年 己丑 十月 十七日 壬寅

- 府前啓, 請全南左水使金汝溫, 罷職不敘. 新啓, 先王昇遐之日, 深山窮谷之民, 莫不奔走悲號, 士夫之在鄉曲者, 雖衰耗隆病, 亦皆舁擔擔上來, 以伸臣子之情, 而前縣監尹善道, 曾在光朝, 受國厚恩, 歷敷華貫, 而丙子之亂, 終不奔問, 朝廷, 亦不深治, 厥後除職, 偃然不赴, 占有海島豪富自娛, 其偃蹇玩世之狀, 已極可惡, 國有大戚, 乃敢肆然自逸, 不爲奔哭, 有若越人之視秦, 今又送子呈疏, 隱然有探視朝廷之意, 年非衰耄, 身且強健, 而疏中張皇年老病重之狀, 尤極痛駭, 不可置而不問, 請命拿鞫定罪. 廣州府尹奇震興, 本無才能, 又無名稱, 而被薦儒將, 已多物論, 曾爲濟州, 不愜公議, 論遄未久, 旋授本州, 南漢之於濟州, 輕重懸殊, 遄彼移此, 政體顛倒, 到任未久, 而又有不治之誚, 保障重地, 決不可付諸此人, 請奇震興遄差, 其代, 各別擇送. 仁川府使金鼎鉉, 性本愚濫人所笑罵, 前後典邑, 到處見敗, 及授本職, 政委下吏, 簿牒賦役, 專不掛念, 一境嗷嗷如在水火. 今番客行, 托以鋪陳支供之用, 濫用民結米布饌物, 多數出定, 刻期督捧, 民不及措, 至有賂遺下吏而求緩者, 圻內稍完之邑, 已無收拾之望, 決不可一日在官, 重貽民弊, 請命罷職. 新除授密陽府使曹廷立, 曾在昏朝, 附托賊臣, 濫叨清顯, 傳會廢論, 彈劾賢相. 反正之後, 得免流竄, 誠亦已幸, 復廁朝班, 人所未料, 棄瑕錄用, 聖代寬典, 思革舊染, 十分畏慎, 而屢典郡邑, 專以善事爲己任, 重被臺評, 非止一再. 且無行檢, 偷竊士夫良妾, 公然家畜, 及授本職, 物議莫不駭憤 如此之人, 決不可付諸字牧之任, 請命罷職不敘.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10월 17일(임인)

□ 김여온(金汝溫)·윤선도(尹善道) 등의 파직과 처벌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가 전에 아뢰는 글에서, “전남좌수사 김여온(金汝溫)을 파직하고 등용치 마십시오.”라고 청하였다. 새로이 아뢰기를, “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 깊고 깊은 산림과 계곡의 백성들조차 달려 나와 슬피 울부짖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사대부 중 시골에 있는 자들은 비록 늙고 병들더라도 역시 모두 가마를 타고 등에 업혀 올라와 신하된 자의 정을 드러냈으나, 전(前) 현감(縣監) 윤선도(尹善道)는 일찍이 선조(先朝)에 있으면서[在光]⁴³⁾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영예스러운 명부에 두루 올랐음에도 병자년의 난리에도 끝내 달려 나와 문안하지 않았는데, 조정 역시 깊게 조사치 않았습니까. 그 후 관직을 제수하였는데도 거드름을 피우

43)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在光”의 ‘光’은 “先”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면서 부임하지 않은 채 섬을 점유하고서는 세력과 부를 스스로 즐겼습니다. 그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을 떨며 세상을 우습게 보는 실상이 이미 극한에 달해 미워할 만하고, 나라가 크나큰 슬픔을 당했는데도 감히 방자하게 스스로 편안케 여겨 달려 나와 곡하지 않음이 마치 월(越)나라 사람이 초(楚)를 보는 것과 같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아들을 보내 소(疏)를 올림이 은연중에 조정을 떠보려는 뜻이 있으니 나이가 쇠약한 늙은이가 아니고 몸 역시 강건하건만 소(疎) 가운데 나이가 들고 무거운 병에 걸린 실상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더욱 지극히 통탄하고 놀랄 일입니다. 그대로 두어 문책하지 않음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붙잡아 와 죄를 묻기를 명하십시오. 광주부윤(廣州府尹) 기진흥(奇震興)은 본디 재능이 없고 명성도 없으니 선비와 같은 풍모를 지닌 무장으로 천거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세간에 수군거림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제주를 맡겼을 때도 여러 사람의 의견에 맞지 않아 교체가 논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리어 본주(本州, 광주)에 제수되었습니다. 남한(南漢)은 제주(濟州)에 비해 경중(輕重)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제주목사직을 체직시켜 이곳 광주로 옮겼으니 인사운영의 근본이 전도된 것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한 다스리지 못한다는 책망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땅은 결코 이런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기진흥을 교체하고 그 대신 각별하게 가려 뽑아 보내십시오. 인천부사(仁川府使) 김정현(金鼎鉉)은 성정이 본디 어리석고 지나침으로 사람들이 비웃고 욕합니다. 읍을 맡은 전후에 걸쳐 도처에서 실패를 당했는데도 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정치는 아래 아전들에게 맡겨놓고 부역(賦役)에 관한 문서에는 전혀 관념치 않았으니 그 관내에 원성이 자자하고 소란스러움이 마치 물과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관내행차 때는 지공(支供)의 용도로 깔겠다는 핑계로 민결(民結)과 미포(米布) 및 찬물(饌物) 등을 남용하여 더 많이 내게 하고, 기한도 딱 정해 독촉해 거두어 들였으니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뇌물을 아전들에게 받쳐가며 느슨하게 해 줄 것을 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내(畿內)의 조금 괜찮다는 읍(邑)이라고 해도 이미 수습의 기대조차 없으니 결코 하루라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매우 민폐를 끼치니 청컨대 파직을 명하십시오. 새로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제수한 조정립(曹廷立)은 일찍이 혼조(昏朝, 광해군의 조정)에 있으면서 적신(賊臣)에게 달라붙어 함부로 요로의 관직이나 높고 중요한 직위를 탐냈고, 폐론(廢論)⁴⁴⁾에

44) 폐론(廢論): 폐모론을 말함. 이는 1614년 이후부터 이이첨(李爾瞻) 등의 일파가 영창대군의 일을 빌미로 인목대비의 폐비를 도모하고자 내세우는 논의를 일컫음. 마침내 인목왕후는 1618년 대비에서 폐해진 뒤, 서궁(西宮)에 감금·유폐되기에 이름.

도 건강부회했으며〔傳會〕⁴⁵⁾, 현명한 재상도 탄핵하였습니다. 반정(反正) 이후, 유배를 면할 수 있어서 진실로 또한 매우 다행스럽고, 조정의 반열에 다시 섞였음에 뜻밖에도 허물을 돌이키지 않아 기용되었으니, 성대(聖代)의 너그러운 법령이고, 뜻이 구폐를 혁신하려는데 있음으로 충분이 두려워하고 삼가야 하거늘, 여러 번 고을 수령을 맡으면서도 오로지 윗사람 섬기는 것만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 여러 번 대간(臺諫)의 평론을 입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점잖고 바른 몸가짐이 없어서 몰래 사대부의 양인 첩(良妾)⁴⁶⁾을 훔쳐 공공연하게 집에 두었는데도 본직에 제수됨에 이르렀으니 여론이 놀라고 분노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고을의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의 임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과직하고 등용치 마시기를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김여온, 윤선도, 제주, 기진흥, 김정현, 조정립.

45)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傳會”의 ‘傳’은 “附”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46)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원문 탈초본 “良妾”의 ‘良’은 “良”의 탈초 오류일 듯싶음.

❖ 順治 六年 己丑 十一月初三日 戊午

- 禁府啓目, 前濟州牧使金汝水議處公事判付內, 除刑推, 邊遠定配, 同府, 金汝水金海府定配啓.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11월 초3일(무오)

- 김여수(金汝水)의 유배처를 김해부(金海府)로 정하겠다는 의금부(義禁府)의 계목
- 의금부(義禁府)에서 올리는 계목(啓目)에, “전(前) 제주목사 김여수(金汝水) 관련 의처공사(議處公事)를 임금께서 재가한 내용에 ‘형벌을 쥐 문초하지 말고 먼 변방에 정배(定配)하라.’고 하셨는데 의금부에서 김여수를 김해부(金海府)로 정배하기를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김여수, 김해부, 제주목사.

❖ 順治 六年 己丑 十二月初九日 癸巳

○ 禁府啓目, 前富平府使申濩, 旌義縣監姜昇, 延安縣監廉友赫元情公事, 刑推得情, 何如? 啓依允 同府前平山府使李厚培元情公事, 判付內姑停刑推議處 同府, 前抱川縣監沈日遵元情公事, 判付內火田當初禁斷之後, 又因管餉使狀啓, 許耕食是如爲有置果, 有前後兩度行會是喻, 查處, 同府啓目, 前利川縣監鄭百順, 本府有難詳知, 河晉善疏內辭緣, 亦難盡信, 令本道明覈啓聞後, 處置, 何如? 啓依允. 【以上朝報】

❖ 효종 즉위년(1649) 기축년 12월 초9일(계사)

□ 신호(申濩)·강승(姜昇) 등의 형추(刑推) 관련 의금부(義禁府)의 계목

○ 의금부 계목에, 전(前) 부평부사(富平府使) 신호(申濩), 정의현감(旌義縣監) 강승(姜昇)⁴⁷⁾, 연안현감(延安縣監) 강우혁(廉友赫) 등의 원정공사(元情公事)에 대해 ‘형벌을 가해 문초해 사정을 더 알아봄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는 재가를 내렸다. 의금부에서 전(前) 평산부사(平山府使) 이후배(李厚培)의 원정공사(元情公事)에 대해 임금께서 재가한 내용에 ‘일단 형벌을 가해 문초하는 것을 멈추고 의논해서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전(前) 포천현감(抱川縣監) 심일준(沈日遵)의 원정공사(元情公事)에 대해 임금께서 재가한 내용에 ‘화전(火田)은 처음에 금단(禁斷)한 이후에 다시 관향사(館餉使)⁴⁸⁾가 장계(狀啓)하여 갈아 먹는 것을 허가하여 그 일을 전후로 두 번 행회(行會)함이 있었다고 하니 조사해보고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의금부 계목(啓目)에 ‘전(前) 이천현감(利川縣監) 정백순(鄭百順)은 본부(本府 의금부)에서 자세히 알기 어려움이 있고 하진선(河晉善)의 상소 내 사연 역시 죄다 믿기 어려우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명백히 조사케 해 아뢴 다음에 처리함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 아뢴 대로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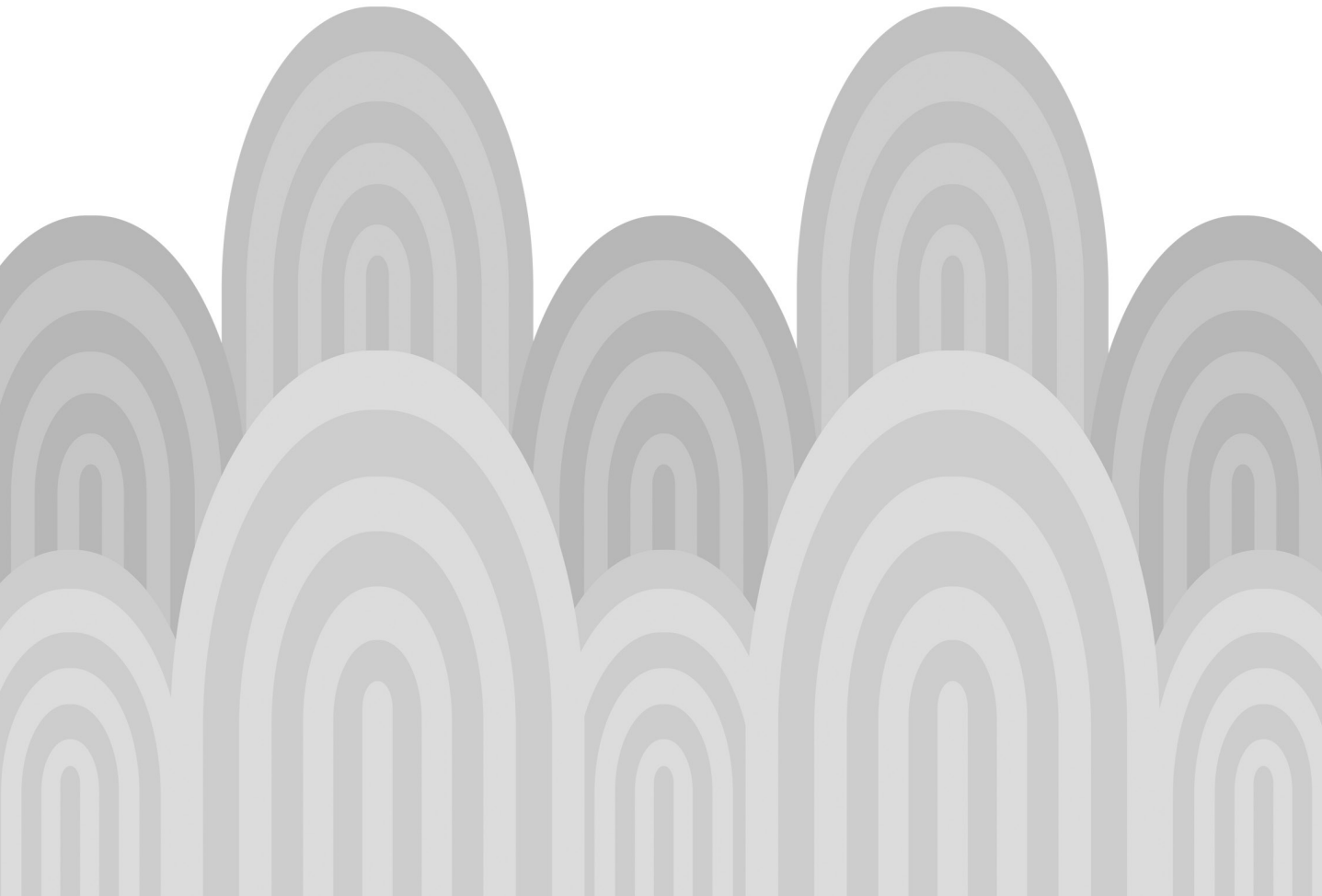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신호, 정의현감, 강승, 강우혁, 심일준, 정백순, 하진선, 관향사.

47) 강승(?-?): 1648년(인조 26) 10월 송익(宋益)의 후임으로 정의현감으로 부임했고, 1649년에 불잡혀 감.

48) 관향사(館餉使): 1623년(인조 1) 설치한 군 식량의 관리 관원. 인조반정 이후 명의 원병요청과 남왜 때문에 모병이 절실했고, 그 선행조건으로 군량의 확보가 시급했음. 이로써 군량 저축한 뒤 그 관리의 관원으로 설치됨.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파견했으나, 북쪽의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관서지방에만 치중·파견케 됐음. 1636년부터는 평안감사가 겸함. 주 임무는 명에 군량 제공하고, 관서·관북지방의 기근 때 환곡을 베푸는 일 등임.

1650年



❖ 順治 七年 庚寅 正月 初九日 癸亥

○ 都目大政 以張應一爲司諫 …… 洪宇亮爲濟州判官 …… 【櫛餘】

❖ 효종 1년(1650) 경인년 1월 초9일(계해)

□ 홍우량(洪宇亮)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도목대정(都目大政)⁴⁹⁾에서 “장응일(張應一)⁵⁰⁾을 사간(司諫)으로 삼고, <중략> 홍우량(洪宇亮)⁵¹⁾을 제주판관으로 삼았다. <하략>.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장응일, 홍우량, 제주판관.

49) 도목대정(都目大政): 해마다 음력(陰曆)으로 유월(六月)과 설달에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더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던 일.

50) 장응일(1599~1676): 본관은 인동(仁同). 호는 청천당(聽天堂). 1629년(인조 7) 별시문과 병과 급제함. 이어 관직에 나서 1646년 헌납일 때, 이미 사사(賜死)의 명이 내려진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구명소(救命疏)를 9일 동안 계속해 올렸고, 1649년 장령으로 훈신 김자점(金自點)의 탄핵에도 동참함. 1673년 무고로 귀양을 간 적도 있으나, 숙종 즉위 후 풀려나 우승지 등을 지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목(文穆).

51) 홍우량(?~?): 무과급제 이후, 1641년(인조 19) 전라도 무장(茂長)현감으로 부임. 이듬해 10월 파직된 바 있음. 1650년(효종 1) 3월, 김흥운(金興運)의 후임으로 제주판관에 부임한 뒤, 1651년 6월에 파직됨. 이렇게 된 데는 본도에 유배온 죄인 천룡(天龍)을 중앙정부의 회시가 있기 전 매질해 처벌하다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임. 1665년(현종 6)에는 이중신(李重信)의 후임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1667년에 떠남.

❖ 順治 七年 庚寅 七月 十六日 丁卯

- 李行進,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先運三名日進上馬六十匹內, 一匹到錦山, 三匹到鎮川病留, 凶咎馬一百匹內, 一匹到鎮川, 一匹到長水病留, 二匹越海時致傷, 逢授於順天沙工兪還處, 而其餘一百五十二匹到本寺, 依前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1년(1650) 경인년 7월 16일(정묘)

- 제주로부터 운송 말들을 색깔별로 별단(別單)에 써 들이겠다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이진행(李行進)이 사복시(司僕寺)⁵²⁾ 관원이 전하는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에서 선운(先運)한 삼명일(三名日)⁵³⁾ 진상마(進上馬) 60필 중 1필은 금산(錦山)에 도착했고 3필은 진천(鎭川)에 도착해 병들어 머물고 있습니다. 흉구마(凶咎馬) 100필 중 1필은 진천에 도착해, 1필은 장수(長水)에 도착해서 병들어 머물고 있습니다. 2필은 바다 건너오다가 상처를 입어 순천(順天) 사공 유환처(兪還處)에게 봉수(逢授)하였으며 그 나머지 152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적어 넣어두겠다는 뜻을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이진행, 진상마, 제주, 유환처.

52) 사복시(司僕寺): 조선시대의 여마(輿馬; 임금이 타는 수레와 말)·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고려 제도에 따라 사복시를 설치하고 수레·말·마구·목축 등을 관장케 함. 그 뒤 1405년(태종 5)에 병조의 속아문이 되고,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정3품 아문의 관청으로 정비됨. 소속 관원으로 제조(提調), 판관(判官), 정(正) 등등이 있음.

53) 삼명일(三名日): 임금의 탄신일과 정월초하루 및 동지날의 세 명절을 뜻하며, 이때는 각 지방에서 방물진상이 이루어짐.

❖ 順治 七年 庚寅 七月 十六日 丁卯

- 七月十六日, 上御宣政殿夜對廳, 夕講大學衍義. 入侍, 知事韓興一, 特進官金光煜, 參贊官李稜, 侍讀官洪處大, 檢討官李天基, 假注書朴增輝, 記事官李回寶·李扈. …… 興一曰, 武人之薦, 尤爲鮮少, 黃海道則只二人云矣. 今年點馬, 咸鏡·平安·黃海三道當次, 而值此凶荒, 不必爲之, 全南道姑先爲之, 何如? 上曰, 全南道亦爲限今年勿送. 又啓曰, 勅使所求馬匹, 每於賜給之際, 多有窘乏之患. 今番勅使時馬價, 多至五十餘同, 極爲難繼. 今者濟州馬優數上來, 其中擇五十餘匹, 各別善養調習, 以爲應求之地, 何如? 臣旣爲掌馬之官, 故敢此仰達. 上曰, 依爲之. …… 【以上燼餘】

❖ 효종 1년(1650) 경인년 7월 16일(정묘)

□ 대제학(大提學)의 직임을 사양하는 조석윤(趙錫胤)의 상소

- 7월 16일, 임금이 선정전(宣政殿) 야대청(夜對廳)으로 나아갔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석강(夕講)⁵⁴⁾하였다. 들어와 뵈기는 지사(知事) 한흥일(韓興一), 특진관(特進官) 김광욱(金光煜), 참찬관(參贊官) 이래(李稜), 시독관(侍讀官) 홍처대(洪處大), 검토관(檢討官) 이천기(李天基), 가주서(假注書) 박증휘(朴增輝), 기사관(記事官) 이회보(李回寶)·이후(李扈)가 하였다. <중략> 한흥일이 아뢰기를, “무인을 천거함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황해도의 경우는 겨우 2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금년 점마(點馬)는 함경·평안·황해의 3도(道)가 차례에 해당하나 이 같은 흉년을 당한지라 반드시 행할 필요가 없겠사옵습니다. 전남도(全南道)를 우선 먼저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남도도 역시 금년을 한도로 해서 더 이상 보내지 말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칙사(勅使)가 구하는 마필 같은 것은 매번 사급(賜給)할 때마다 궁핍해 아쉽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칙사가 올 때 말의 가격은 거의 50 여 동(同)에 이릅니다. 계속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번 제주마(濟州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왔으니 그 중에서 50여 필을 택해서 각별하게 잘 기르고 길들임으로써 요구에 응할 방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臣)이 이미 말을 관할하는 관직에 있었던 까닭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조석윤, 제주마.

54) 석강(夕講): 저녁에 임금이 신하들과 글을 강론하는 일을 이르던 말.

❖ 順治 七年 庚寅 八月初四日 乙酉

- 楊前, 大司憲所啓, 金自點絶島安置事. 上曰, 罪目雖重, 既已遠竄, 設或屈法伸恩, 未爲不可矣. …… 又所啓金汝水, 前爲濟州牧使時, 犯臟狼藉, 當初定配, 亦云失刑, 而遽爾蒙釋, 物情莫不駭憤, 請邊遠定配. 上曰, 當初查問, 多有可恕之端, 故次次蒙赦矣, 何必更論? …….

❖ 孝宗 1년(1650) 경인년 8월 초4일(을유)

□ 대사헌(大司憲) 등이 김여수(金汝水)의 변원정배(邊遠定配) 등에 대해 논의함

- 어전에서 대사헌이 김자점(金自點)을 절도에 안치하는 일을 아뢰었다. 임금의 말하기를, “죄목이 비록 중하다고하나 이미 멀리 유배되었으니 설령 법을 굽혀 은택을 베풀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김여수(金汝水)가 전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재직 시 뇌물죄와 장물죄가 낭자함에도 당초에 정배한 일은 역시 처벌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갑자기 풀려났으니 여론이 놀라고 분노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청컨대 먼 변방으로 정배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 조사하여 심문할 때 용서할만한 단서가 많았다. 그래서 절차대로 사면(赦免)을 입은 것이다. 어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김자점, 김여수, 제주목사.

❖ 順治 七年 庚寅 八月初七日 戊子

- 府啓 李馨益量移還收之請 諫院 論已久 …… 金汝水, 前爲濟州牧使, 犯賊狼藉, 罪狀昭著, 再次就囚, 累度拷訊, 特以日月之久, 乃有從輕流配之舉, 非是本無所犯而得釋也 又以審理之故, 遽蒙全釋, 使汝水, 果有冤抑可恕之事, 則當初置對之後, 卽宜明覈放釋, 何故而久加刑訊, 又何故而減罪定配乎? 定配既久之後, 量施蕩滌之典, 亦或一道, 而汝水赴配屬耳, 豈有一人之罪, 頓變於數日之間之理乎? 自上軫恤民隱, 申明賊律, 甚盛意也, 而罪狀既著如汝水者, 乃反容護而曲貸, 則國綱何以振, 貪吏何以懲, 而慾浪滔天, 終無激揚之日矣, 豈不大可慨也哉? 物情駭憤, 久而愈激, 請金汝水, 亟命邊遠定配, 以嚴賊律, 以振頹綱 請還收李敏求敘用之命事.

❖ 효종 1년(1650) 경인년 8월 초7일(무자)

김여수(金汝水)의 변원정배(邊遠定配) 등을 청하는 사헌부(司憲府)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형익(李馨益)의 이양(移量)을 거두어 달라는 청은 간원(諫院)에서 논의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중략> 김여수(金汝水)가 전에 제주목사가 되어 뇌물죄와 장물죄가 낭자한 죄상이 환하게 드러나 두 번씩이나 감옥에 갇혔었고 여러 번 고문도 받았습니다. 다만 세월이 오래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곧 가벼운 유배형에 처해졌는데 이것은 본디 죄지은 바가 없어서 사면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깊이 살펴 조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완전히 사면되었습니다. 만일 김여수에게 억울하고 용서해줄 만한 일이 있었다면 당초부터 심문관 앞에 앉혀 조사한 후 마땅히 명쾌하게 밝혀 석방할 일이지 어찌서 오랫동안 형벌과 심문을 가한 것이며 또 어떠한 연유로 죄를 감해서 정배(定配)한 것입니까? 정배하여 시간이 오래된 후에 탕척(蕩滌)의 법을 헤아려 시행했으니 역시 혹 하나의 편법으로 김여수를 배속한 것일 뿐, 어찌 한 사람의 죄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변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임금께서 민생의 고통을 가련케 여기고 장률(贓律)을 밝게 펴신 일은 진실로 지극한 뜻인데 죄상이 이미 뚜렷하게 드러난 김여수 같은 자를 도리어 용인하며 보호하시니, 나라의 기강이 어찌 떨쳐질 것이며 탐관오리를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욕심이 하늘을 넘쳐흘러 끝내 기운차고 고무적인 날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론이 놀람과 분함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김여수를 속히 변원정배(邊遠定配)를 명하여 뇌물죄와 장물죄의 법령을 엄정하게 시

행하여 무너진 기강을 떨쳐 일으키십시오. 청컨대 이민구(李敏求)를 서용(敍用)하라 명령한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이형익, 김여수, 제주목사.

❖ 順治 七年 庚寅 十月 十三日 癸巳

- 十月十三日 上御夜對廳, 引見大臣備局堂上. …… 敬輿曰, 目今民事, 極爲悶迫, 往歲則雖曰失稔, 田穀頗實, 今年則霜災亦慘, 以各道狀啓見之, 則無一處稍強, 極爲悶慮. 上曰, 所恃者三南, 而兩南, 亦以風水災損傷云, 濟州亦然, 尤可憐慘. 斗杓曰, 濟州則風災尤甚, 至於折木拔屋, 此則前所未有之變矣. 敬輿曰, 近來變異非常, 自上憂勤聽政, 少無失德, 而天心未豫, 降此災譴, 天意誠難諶矣. 然一向恐懼, 以爲修省之方, 則可以格天心而回天怒矣. 上曰, 卿言甚當. …… 【以上燼餘】

❖ 효종 1년(1650) 경인년 10월 13일(계사)

□ 야대청(夜對廳) 인건에 이경여(李敬輿) 등과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함

- 10월 13일. 임금이 야대청(夜對廳)으로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 당상관들을 인견하였다. <중략> (영의정) 이경여(李敬輿)⁵⁵⁾가 아뢰기를, “지금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극히 민망하고 궁핍합니다. 지난해가 비록 흉작이라고 해도 전곡(田穀)은 자못 실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인 경우는 서리 피해가 매우 참혹하였습니다. 각 도에서 올라온 장계로 보면 한 곳이라도 그나마 괜찮은 곳이 없으니 매우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지할 곳은 삼남(三南)인데 양남(兩南) 역시 풍수의 재앙으로 손상되었다고 하고 제주(濟州) 역시 그러한데 더욱 가련하고 참혹하다.”라고 하였다. (호조판서) 원두표(元斗杓)⁵⁶⁾가 말하기를, “제주의 경우 바람의 재앙이 특히 심합니다. 나무가 꺾이고 집이 뽑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전에 있지 않았던 변고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경여가 말하기를, “근래 변이(變異)가 비상(非常)한 것은 임금께서 백성을 걱정하고 정사를 행함에 조금이라도 실덕(失德)이 없었는데도 천심(天心)이 달가

55) 이경여(1585~1657):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백강(白江), 봉암(鳳巖). 세종의 7대손.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 을과급제. 1611년 이후 관직에 나아갔으나, 곧 낙향함. 1623년 인조반정 직후 등용돼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1642년 배청친명파로서 심양(瀋陽)에 억류당함. 세자와 함께 귀국해 대사헌·우의정도 지냈으나, 두 차례 유배도 감. 효종 즉위와 함께 풀려나 영의정도 됨. 시문·글씨에도 능함. 저서로 《백강집(白江集)》 있음.

56) 원두표(1593~1664): 본관은 원주(原州). 호는 탄수(灘叟), 탄옹(灘翁). 인조반정 모의에 가담했고, 반정성공 후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됨.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과 1636년 병자호란 때 세운 공에 힘입어 여러 관직을 거처 호조판서도 역임함. 1649년(효종 즉위년) 호조판서를 지내다 한때 좌직 당함. 1651년 좌참찬·좌찬성을 지냄. 1654년 병조판서로 대동법 실시를 반대함. 1656년 우의정, 1662년 좌의정에 오름.

워하지 않아 이 같은 재앙을 내려 꾸짖는 것이니 하늘의 뜻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결같이 두려움으로 덕을 닦고 반성하는 것을 방도로 삼는다면 천심(天心)을 감동시켜 하늘의 질책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야대청, 이경여, 제주, 원두표.

❖ 順治 七年 庚寅 十一月初六日 丙辰

○ 上御夜對廳, 引見, 大靜縣監趙廷瓚 廷瓚進曰, 小臣, 大靜縣監也 上曰, 守令居官, 所爲者何事? 對曰, 守令所當爲者, 七事之外, 豈有他哉? 上問其目, 廷瓚歷舉對之 上曰, 曾爲守令乎? 對曰, 未爲也 今以監察, 移拜此職耳 上曰, 監察前職, 何職耶? 對曰, 爲長興庫官員也 上曰, 所掌何事? 對曰, 米綿色也 上曰, 米綿之外, 更無他事耶? 對曰, 無他事矣 上曰, 今此赴任之處, 何如云耶? 對曰, 未能詳知也 上曰, 所謂七事, 非謂誦之而已 舉而行之, 可也 對曰, 臣敢不盡心力爲之, 第恐才未逮也 上曰, 國家有賞罰, 守令居官清儉爲先, 況海外絕遠, 爾其盡力爲之 對曰, 未死之前, 敢不盡力? 上曰, 親見面諭, 與自外下直者, 有異, 他日若或犯法, 斷不饒貸, 爾其知悉 對曰, 何敢犯不法乎? 罷出.

❖ 효종 1년(1650) 경인년 11월 초6일(병진)

□ 야대청(夜對廳)에서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나아가는 조정황(趙廷瓚)을 인견함

○ 임금이 야대청(夜對廳)으로 납시어 대정현감(大靜縣監) 조정황(趙廷瓚)⁵⁷⁾을 인견(引見)하였다. 조정황이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이 대정현감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守令)이 관에 임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해 아뢰기를, “수령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이란 수령 칠사(七事)⁵⁸⁾ 외,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그 항목을 질문하였고 조정황이 수령 칠사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낱낱이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전에 수령의 일을 본적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감찰(監察)이었다가 이번 직책으로 옮겨 배수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찰이라는 전직은 어떤 일이었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장흥고(長興庫)⁵⁹⁾의 관원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

57) 조정황(?~?): 황해도 해주 태생. 무과급제자. 1650년(효종 1) 박승충(朴承忠)의 후임으로 대정현감으로 왔었고, 1653년에 떠남. 이후 1670년(현종 11)에는 전라도 흥덕현(興德縣)을 맡아 3년 2개월간 다스린 적도 있음.

58) 수령 칠사: 수령이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을 말함. 곧, 농상성(農桑盛: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군정을 닦음)·부역균(賦役均: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임.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음.

59) 장흥고(長興庫): 고려·조선시대에 돛자리(席子)·유둔(油屯) 등을 관장하던 관서. 유둔은 사람이 없거나 누울 때 바닥에 까는 물건, 혹은 농작물 따위를 넣어 말리는 자리를 말함. 이들은 거친 것에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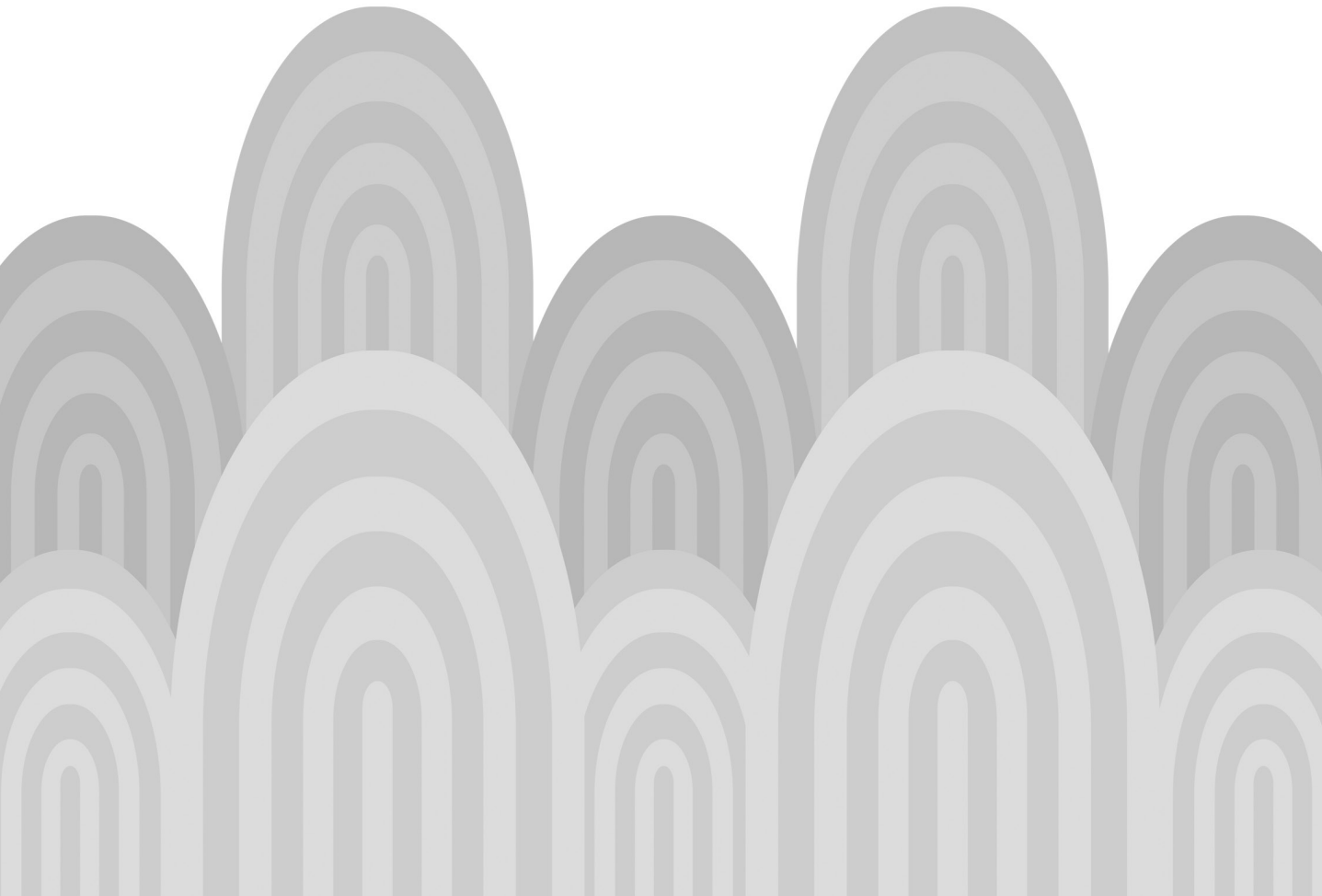
금이 말하기를, “어떤 일을 맡았었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쌀과 면화를 담당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쌀과 면화 외, 별도로 다른 일은 맡지 않았었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다른 일은 맡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부임하는 곳은 어떠하다고들 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수령의 일곱 가지 일[七事]’이라는 것은 그것을 암송하는 것을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이 감히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다만 재주가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도 상벌이 있긴 하나, 수령으로서 관에 임하면서 청렴과 검소함을 우선으로 하는데 하물며 바다 건너 까마득히 먼 지방이니 너는 힘을 다해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죽을 때까지 감히 진력(盡力)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친히 만나보고 얼굴을 봐 유지하는 것은 외방으로 나가는 하직(下直)과는 다름이 있어 그런 것이니 훗날 만약 혹 법을 어긴다면 결단코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잘 살피 알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 감히 불법을 범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인견을 끝내고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6〉

△ 주제어: 야대청, 대정현감, 조정황, 수령 철사, 장흥고.

터 여러 가지 무늬를 놓아 꾸민 고급품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임. 그 재료 또한 다양함.

1651年



❖ 順治 八年 辛卯 二月 十三日 庚申

○ 全南監司書目, 濟州牧使呈, 以旌義縣監安緝罪狀, 令朝廷處置事.

❖ 효종 2년(1651) 신묘년 2월 13일(경신)

□ 정의현감 안집(安緝)의 죄상을 조정에서 처리해줄 것을 청하는 전라남도 감사의 서목(書目)

○ 전남감사의 서목(書目)⁶⁰⁾에 “제주목사의 정문(呈文)⁶¹⁾에 ‘정의현감 안집(安緝)⁶²⁾의 죄상을 조정에서 처치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정의현감, 안집.

60) 서목(書目): 요점만 따서 따로 적어 보고서에 첨가한 지면(紙面).

61) 정문(呈文): 하급 관아에서 동일한 계통의 상급 관아로 올리는 공문.

62) 안집(?~?): 1648년(인조 26) 11월에 도입하여 1651년(효종 2) 1월에 떠났다.

❖ 順治 八年 辛卯 二月 二十日 丁卯

- 義禁府啓曰, 以刑曹粘目, 旌義縣安緝拿來處置事, 命下矣. 卽當發遣羅將, 而船格整齊渡海之際, 非但多有弊端, 當此窮春, 一路夫馬定給之弊, 亦不可不念, 稍待安緝出來之期, 發遣拿〈來〉何如? 傳曰, 依啓. 【以上義禁府騰錄】

❖ 효종 2년(1651) 신묘년 2월 20일(정묘)

□ 안집(安緝)이 돌아온 후에 잡아올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형조 점목(粘目)⁶³⁾에 정의현감(旌義縣監) 안집(安緝)을 잡아와 처리하는 일을 명하였습니다. 즉시 나장(羅將)을 보내야 할 것이지만 선격(船格)을 정돈하여 바다를 건널 때에는 많은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춘궁기를 당하여 노정(路程)에 인부와 말을 정급(定給)하는 폐단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집이 나올 때를 조금 기다렸다가 보내어 잡아오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의금부등록⁶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정의현감, 안집.

63) 점목(粘目): 계본(啓本)에 덧붙인 절목(節目)·사목(事目)·조목(條目) 등.

64) 의금부등록(義禁府騰錄):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중죄인에 대한 심문과 조정의 큰 옥사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던 의금부의 업무를 기록한 책.

❖ 順治 八年 辛卯 二月 二十二日 己巳

- 晝講時, 侍讀官李海昌, 榻前所啓, 臣以爲, 濟州爲邑, 在禹貢, 則爲要荒之地也. 臣聞旌義縣監安緝, 欲殺牧使, 至於拔劍於衆坐之中, 其劍旣已上送, 則凡在聽聞, 莫不驚駭, 而乃以夫馬些少之弊, 至令待越海後拿來, 豈可使如此莫重罪人, 晏然出來乎? 且若不差送王府羅將, 依法拿來, 則安得以警動懲懼於絕島人民聞見之處, 而朝廷體統之重乎? 臣意如是, 敢此陳達. 上曰, 此言頗有所見, 亦有遠慮. 此意言于該曹, 急急發送羅將, 及其未出來前, 拿來義禁府.

❖ 효종 2년(1651) 신묘년 2월 22일(기사)

□ 주장에서 제주에 나장을 보내서 안집(安緝)을 잡아올 것을 논의함

- 주장(晝講) 때에 시독관(侍讀官) 이해창(李海昌)⁶⁵⁾이榻전(榻前)⁶⁶⁾에서 아뢰기를, “신이 생각건대, 제주는 우공(禹貢)⁶⁷⁾에 있어 곧 요황(要荒)⁶⁸⁾과도 같은 지방입니다. 신이 들으니 정의현감 안집(安緝)이 목사를 살해하고자 여럿이 앉아있는 데서 검을 뽑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검은 이미 올려 보내졌다고 합니다. 무릇 듣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말로 인한 사소한 폐단 때문에 바다를 건너 온 후에 기다렸다 잡아오라고 명이 내려졌다하니 어찌 이와 같이 막중한 죄인에게 느긋하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의금부[王府⁶⁹⁾]의 나장을 보내어 법에 의거해서 잡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먼 섬의 백성들이 보고 듣는 곳을 단속하고 징계하여 조정의 체통을 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뜻이 이와 같음을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자못 헤아려 생각한 바가 있고 또한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있다. 이 뜻을 해당 관청

65) 이해창(1599~1651):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계하(季夏). 호는 송파(松坡). 1630년(인조 8)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50년(효종 1)에 춘추관편수관으로서 《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고 그 해에 응교·시독관·교수를 겸직하였다. 이어 이듬해에 사간이 되었다. 시문에 능하였다.

66)榻전(榻前): 임금의 자리 앞. 어전(御前).

67) 우공(禹貢): 《서경》의 편명. 중국 구주(九州)의 지리와 산물에 대하여 쓴 글. 《서경》 서(序)에, “우 임금이 구주를 갈라서 산천을 개척하고, 토산(土產)에 의하여 조공(朝貢)을 받았다.[禹別九州 隨山濬川 任土作貢]”는 내용이 보인다.

68) 요황(要荒): 요복(要服)과 황복(荒服)을 줄여 쓴 말로, 본래 중국 천자의 도읍지에서 먼 지방을 말한다. 여기서는 제주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본토 밖 5백리 되는 곳을 번복(藩服)이라 하고, 거기서 다시 5백리 밖을 유복(綏服), 유복에서 5백리 밖을 요복(要服), 요복에서 5백리 밖을 황복(荒服)이라 하였다.

69) 왕부(王府): 의금부(義禁府)의 별칭.

에 말하여 서둘러 나장을 보내어 그가 나오기 전에 의금부로 잡아오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정의현감, 안집, 이해창.

❖ 順治 八年 辛卯 二月 二十二日 己巳

- 義禁府啓曰, 因筵臣啓辭, 前旌義縣監安緝, 未出來前, 急送羅將拿來事, 命下矣, 當刻發遣羅將之意, 敢啓. 答曰, 知道. 【以上義禁府謄錄】

❖ 효종 2년(1651) 신묘년 2월 22일(기사)

안집(安緝)을 잡아올 나장을 곧바로 보내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연신(筵臣)⁷⁰⁾의 계사(啓辭)⁷¹⁾에 따라 전 정의현감 안집(安緝)을 나오기 전에 급히 나장을 보내어 잡아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즉시 나장을 보낼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의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정의현감, 안집.

70) 연신(筵臣): 경연(經筵)에서 경전을 강론하는 관리.

71) 계사(啓辭): 죄인의 죄에 대하여 의논하여 임금께 아뢰는 것.

❖ 順治 八年 辛卯 三月 九日 丙戌

- 迎接都監啓曰, 大通官金三達, 出送差備譯官, 稱以白話, 傳言于臣等處曰, 濟州定配人朴士明之妻, 乃小人之四寸妹也, 其夫士明, 罪犯輕重, 雖未可知, 非老妻·弱子之所可干預也. 若蒙天恩, 移配於清北某邑, 則生前往來時, 可得相見, 至舉其兄金汝亮之言, 反覆懇乞矣. 臣等取考士明罪案, 扇動浮言, 傳播衆人, 以爲挑禍之計云, 則其罪, 果爲不輕, 而三達懇乞, 縷縷不已, 敢此仰稟. 傳曰, 此非如除拜邊將, 徒年輕罪之類, 有難輕許開路, 都監措辭開諭, 可也.

❖ 효종 2년(1651) 신묘년 3월 9일(병술)

□ 김삼달(金三達)이 제주에 정배된 죄인 박사명(朴士明)의 처자를 청북(淸北)에 이배시켜 달라고 누차 요구하였다는 영접도감의 계

- 영접도감(迎接都監)⁷²⁾이 아뢰기를, “대통관(大通官)⁷³⁾ 김삼달(金三達)이 임시 역관을 보내어 중국어로 신 등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제주 정배인 박사명(朴士明)의 처는 곧 소인의 사촌누이입니다. 그 남편 사명의 범죄가 가볍고 중한 지를 비록 알 수 없고,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이 간여할 바가 아니지만 만약 성은을 입어 청북(淸北)⁷⁴⁾의 모습(某邑)으로 배소를 옮기게 된다면 생전 왕래할 때에 서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형 김여량(金汝亮)⁷⁵⁾을 거론하는 말까지 하면서 되풀이하여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신 등이 사명의 죄안(罪案)을 취하여 살펴보니, 근거 없는 말을 선동시켜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려 화(禍)를 일으키려 계획하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 죄가 과연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달이 간곡히 빌고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감히 아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는 변장(邊將)을 임명하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 도형(徒刑)에서 죄를 가볍게 하는 유(類)는 가벼이 허락하여 길을 트이게 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도감은 글을 잘 꾸며서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김삼달, 박사명, 김여량, 대통관.

72) 영접도감(迎接都監): 사신의 영접을 맡은 임시기관.

73) 대통관(大通官): 통역관(通譯官) 또는 번역관(翻譯官)을 말한다.

74) 청북(淸北): 청천강 이북, 곧 평안도를 이르는 말이다.

75) 김여량(1603~1683): 문신.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명보(明甫), 호는 오소재(吾巢齋)이다. 김집(金集)·민재문(閔在汶)의 문인이다. 지방관으로 있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 부임하였던 군현마다 송덕비가 세워졌다.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되었다.

❖ 順治 八年 辛卯 四月 二十五日 辛未

- 禁府粘目. 答曰, 耽羅一域, 邈在海外, 王化之不及, 貪官汚吏, 任其所欲, 恣行不道, 有冤莫伸, 有弊莫救, 非但耳目之所不及, 繡衣之行, 亦不得到焉. 嗚呼, 此地之民, 獨非我民乎? 爲慮是憂, 曾於卽位之初, 別擇文官以送, 今有所云云. 罪中構捏之言, 誠不是 [足] 取信, 想其梗概, 則帶率市人, 處於利窟, 已涉可怪, 前後文報, 亦似相較, 出於忿捷, 不可謂之公論, 明矣. 在下之人, 雖直不右[古], 乃是古賢之說是如爲有在果, 此語莫非出於私情不察者矣. 近來弊習, 上下相蒙, 掩過行詐, 爲能事, 無乃引喻之不當耶? 今此安緝之所爲, 極爲叵測, 已不足說, 而金壽翼之事, 亦甚可怪, 不可不明查重處. 剛明御史, 十分擇差, 入島嚴查, 兼爲採訪民瘼, 以爲處置之地爲旆, 金壽翼段置, 爲先遞差, 擇出交代, 催促發送爲旆, 安緝乙良, 姑爲因囚, 查覈後處治.

❖ 효종 2년(1651) 신묘년 4월 25일(신미)

□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점목(粘目)에 답하기를, “탐라는 아득히 바다 밖에 있어 왕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다. 탐관오리가 그 욕심에 따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제 멋대로 행한다. 원통함이 있어도 펼 수 없고, 병폐가 있어도 구할 수 없으니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어사의 순시 또한 이를 수 없다. 아! 이 땅의 백성만이 유독 나의 백성이 아니던가? 염려되고 근심된다. 일찍이 즉위한 초에 특별히 문관을 가려서 보냈는데 지금 운운하는 바가 있다. 죄 가운데 꾸며내어 하는 말은 진실로 취하여 믿을 만하지 않다. 생각건대, 그 대강의 줄거리인 즉 저자의 백성들을 거느려서 이굴(利窟)⁷⁶⁾에 처하였으니 이미 괴이하다 하겠다. 앞뒤 문 서로 알려진 것은 또한 서로 비교할 것 같으면 분히 여기고 성이 나는 것에서 나왔으니 공론이라 말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비록 그 일이 옳다하더라도 돕지 않겠다고 옛 현인이 말했거니와⁷⁷⁾ 이 말은 아닌 게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불찰에서 나온 것이다. 근래 폐습이 위와 아래를 서로 덮어

76) 이굴(利窟): 잇구멍. 이곳이 생길 만한 일거리나 기회.

77) 아래에 있는 사람이 비록 그 일이 옳다하더라도 돕지 않겠다고 옛 현인이 말했거니와: 주희(朱熹)가 효종(孝宗)에게 아뢰기를, ‘무릇 옥송(獄訟)에 아래사람으로서 위사람을 범한 자와, 낮은 이로서 높은 이를 업신여기는 자는 비록 그 일이 옳았다 하더라도 돕지 아니할 것이요, 옳지 않을 때는 그 죄를 범인이 지은 죄 이상에다 둘 것입니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말이다.

잘못을 가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니 예를 들어 비유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지금 이 안집(安緝)이 한 것은 지극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김수익(金壽翼)⁷⁸⁾의 일 또한 심히 괴이하다 하겠으니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강직하고 명석한 어사를 잘 가려 뽑아 섬에 들여보내 엄히 조사하게 하고, 겸하여 백성들의 폐막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라. 김수익도 우선 체차(遞差)하여 끌라내어 바꿀 것이니 서둘러 떠나보낼 것이며 안집은 그대로 가두어 죄상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탐라, 안집, 김수익.

78) 김수익(1600~1673):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로(星老), 호는 청악(靑岳)이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선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다. 1649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으나 탐관오리로 탄핵을 받아 영남에 유배되었다가, 이경석(李景奭)과 이시백(李時白)의 변호로 1658년 방환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저서로는 《남악집(南岳集)》이 있다.

❖ 順治 八年 辛卯 四月 二十六日 壬申

○ 吏曹啓曰, 濟州牧使差出政事, 取稟. 傳曰, 明日爲之.

❖ 효종 2년(1651) 신묘년 4월 26일(임신)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임명하는 일에 대해 취품(取稟)하는 이조의 계

○ 이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임명하는 일을 취품(取稟)⁷⁹⁾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 하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79) 취품(取稟): 임금에게 아뢰어 하명을 기다리는 것.

❖ 順治 八年 辛卯 五月 十一日 丁亥

○ 濟州牧使洪瑑上疏. 答曰, 省疏具悉. 爾其依願入來.

❖ 효종 2년(1651) 신묘년 5월 11일(정해)

□ 흥전(洪瑑)의 상소

○ 제주목사 흥전(洪瑑)⁸⁰⁾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다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와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흥전.

80) 흥전(1606~1665):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백윤(伯潤), 호는 죽암(竹巖). 1651년(효종 2) 4월 김수익(金壽翼)의 후임으로 제주목사로 제수되었지만 도입하기 전인 5월에 청주목사로 환직(還職)하였다. (《효종실록》 효종 2년 5월 13일조 참조)

❖ 順治 八年 辛卯 五月 十一日 丁亥

○ 謝恩, 濟州牧使洪瑑.

❖ 효종 2년(1651) 신묘년 5월 11일(정해)

홍전(洪瑑)이 사은함

○ 제주목사 홍전(洪瑑)이 사은(謝恩)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사은, 홍전.

❖ 順治 八年 辛卯 五月 十三日 己丑

○ 楊前所啓, 濟州牧使洪瑑遞差, 淸州牧使仍任事, 捧承傳.

❖ 효종 2년(1651) 신묘년 5월 13일(기축)

□ 홍전(洪瑑)의 체차와 청주목사의 잉임에 대해 전지를 작성하여 올림.

○ 어전에서 아뢴 바, 제주목사 홍전(洪瑑)의 체차(遞差)와 청주목사를 잉임(仍任)⁸¹⁾하는 일에 대해 전지(傳旨)를 작성하여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홍전.

81) 잉임(仍任): 관원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그 직을 맡겨 둠. 유임(留任).

❖ 順治 八年 辛卯 五月 二十日 丙申

- 府啓, 耽羅一域, 邈在海外, 俗悍民嚚, 王化之所不沾, 若非剛明謹恪之人, 難以撫禦, 朝廷之擇遣有名望文官, 意非偶然, 前牧使金壽翼, 輟侍從之班, 受委寄之重, 而遽遭管下之變, 誠極寒心. 今日之代是任者, 益難其人, 而新除授牧使丁彥璜, 飲酒四十年, 已成酒病, 不能一日去酒, 飲必沈酗, 處事顛倒. 曾守成川, 旋以酒失見敗, 至於拿推, 及宰安東·淮陽, 皆以排棄軍政, 凌蔑主將, 見黜, 其到處沈酗廢事之狀, 國人之所共知也. 海防莫重之任, 決不可付諸此人, 請丁彥璜遞差, 其代各別擇送. …….

❖ 효종 2년(1651) 신묘년 5월 20일(병신)

□ 정언황(丁彥璜)의 체차(遞差)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탐라는 아득히 바다 밖에 있어 풍속이 모질고 백성은 어리석어 왕의 교화가 적셔지지 않는 곳입니다. 강직하고 명석하며 몸가짐이나 언행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백성을 어루만지고 적을 방어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가려서 보낼 때에 명망이 있는 문관으로 하는 것은 뜻이 우연이 아닙니다. 전 목사 김수익(金壽翼)은 시종(侍從)의 반열을 떠나서 막중한 책임을 맡았는데 갑자기 관할하는 지역에서 변(變)을 만났으니 진실로 심히 한심합니다. 오늘 이 임무를 대신할 자로 적임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데 새로 제수한 목사 정언황(丁彥璜)⁸²⁾은 술을 마신지 40년이 되어 이미 술병을 얻어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반드시 술에 폭 빠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엉망이 됩니다. 일찍이 성천부사(成川府使)로 있을 때 곧 술에 취하여 실수를 저질러 낭패를 당하여 잡혀와 추문(推問)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동(安東)과 회양(淮陽)의 수령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군정(軍政)을 폐기하고 주장(主將)을 능멸하여 쫓겨났었습니다. 그이르는 곳마다 술에 폭 빠져 일을 그르친 것은 나라 백성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바다의 방어가 막중한 임무인데 결코 이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정언황을 체차(遞差)하시고 그 대신에 각별히 가려 보내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탐라, 정언황, 김수익.

82) 정언황(1597~1672):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중휘(仲徽) 또는 위수(渭叟), 호는 묵공옹(默拱翁). 1653년 5월 13일 홍진(洪璩)을 대신하여 제주목사로 삼았는데 사헌부에서 그의 부당함을 아뢰었다. 이에 제주목사가 다시 이원진(李元鎭)으로 바뀌게 되었다.

❖ 順治 八年 辛卯 五月 二十一日 丁酉

- 政院啓曰, 濟州牧使有闕矣. 差出發送, 一日爲急, 而以一守令有闕, 曾無稟政之規, 明日誕日, 二十四日國忌, 二十三日齋戒, 前頭數三日, 無無故之日, 濟州牧使差出政事, 請令該曹, 速爲稟旨處置, 何如? 傳曰, 允.

❖ 효종 2년(1651) 신묘년 5월 21일(정유)

- 제주목사를 임명하는 일을 속히 아뢰어 교지(教旨)를 받들어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의 자리가 비어있으니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수령 하나가 비어있는 것으로 품정(稟政)하는 규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탄일(誕日)이고, 24일이 국기일(國忌日)이어서 23일은 재계일(齋戒日)이니 앞으로 삼일은 무고(無故)한 날이 없습니다. 제주목사를 임명하는 일을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속히 아뢰어 교지를 받들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 順治 八年 辛卯 五月 二十一日 丁酉

- 院啓, 前濟州牧使丁彥璜, 不但飲酒廢事, 素有風痺偏廢之疾, 其不敢越海赴任, 人所共知, 然以事體言之, 則自朝廷知其實狀而處之, 可也 憲府之間, 至於請遞, 則雖是擇人之意, 不無妄論之失, 請命遞差. 【批答見上】

❖ 孝宗 2년(1651) 신묘년 5월 21일(정유)

- 정언황(丁彦璜)이 술을 먹고 직무를 폐했을 뿐만 아니라 풍비(風痺)가 있어 바다를 건너 부임하기 어려우므로 체차(遞差)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 정언황(丁彦璜)은 음주로 일을 폐할 뿐만 아니라 평소 풍비(風痺)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질병이 있어 그가 감히 바다를 건너 부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일의 이치와 정황으로 말하자면, 조정이 그 실상을 알아 처리해야 옳습니다. 사헌부가 살펴서 체차(遞差)의 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니⁸³⁾ 비록 이 사람을 뽑은 뜻이 망령된 의론의 실수가 없지 않았지만 청컨대 체차를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비답은 앞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정언황.

83) 사헌부가 살펴서 체차(遞差)의 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사헌부는 관원의 인사에도 관여하여 임금이 결정 임명한 관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경(署經) 기관이기도 하였다.

❖ 順治 八年 辛卯 六月 三日 戊申

- 前濟州牧使丁彦璜, 當爲厭避苦任, 除拜累日, 不即上來, 事極可駭, 拿推事, 捧承傳. …….

❖ **효종 2년(1651) 신묘년 6월 3일(무신)**

전 제주목사 정언황(丁彦璜)을 잡아다 추문(推問)하는 일로 전교를 작성하여 올림

- 전 제주목사 정언황(丁彦璜)이 귀찮고 힘든 임무를 싫어서 피하려고 관직이 제수되었는데도 즉시 올라오지 않았다. 일이 심히 놀랄 만한 일이다. 잡아다가 추문하는 일로 전지(傳旨)를 작성하여 올렸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정언황.

❖ 順治 八年 辛卯 六月 五日 庚戌

- 司憲府照本, …… 又照本, 前執義張應一, 前掌令尹璡, 前持平沈得行等, 前濟州牧使丁彥璜論遞, 跡涉循私, 罪各杖八十贖, 公罪. 啓竝只罷職爲乎矣, 張應一乙良, 棄. …….

❖ 효종 2년(1651) 신묘년 6월 5일(경술)

□ 장응일(張應一) 등의 죄를 조율하여 보고하는 사헌부의 조본(照本)

- 사헌부의 조본(照本)에, 〈중략〉 또 조본에, “전 집의 장응일(張應一)⁸⁴⁾, 전 장령 윤겸(尹璡), 전 지평 심득행(沈得行) 등이 전 제주목사 정언황(丁彥璜)의 체차(遞差)를 논함에 사사로운 감정만을 따랐으니 죄로 각각 장 80속(贖)의 공죄(公罪)⁸⁵⁾로 다스리십시오.”라고 아뢰었다. “모두 파직하되 장응일은 놔두어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장응일, 윤겸, 심득행, 정언황.

84) 장응일(1599~1676):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경숙(經叔), 호는 청천당(聽天堂). 시호는 문목(文穆). 우승지·부제학·대사간을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성격이 청렴 강직하였다.

85) 공죄(公罪): 사죄(私罪)와 대칭되는 죄로, 관원이 공무(公務)와 관련하여 실수로 범한 죄를 말한다.

❖ 順治 八年 辛卯 六月 十九日 甲子

- 晝講時, 輪對官武臣申景琥曰, 臣曾爲北道守令, 北馬多有濟州馬, 臣問其故, 答以試才賞賜之所及云云. 今則年月已久, 其時之馬, 必已殆盡矣. 上曰, 近來北馬, 多有取來者云, 然乎? 景琥曰, 本道監司, 將其地馬, 左割耳, 行會列邑, 一切禁斷, 不爲出送, 似無如此之弊矣. 參贊官俞樾曰, 監司方爲禁斷云, 更爲申飭, 分付本道, 何如? 上曰, 依爲之. 【備局臚錄】

❖ 효종 2년(1651) 신묘년 6월 19일(갑자)

□ 주장에 신경호(申景琥) 등이 입시하여 북마(北馬)를 가지고 오는 일을 금하여 단속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주장(晝講)할 때에 윤대관(輪對官) 무신 신경호(申景琥)⁸⁶⁾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함경도[北道]의 수령으로 있을 때, 북마(北馬)⁸⁷⁾에 제주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기를, 시재(試才)에 상으로 준 것이 이른 것이라 운운하였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오래되어 그때의 말이 반드시 거의 없어졌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북마를 가지고 오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신경호가 말하기를, “본도 감사가 그 지방의 말을 가지고 좌할(左割)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 읍에서 행회(行會)⁸⁸⁾하여 일체 금단(禁斷)하여 내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이러한 폐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유황(俞樾)⁸⁹⁾이 말하기를, “감사가 이제 금지하여 단속한다고 하니 다시 단단히 경계하여 본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신경호, 유황, 제주.

86) 신경호(?~?): 본관은 평산(平山). 무과 급제 후 제주목사(濟州牧使), 황해병사(黃海兵使) 등을 역임하였다. 제주목사로 1634년(인조 12) 9월에 도입하고 1637년 5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제주목사 재임시 광양(廣壤) 땅에 연무정(演武亭)을 건립하였다.

87) 북마(北馬): 함경북도(咸鏡北道)에서 나는 말.

88) 행회(行會): 조정의 지시나 명령을 각 관(官)이 하급기관에 알리고 실행 방법을 의논하는 것.

89) 유황(1599~1655):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숙(典叔), 호는 봉주(鳳洲). 시호는 충간(忠簡). 병조참의·부승지·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철저한 배척송명파 노선을 걸었고, 호란이 끝난 뒤에도 참상을 잊지 말 것을 역설하였다.

❖ 順治 八年 辛卯 七月 五日 庚辰

○ 嚴鼎耆,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後運歲貢二百匹內, 上來時各官, 病留者七匹, 倒損者三匹, 放逸者二匹, 合十二匹, 其餘上來馬一百八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矣. 但今此馬匹, 一依先運上來馬例, 姑放箭串, 以爲日後捉來御覽之地, 而許多馬匹一時畢捉, 不但其勢未易, 或不無先後馬混雜難辨之患, 在前或有景福宮墻內放送之時. 今依前例, 姑爲放養於景福宮內, 以除放捉, 恐或便當, 敢此仰稟. 傳曰, 知道. 景福宮內放逸, 未妥矣.

❖ 孝宗 2년(1651) 신묘년 7월 5일(경진)

□ 제주의 세공마(歲貢馬)를 일단 경복궁에 놓아기르는 것이 편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엄정구(嚴鼎耆)⁹⁰⁾는 사복시(司僕寺) 관원인데 제조(提調)⁹¹⁾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의 후운(後運) 세공마 200필 중 올라올 때 각 관아에 병이 나서 머물고 있는 것이 7필, 죽어 잃은 것이 3필, 달아난 것이 2필 합 12필이고, 그 나머지 올라온 말 188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적어 들였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말들은 한결같이 선운(先運)의 예에 의거하여 우선 전곳(箭串)⁹²⁾에 풀어놓아 이후에 잡아와서 임금께서 볼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말을 한꺼번에 다 잡는 것은 그 형세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후의 말이 섞여서 구별하기 힘든 우환이 없지 않습니다. 전에는 혹 경복궁(景福宮) 담장 안에 풀어놓은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례에 따라서 우선 경복궁 안에 놓아 길음으로써 풀어놓고 잡는 것을 없애는 것이 혹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경복궁 안에 풀어놓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엄정구, 제주, 경복궁, 전곳.

90) 엄정구(1605~1670): 본관은 영월(寧越). 자는 중숙(重叔), 호는 창랑(滄浪). 충청도염문사(忠淸道廉問使)·평안도도사·이조좌랑·한성부좌윤 등을 역임하였다.

91) 제조(提調): 각사(各司)·각청(各廳)의 관제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이 그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벼슬로서, 종1품 또는 정2품의 품질(品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에 일컫는다.

92) 전곳(箭串): 지명(地名)으로 살곶. 도성(都城)의 동교(東郊)인데, 지세가 평탄하고 지역이 넓어서 열무(閱武)하는 곳으로 쓰인다. 지금의 목섬 빌.

❖ 順治 八年 辛卯 七月 二十一日 丙申

- 嚴鼎耆, 以司僕寺言啓曰, 前濟州牧使金壽翼遞任進上馬三疋上來, 禾毛色別單以入, 而依前內廄立養, 何如? 傳曰, 知道.

❖ 효종 2년(1651) 신묘년 7월 21일(병신)

- 김수익(金壽翼)이 올려보낸 진상마 3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엄정구(嚴鼎耆)가 사복시(司僕寺)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 김수익(金壽翼)의 체임 진상마(遞任 進上馬) 3필이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⁹³⁾으로 들고 예전처럼 내구(內廄)⁹⁴⁾에서 기르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엄정구, 제주목사, 김수익.

93) 별단(別單):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

94) 내구(內廄): 임금의 말을 먹이는 곳.

❖ 順治 八年 辛卯 八月 十日 乙卯

- 趙啓遠, 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月令濟州別進上膳狀中, 大妃殿【缺三字】百四十貼, 大殿引鮓一百六【缺一字】注之書填, 而一一計數, 則引鮓十注之, 搥鮓九串欠縮, 問于陪持人, 則本州封標上送, 渠則陪來而已云, 莫重進上, 不謹封進, 以致如此, 事極可駭, 封進官吏,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효종 2년(1651) 신묘년 8월 10일(을묘)

□ 대전(大殿)에 들일 전복의 수량에 흠을 낸 제주도의 봉진관리(封進官吏)를 종종 추고(從重推考)하기를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조계원(趙啓遠)⁹⁵⁾은 사옹원(司饗院) 관원인데 도제조(都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월령(月令) 제주 별진상(別進上)⁹⁶⁾ 선장(膳狀)⁹⁷⁾ 중에 대비전에 올리는 【3자가 빠짐】140첩(貼)⁹⁸⁾, 대전(大殿)에 올리는 인복(引鮓) 160【1자가 빠짐】주지(注之)⁹⁹⁾라 쓰고 서전(書填)¹⁰⁰⁾하였는데, 일일이 계산하여 헤아리니 인복(引鮓) 10주지, 추복(搥鮓) 9곳(串)이 부족하였습니다. 배지인(陪持人)¹⁰¹⁾에게 물으니 본주(本州)에서 봉(封)하고 표(標)를 하여 올려 보냈고 저들은 모셔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진상이 막중한데 봉진(封進)을 삼가지 않고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일이 심히 놀랄 만합니다. 봉진 관리를 종종추고(從重推考)¹⁰²⁾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조계원, 제주, 별진상, 인복, 추복.

95) 조계원(1592~1670):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자장(子長). 호는 약천(藥泉). 시호는 충정(忠靖). 효종 때 전라도 관찰사, 현종 때 함경도 관찰사·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형조 판서 등을 지냈다.

96) 별진상(別進上): 연례(年例)나 월례(月例) 이외에 별도로 올리는 진상(進上).

97) 선장(膳狀): 진상(進上)하는 찬선(饌膳)의 물목(物目)이나 이름과 수량을 적은 문건임.

98) 첩(貼): 전복의 묶음을 세는 말. 1첩은 1백 개.

99) 주지(注之): 미역·다시마 따위를 조그마하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덩이를 세는 말. 주지(走之). 미역이나 다시마 따위의 한 묶음을 이르는 말이다.

100) 서전(書填): 주요 공문서 내용의 위조를 막기 위해 발송 공문을 접어서 붙이고, 그 이음새 부분에 글자를 쓰는 것.

101) 배지인(陪持人): 지방관아의 진상(進上)·장계(狀啓)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사람.

102) 종종추고(從重推考): 벼슬아치의 과실이 있을 때 죄과를 따져서 그중 중한 벌에 따라 징계하는 것.

❖ 順治 八年 辛卯 十月 六日 庚戌

- 以濟州按覈御史, 三邑民瘼別單書啓, 傳曰, 本院, 排日催檢, 令各衙門, 趁卽着實回啓, 俾無遷延旣揭玩愒, 終歸無實之弊. 【以上備局謄錄】

❖ 효종 2년(1651) 신묘년 10월 6일(경술)

□ 제주안핵어사(濟州按覈御史)의 서계(書啓)에 대한 전교

- 제주안핵어사가 3읍 백성들의 폐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본원(本院)이 날마다 조사를 재촉하니 각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즉시 착실하게 회계(回啓)¹⁰³하게 하여 기일을 미루며 안일한 태도로 끝내는 실상이 없는 폐단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안핵어사.

103) 회계(回啓): 임금이 각종 계사(啓辭)나 장계(狀啓) 등을 담당 관사(官司)로 계하(啓下)하였을 때 담당 관사에서 해당 사안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아뢰는 행위를 말한다. 복계(覆啓).

❖ 順治 八年 辛卯 十月 八日 壬子

- 義禁府啓曰, 本府規例, 惟日次刑推元情坐起外, 議啓照律等事, 若無判義禁, 則知事以下, 不敢爲之, 故前日知事臣朴遜, 以此啓達於榻前, 則以判義禁若呈辭, 不得行公, 何如等待? 今後照律定配等事, 諸堂上相議爲之, 勿鉤拘常規爲教, 故自其後, 遵依聖教舉行. 今日雖是上絃, 不得用刑, 以其久未開坐, 臣等早朝齊會于本府, 各道放未放啓本, 及各人等上言回啓之外覈處公事, 竝亦爲議啓矣. …… 濟州御史查覈狀啓, 則臣尹履之, 與金壽翼, 妻三寸相避, 不得同參, 此既與刑推元情, 不同, 又非照律定配之比. 臣李厚源·臣崔惠吉兩人, 不可謂備員, 本府與法府之必備三員之規, 乃所以重其事也. 臣等不可爲之, 判義禁還朝不遠, 此等議啓, 姑待其還, 舉行, 何如? 傳曰, 允. 【以上禁府謄錄】

❖ 孝宗 2년(1651) 신묘년 10월 8일(임자)

- 판의금(判義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윤이지(尹履之) 등에 대해 의계(議啓)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 규례에 오직 당번의 형추(刑推)¹⁰⁴와 원정(元情)¹⁰⁵의 업무 외에 의계(議啓)¹⁰⁶하고 조율(照律)¹⁰⁷하는 등의 일은 만약 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¹⁰⁸가 없으면 지사(知事) 이하가 감히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에 지사 신 박서(朴遜)가 이러한 문제로 어전에 의견을 아뢰니, 판의금부사가 정사(呈辭)¹⁰⁹하여 공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찌 기다리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형률에 비추어 배소를 정하여 귀양을 보내는 등의 일은 여러 당상(堂上)이 서로 의논하여 통상의 규례에 얽매이지 말라고 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성교(聖教)를 따라 거행했습니다. 오늘은 비록 상현(上絃)이어서 형을 가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업무를 보지 못했기에 신 등은 이른 아침에 본부(本府)에 모두들 모여 각 도(道)의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¹¹⁰과 각 인(人) 등의 상언

104) 형추(刑推): 죄인에게 형장을 가하여 심문하는 것.

105) 원정(元情): 사정을 하소연함.

106) 의계(議啓):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상주하는 것.

107) 조율(照律):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김.

108) 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 의금부의 으뜸 벼슬. 종1품.

109) 정사(呈辭): 사직 또는 휴가의 청원을 내는 것.

110)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 사면령이 내린 뒤 각 도의 감사가 그 도의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

(上言)에 대한 회계(回啓) 외에 조사하여 밝히는 공적인 일들을 아울러 또한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 〈중략〉 제주어사의 사핵 장계(查覈狀啓)에는 신 윤이지(尹履之)¹¹¹⁾가 김수익(金壽翼)과 처삼촌 관계로 상피(相避)¹¹²⁾가 되어 같은 곳에 자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형추(刑推)와 원정(元情)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또 법률에 비추어 배소를 정하여 귀양을 보내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신 이후원(李厚源)¹¹³⁾·신 최혜길(崔惠吉)¹¹⁴⁾ 두 사람으로 관원이 갖춰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부와 법부(法府)¹¹⁵⁾에 반드시 관원 세 사람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일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 등은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판의 금부사가 조정으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런 의계(議啓)는 우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의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어사, 박서, 윤이지, 김수익, 이후원, 최혜길, 상피.

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계본으로, 이를 토대로 사면이 시행되었다.

- 111) 윤이지(1579~1668):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소(仲素), 호는 추봉(秋峯). 시호는 정효(靖孝). 1645년(인조 23) 평안감사가 된 뒤 함경감사를 거쳐, 1650년(효종 1)에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1668년(현종 9)에 판돈녕부사로 있던 중 죽었다. 저서로는 《추봉집》이 있다.
- 112) 상피(相避):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는 같은 관청에 재임하거나 업무상 서로 혐의(嫌疑)가 있는 자리에 재직하는 것을 피하는 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동성(同姓) 삼촌(三寸) 질녀(姪女)의 남편까지 상피법(相避法)의 적용을 받았음.
- 113) 이후원(1598~1660):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심(士深). 호는 우재(迂齋)·남항거사(南港居士).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인조반정 후 정사 공신(靖社功臣) 3등으로 완남군(完南君)에 봉해졌다.
- 114) 최혜길(1591~1662):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적(子迪), 호는 유하(柳下). 이조참판, 개성유수 등을 지냈다.
- 115) 법부(法府): 형조·사헌부·한성부의 별칭인데, 여기에서는 형조를 가리킨다.

❖ 順治 八年 辛卯 十月 十日 甲寅

- 禮曹啓曰, 政院啓辭, 濟州按覈御史李慶億, 方在島中, 別爲下諭, 文武兩技, 使之試取上來事, 命下矣. 自前兩界, 別遣京官, 文武才藝試取之時, 例有自京命出書題, 定送武技之規, 似當, 依此舉行, 敢此仰稟. 傳曰, 依例爲之事, 傳教矣. 依政院啓辭, 令大提學卽出書題, 別定禁軍, 齎傳御史於島中, 使之製來後, 依例科次出勝之意, 竝爲下諭, 何如? 傳曰, 李慶億, 旣已乘舟云, 今姑置之, 待明春別遣御史, 依例試取, 以爲慰悅遠人, 可也.

❖ 孝宗 2년(1651) 신묘년 10월 10일(갑인)

□ 大제학에게 서제(書題)를 내게 하여 제주에 있는 이경억(李慶億)에게 전하여 시취(試取)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啓辭)에 ‘제주안핵어사 이경억(李慶億)이 지금 섬에 있는데 특별히 하유(下諭)¹¹⁶⁾하여 문무 두 기예를 시험하여 뽑아 올라오게 하는 일을 명하였습니다. 전부터 양계(兩界)에 경관(京官)을 특별히 보내어 문무 재예를 시험하여 뽑을 때에는 으레 서울로부터 서제(書題)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무기지규(武技之規)를 정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자, 전교하기를, ‘예에 따라 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승정원 계사에 의거하여 대제학에게 즉시 서제를 내도록 하고 별정 금군(別定禁軍)이 섬에 있는 어사에게 가지고 가서 전달하여 제술(製述)하여 오게 한 후 예에 따라 과차(科次)¹¹⁷⁾를 매겨 출방(出榜)¹¹⁸⁾할 뜻을 아울러 하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경억이 이미 배에 올랐다고 하니 지금은 우선 두었다가 내년 봄을 기다려 어사를 특별히 보내어 예에 따라 시험하여 뽑아 먼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안핵어사, 이경억.

116) 하유(下諭): 명령을 내려서 알림.

117) 과차(科次):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차례. 성적을 9등(等)으로 나누어,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하(三下) 및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로 규정, 이로써 우열(優劣)을 가렸고, 삼하 이상을 급제(及第)로 하였다.

118) 출방(出榜): 과거 합격자 명단을 입격방목(入格榜目) 이외에 따로 방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

❖ 順治 八年 辛卯 十月 十五日 己未

- 以禮曹, 濟州按覈御史啓本復設教授事粘目, 傳曰, 前日諸道教授差送事, 定奪矣, 何至今寥寥耶? 問于吏·禮曹以啓.

❖ 효종 2년(1651) 신묘년 10월 15일(기미)

- 교수의 복설(復設)을 청한 제주안핵어사의 계본(啓本)을 첨부한 예조의 접목에 대한 전교
- 예조의 제주안핵어사 계본(啓本)에 교수를 다시 설치하는 일에 관한 접목(粘目)¹¹⁹⁾에 전교하기를, “전에 모든 도(道)의 교수를 뽑아 파견하는 일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다. 어찌 지금까지도 조용한가? 이조와 예조에 물어 아뢰어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안핵어사, 교수.

119) 접목(粘目): 계본(啓本)에 덧붙인 절목(節目)·사목(事目)·조목(條目) 등.

❖ 順治 八年 辛卯 十月 二十八日 壬申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今因濟州按覈御使狀啓, 本寺回啓判付內, 依回啓施行爲乎矣, 陸馬嚴禁雜種事段, 誠是爲在果, 島中亦豈無駑駘馬惡種乎? 今後則凡牧子所徵之馬, 切勿混處屯內, 另作別屯, 毋令相混爲可爲旆, 偷得一匹良馬, 換作駑駘二三之說, 誠是爲置, 旣禁之後, 則陸馬雖不得如意換入, 換於島中, 則甚是易事, 嚴令烙印, 以標官馬之後, 官標馬出在私屯者, 令三邑各別詳察, 以爲嚴治, 且開進告賞給之路, 則庶杜此弊是旆, 陸馬之禁, 尤不可尋常, 嚴立科條, 別作事目, 以爲變通之地爲乎矣, 此等事, 專在於牧使爲人之如何, 奉公之如何, 專責牧使, 使之惕念舉行爲乎矣, 本寺段置, 勿爲尋常, 銘心聞見, 如有慢忽不如今之事是去等, 這這入啓處置, 宜當爲旆, 金礪請賞事段, 會減之事, 雖或如此, 遠外之事, 有難盡知, 令本州詳查後處置似當事, 判下矣. 牧子輩徵納之馬, 毋論陸地與島中之產, 如其雜種, 則盡放於凶咎別屯, 官馬則毋論在場與徵納, 兼監牧, 濟州判官, 旌義·大靜守令, 親自烙印作標之後, 年例恒貢外, 一切不得出島, 非但法典自每式年申飭之舉, 且令下之後, 不用意兼監牧, 則令本州牧使, 一一摘發, 啓聞罷黜, 犯禁牧子, 則梟示島中, 以爲日後防奸之地事, 丁亥點馬時, 亦爲啓下頒布矣, 厥後牧使及兼監牧等, 無一人奉公者, 漸致馬種之混雜, 終無一駒之駿良, 殊極痛惡. 今後牧子輩, 換納常馬時, 摘發告官者, 則牧子, 依事日梟示, 現告者, 則仍給其馬, 兼監牧不遵事目者, 一一罷黜, 牧使牽情掩置者, 則或令本道監司, 摘發啓聞, 或自本寺, 聞見入啓請罪, 宜當. 金礪處馬價會減之後, 出給與否, 令本州詳查啓聞, 處置亦當, 以此意添入, 分付於監司及牧使處, 何如? 傳曰, 允.

❖ 孝宗 2년(1651) 신묘년 10월 28일(임신)

- 김려(金礪)에게 말값[馬價]을 회감(會減)한 뒤에 출급여부(出給與否)는 본주(本州)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啓聞)한 뒤에 조처하라고 감사와 목사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금 제주안핵어사의 장계에 대한 본시(本寺)의 회계(回啓)에 대한 판부(判付)¹²⁰에 ‘회계대로 시행하되 육지말[陸馬]이 뒤섞이는 것을 엄히 금하는 일은 진실로 옳지만 섬 안에 또한 어찌 노둔한 말의 나쁜 종자가 없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무릇 목자(牧子)가 거두는 말은

120) 판부(判付): 입계(入啓)한 일에 대하여 임금이 윤택하거나 어떤 처치를 명하는 것. 판하(判下).

절대로 둔 안에 섞여 두지 말고, 별도로 별둔(別屯)을 만들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한 필의 양마(良馬)를 훔쳐서 노둔한 것으로 바꾸어낸다는 너희 말은 참으로 옳다. 금지한 후에는 육지말을 비록 뜻대로 바꾸어 넣을 수는 없지만, 섬 안에서 바꾸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 엄히 낙인하게 하여 관청에 속한 말임을 표시한 후에 관청 표시가 있는 말이 사둔(私屯)에 나가있는 것을 3읍에 각별히 살피게 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또한 고발하면 상을 주는 길을 연다면 거의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육지말의 금지는 더더욱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다. 엄히 과목(科條)¹²¹⁾를 세우고 사목(事目)¹²²⁾을 별도로 만들어 변통할 여지로 삼아야 하되,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목사가 사람됨이 어떠하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목사에게 전적으로 맡겨 경계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행하게 하되 본시(本寺)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명심하여 듣고 보아 만약에 소홀함이 지금만 못한 일이 있거든 낱낱이 입계(入啓)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려(金礪)가 청한 일인즉 회감(會減)¹²³⁾하는 일은 비록 혹 이와 같지만 먼 지방의 일이라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본주(本州)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한 후에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라고 허락하였습니다. 목자들이 거두어 바친 말은 육지와 섬의 것을 막론하고 그것이 잡종이면 모두 흉구별둔(凶咎別屯)에 풀어놓고, 관청 소속의 말은 목장에 있는 것이든 거두어 바친 것이든 겸감목(兼監牧)인 제주관관과 정의(旌義)·대정(大靜) 현감이 직접 낙인하여 표시를 한 후 연례로 항상 바치는 것 외에는 일체 섬을 나갈 수 없는 것은 다만 법전에 매 식년(式年)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한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겸감목은 본주 목사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하여 계문(啓聞)하여 파직시키고, 금령을 어긴 목자는 목을 베어 섬 안에 효시하여 이후의 간악함을 방지하는 여지로 삼도록 하는 것을 정해년 말을 점검할 때 계하(啓下)¹²⁴⁾하여 반포하였습니다. 그 후 목사와 겸감목 등이 한 사람도 나랏일을 위해 힘쓰는 자가 없어지더니 점점 말의 종자가 섞이게 되어 결국에는 한 마리 망아지도 뛰어나고 좋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심히 통악(痛惡)합니다. 지금 이후로 목자들이 보통의 말을 바꾸어 낼 때 적발하여 관청에 고발한 자는 목사는 사목(事目)에 따라 목을 베어 효시하고, 고발한 자는 그 말을 주며, 겸목관으로 사목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일일이 파직하며, 목사가 정에

121) 과목(科條): 법률·명령 등의 개조서(個條書).

122) 사목(事目): 관청의 규칙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 규칙. 절목(節目).

123) 회감(會減): 서로 주고받을 것을 셈 쳐 보고 남은 것을 셈함.

124) 계하(啓下): 신하가 계달(啓達)한 문서에 대해 임금의 처결하여 내리는 것.

이끌려 덮어두는 자는 혹은 본도 감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계문하게 하고, 혹은 본시(本寺)로부터 듣고 본 것을 입계(入啓)하여 죄를 청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려에게 말값을 회감(會減)한 후에 내어주는 여부에 대해서는 본주에게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하도록 하여 처리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이 뜻으로 추가하여 넣으니 감사와 목사에게 분부를 내리시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별둔, 김려, 겸감목, 제주판관, 정의현감, 대정현감.

❖ 順治 八年 辛卯 十一月 十三日 丁亥

○ 濟州牧使書目, 旌義縣倉穀反庫無面, 令朝廷處置事.

❖ 효종 2년(1651) 신묘년 11월 13일(정해)

□ 정의현 창고 곡식에 대한 장부와의 대조 검사에 대해 조정에서 처치해 줄 것을 청하는 제주목사의 서목

○ 제주목사 서목(書目)¹²⁵에, “정의현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일일이 장부와 대조하여보니 축이 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처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정의현, 창고.

125) 서목(書目): 요점만 따서 따로 적어 보고서에 첨가한 지면(紙面).

❖ 順治 八年 辛卯 十二月 十一日 甲寅

- 義州儒生崔致崗上疏, 大概, 竊聞安緝招內, 有前牧使金壽益, 曾爲義州之時, 亦如是貪黷無狀云, 龍灣舉境之民, 聞來無不驚怪, 此臣等所以千里裹足, 訟冤於闕下者也. 前府尹金壽益, 居官清白, 愛民除弊, 前古所無, 州民至今思之, 以立清德之碑, 而今者, 爲下官所誣, 陷於不測, 受刑累次, 極爲冤痛, 本州運餉庫所儲眞珠, 其數甚多, 而曾無一箇所犯, 何獨於濟州, 有此惹苳之讒乎? 一心清白之人, 廉於此而黷於彼, 萬無其理, 故伴送使元斗杓, 以判義禁, 到義州時, 舉一境瀝血呈狀, 則伴送使答曰, 當歸告朝廷善處云, 而臣等猶不忍退在, 跋涉水路上來, 冒死陳暴舊倅金壽益冤痛事. 呈政院, 還出給.

❖ 효종 2년(1651) 신묘년 12월 11일(갑인)

□ 무고를 당한 김수익(金壽益)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최치강(崔致崗)의 상소

- 의주유생 최치강(崔致崗)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개(大概)에, “가만히 들으니 안집(安緝)의 공초(供招)¹²⁶⁾ 안에 전 목사 김수익(金壽益)¹²⁷⁾이 일찍이 의주(義州)를 다스리던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탐욕스럽고 행실이 못되었다고 하니 의주의 온 경계 안의 백성들이 듣고는 놀라 괴이해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 등이 천 리 먼 길을 걸어와서 임금에게 거처하는 궁궐 앞에서 송원(訟冤)¹²⁸⁾하는 이유입니다. 전 부윤 김수익은 관직에 있으면서 청백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폐단을 없앤 것이 예전에는 없던 일로 고을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사모하여 청덕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하관(下官)에게 무고(誣告)를 당하여 헤아릴 수 없는 죄에 빠져 형벌을 받은 것이 여러 차례이니 심히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본주(本州) 운향고(運餉庫)에 쌓아둔 진주는 그 수가 아주 많은데, 일찍이 한 개도 범한 바가 없습니다. 어찌 유독 제주에서만 이러한 이의(惹苳)의 참소¹²⁹⁾가 있었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백한 사람이 이곳에서는 청렴하고 저곳에

126) 공초(供招):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내용.

127) 김수익(1600~1673): 위의 효종 2년(1651) 12월 11일조 “有前牧使金壽益” 중 ‘益’은 ‘翼’의 오기로 보임.

128) 송원(訟冤): 억울한 사정을 임금에게 호소해 시비를 변명하는 것.

129) 이의(惹苳)의 참소: 남방의 장기(瘴氣)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서 복용하던 울무(惹苳)를 수레에 가득 싣고 왔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명주(明珠)와 물소 뿔(文犀)을 수레에 싣고 왔었다고 비방하며 참소한 고사가 있다.

서는 더럽다는 것은 이치로써도 만무한 일입니다. 때문에 반송사(伴送使)¹³⁰⁾ 원두표(元斗杓)¹³¹⁾가 판의금부사로 의주에 왔을 때 온 경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정성스레 소장(訴狀)을 올리니 반송사가 답하기를, “마땅히 돌아가 조정에 고하여 선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 등은 오히려 물러나 있지 못하고 수로로 올라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옛 수령 김수익의 원통한 일을 진술합니다.”라고 하여 승정원에 올리니 도로 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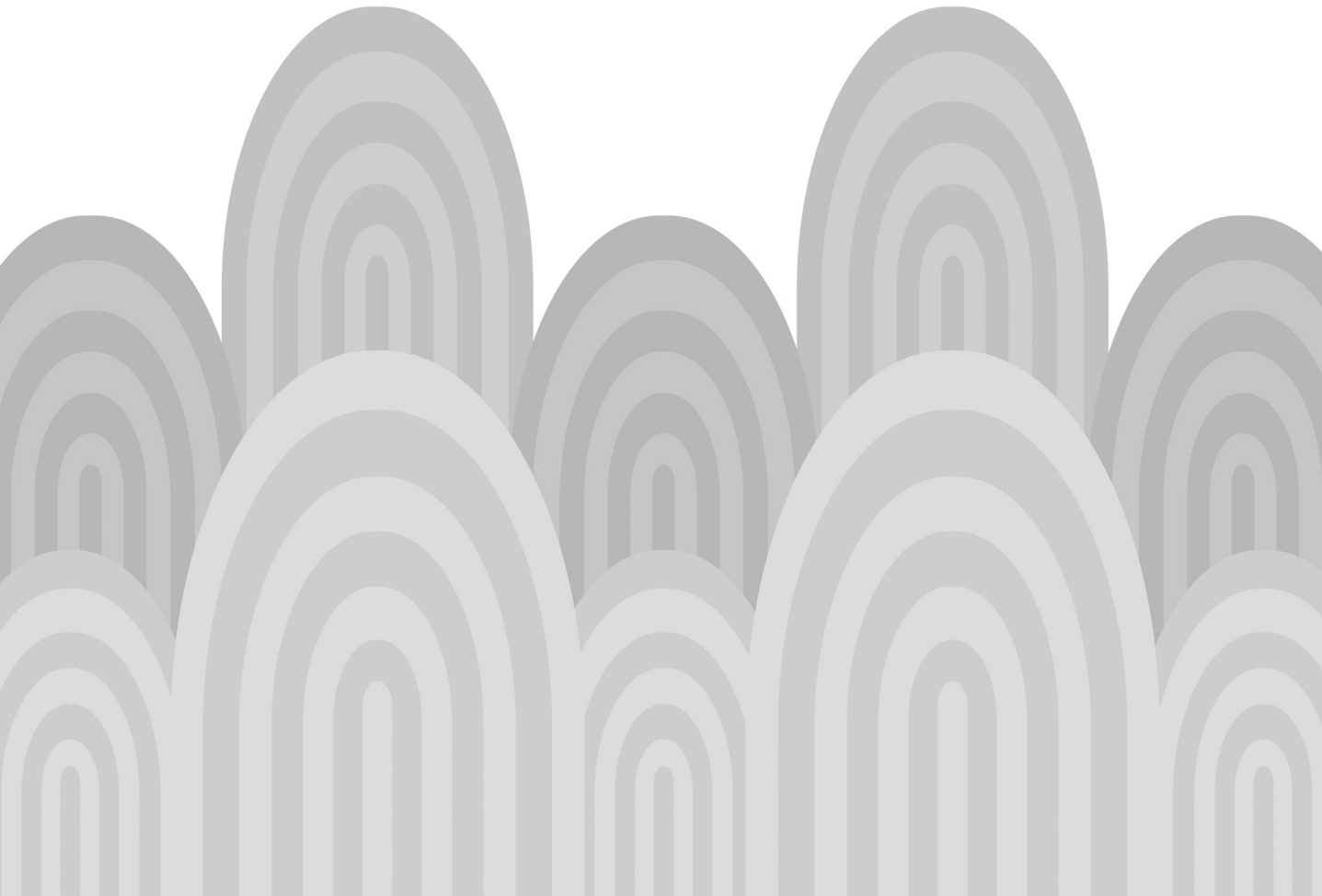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최치강, 김수익, 안집, 원두표, 운향고, 제주.

130) 반송사(伴送使): 사신을 호송하던 임시 벼슬.

131) 원두표(1593~1664):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자건(子建), 탄수(灘叟)·탄옹(灘翁). 시호는 충익(忠翼). 인조반정 때 세운 공으로 정사공신 2등에 책록, 원평부원군이 되었다. 관직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1652年



❖ 順治 九年 壬辰 二月 四日 丙午

- 義禁府啓曰, 逆弑之子甲童, 年未滿四歲之故, 當初則不入於定配秩矣, 卽緣榻前定奪, 定其配所於大靜縣, 問其去處於南部, 則北部牒呈內, 甲童初無定配之命, 故其母率往甲山配所云, 自甲山, 押赴大靜配所之際, 三歲乳下之兒, 不無致斃於中路之弊, 改定配於三水郡, 仍令弑妻押去羅將, 領付三水, 則事勢似爲便當, 而既定配所之罪人, 自下不敢容議, 今當發遣羅將, 而一路之弊, 亦甚可慮, 勿爲別遣羅將, 使弑妻押去羅將, 押領甲童而出來, 仍爲押送大靜縣, 何如? 傳曰, 弑妻之率去, 已極不當, 況仍配其處乎? 依前配所押送, 可也.

❖ 孝宗 3年(1652) 임진년 2월 4일(병오)

□ 역적 김식(金弑)의 처가 배소인 갑산(甲山)으로 데리고 간 아들 갑동(甲童)을 김식의 처를 압송해 간 나장에게 배소인 대정현(大靜縣)으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역적 김식(金弑)¹³²⁾의 아들 갑동(甲童)은 나이가 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배질(定配秩)에 들지 않았지만 바로 어전에서 임금의 결정에 따라 그 배소를 대정현(大靜縣)으로 정하고 남부(南部)¹³³⁾에 그가 간 곳을 물으니, 북부(北部)의 첩정(牒呈)¹³⁴⁾ 안에 갑동이 당초 정배의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갑산(甲山)¹³⁵⁾의 배소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갑산에서 대정 배소로 압송하여 가는 사이에 3살 난 젓먹이 어린아이가 중간에서 죽어버리는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배소를 삼수군(三水郡)¹³⁶⁾으로 고치고, 김식의 처를 압송하여 간 나장에게 삼수로 영솔(領率)하여 부속시키게 한다면 일의 형세가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배소를 정한 죄인을 아래에서 감히 논의할 수 없고, 지금 나장을 보내는 데에 따른 노정(路程)의 폐단 또한 심히 염려가

132) 김식(?~1651): 본관은 안동.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인 김자점(金自點)의 아들이다. 1651년 수어청 군사들과 역모를 일으켜 원두표(元斗杓),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을 제거하고 송선군(崇善君)을 추대하려 하였다.

133) 남부(南部): 한성부(漢城府)의 5개 행정 구역 가운데 하나인 남부를 지칭하는 듯하다. 조선시대 서울을 5부 곧 중부(中部)·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누어 다스렸다.

134) 첩정(牒呈):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로 올리는 공문서. 첩보(牒報)와 같은 말로, 어떤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또는 그런 보고를 말한다.

135) 갑산(甲山): 함경남도 갑산군에 있는 면(面).

136) 삼수군(三水郡): 함경남도 북부에 있는 한 군.

되니 나장을 보내지 마시고 김식의 처를 압송하여 간 나장에게 갑동을 데리고 나와 그대로 대정현으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식의 처가 데리고 간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하물며 그곳을 그대로 배소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전대로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김식, 대정현, 갑동.

❖ 順治 九年 壬辰 二月 十八日 庚申

- 兵曹粘目 …… 又粘目. 入啓. 答曰, 耽羅絕域, 有此精藝, 聳動慰悅之道, 豈云尋常哉? 節畚免賤, 以示朝廷之意, 宜當.

❖ 孝宗 3年(1652) 임진년 2월 18일(경신)

병조의 계목

- 병조 점목(粘目)에 〈중략〉 또 점목(粘目) 입계(入啓)에 답하기를, “먼 변방 탐라에 이처럼 정예로운 기예가 있으니 깜짝 놀라게 하고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도리가 어찌 보통이라 말하겠는가? 이번만은 면천(免賤)시켜 조정의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면천, 탐라.

❖ 順治 九年 壬辰 四月 十九日 庚申

○ 有政. 以柳箒爲右通禮, 南海宇爲旌義縣監, …….

❖ 효종 3년(1652) 임진년 4월 19일(경신)

□ 남해우(南海宇)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유심(柳箒)을 우통례로 삼고, 남해우(南海宇)¹³⁷⁾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남해우, 유심, 정의현감.

137) 남해우(?~?):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공시(公蓄). 벼슬이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1652년 6월에 도입하여 1654년 9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 順治 九年 壬辰 六月 十七日 丁巳

- 又啓曰, 漂漢人事, 今日通議于領相前, 初以漢人船隻, 致敗於濟州地方之意, 措辭通之, 則諸勅使, 會坐一處, 答云, 所謂漂漢人, 以何地人物, 爲何人所使, 往于何地而致敗於本國乎? 所持物件, 何樣之物, 而其數幾許乎? 生存者幾人, 滄死者幾人乎? 漂漢人方到黃海道云 急急傳通, 使之仔細竝諭以來, 臣等更爲通議于領相前, 答以當初渠等所供, 及物件所錄, 在於備局文書中, 當取來報知云. 仍謄出本錄, 而其中水銃·鐵釘·敗船什物, 則雖在於成冊, 濟州牧使, 不爲載送, 恐有執言之患, 不爲移書, 而其他則一一傳寫, 今日午後入納, 則勅使相聚, 至暮默見後, 初昏回報曰, 此冊則俺等, 當於行中持去, 而以好紙, 又爲傳書以入, 則當以清書翻譯, 明日送于義州, 使之傳送鳳城云云. 其物貨止鳳城, 輸運之事, 旣以前例通之, 而彼等以所錄物件冊考見事, 無暇他語, 姑無回話矣. 見此物件成冊後, 始言於譯輩曰, 今廿一日定爲回程云,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3년(1652) 임진년 6월 17일(정사)

□ 칙사가 표도한 한인(漢人)의 출신과 소지한 물건 등의 성책(成冊)을 본 뒤에 21일에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영접도감의 계

- 또 아뢰기를, “표도한 한인(漢人)의 일을 오늘 영상 앞으로 의논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한인의 선척이 제주 지방에 치패(致敗)¹³⁸하였다는 내용을 글로 꾸며 통지하니 여러 칙사가 한 자리에 모여 답하기를, ‘표도해 왔다고 하는 한인은 어느 지방 사람이고, 누가 시켜 어느 곳으로 가다가 본국에 치패하였는가? 소지한 물건은 어떠한 것이며 그 수는 얼마나 되는가? 생존자는 몇이고 빠져죽은 자는 몇인가? 표도한 한인이 막 황해도에 도착했다고 한다.’라고 하니 서둘러 전통(傳通)하여 자세히 아울러 알아듣도록 타일러 오게 하고 신 등이 다시 영상 앞으로 의논을 드리니 답하기를, ‘당초 저들에 대한 진술내용과 물건에 대한 기록이 비변사의 문서 안에 있으니 마땅히 취하여 와서 보고하여 알려라.’라고 하여 본록(本錄)을 그대로 베껴 옮겼는데, 그 가운데 수총(水銃)¹³⁹·쇠못·부서진 배의 짐물은 비록 성책(成冊)에 있지만 제주목사가 실어 보내지 않아 말꼬리를 잡힐 우환이 있을까 하여 옮겨 적지 않았습니니다. 그 나머지는 일일이 옮겨 적어 오늘 오

138) 치패(致敗): 살림이 아주 결단남.

139) 수총(水銃): 소화기(消火器)의 일종.

후에 들이니 칙사가 서로 모여 저물녘까지 조용히 살펴본 후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회답하여 알리기를, ‘이 성책은 우리들이 가는 길에 가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니 좋은 종이에 또 옮겨 적어서 들이면 정서(淨書)로 번역하여 내일 의주(義州)로 보내어 봉성(鳳城)으로 전송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화(物貨)를 봉성까지 운반하는 일은 전례에 따르라고 통지하였는데, 저들이 물건을 기록한 성책을 살펴보는 일 때문에 다른 말을 할 겨를이 없어 돌아오는 말이 없다가 물건에 대한 성책을 본 후에 역배(譯輩)들에게 비로소 말하기를, ‘오는 21일에 돌아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표도, 한인, 제주목사.

❖ 順治 九年 壬辰 七月 六日 乙亥

- 政院啓曰, 傳曰, 在前有褒貶時守令中, 引見親諭以送, 而不爲用以居下考者抄出, 另論加罰矣. 今此春夏等褒貶時, 未見此舉, 無乃本院不察而然耶, 元無此等人而然耶, 察啓事, 傳教矣. 去六月十五日褒貶開拆後, 卽爲招問吏曹之[書]吏, 則今番守令居下考人中, 無前日引見之官云矣. 取見曹中簿記文書, 則庇仁縣監朴而立, 旌善郡守朴慶應, 除拜在於先朝, 沔川郡守徐亨履, 恩山縣監金穀, 藍浦縣監安忠老, 萬頃縣令洪傲禹, 茂朱縣監李靖賢, 旌義縣監李卓男, 會寧判官柳天機, 慶興府使李洵, 機張縣監鄭名立, 金海府使金孝性等, 無引見之事, 昆陽郡守趙璧則引見而既已身故, 故不爲舉論, 而興陽縣監金瑞, 則吏曹文書中, 引見不爲懸錄, 更加詳考注書日記, 以啓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3년(1652) 임진년 7월 6일(을해)

□ 인견(引見)하고 내려 보낸 수령 가운데 봄에서 여름까지의 포폄(褒貶)에서 하고(下考)를 맞은 자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전에 포폄(褒貶)¹⁴⁰⁾이 있던 때에 수령 중에 인견(引見)하여 친히 타일러 보냈는데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하여 하고(下考)¹⁴¹⁾를 받은 자를 뽑아내어 따로 벌주는 것을 논하라고 하였다. 지금 봄여름 동안을 포폄할 때에 이러한 조처를 보지 못했으니 본원이 살피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냐, 본래 이러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냐? 살피 아뢰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 포폄장(褒貶狀)을 개탁(開拆)한 후에 바로 이조의 서리(書吏)를 불러 물어보니 금번 수령으로 하고에 있는 자 중에 지난번 인견했던 관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청의 부기문서(簿記文書)를 취하여 보니 비인현감 박이립(朴而立), 정선군수 박경응(朴慶應)은 수령에 임명된 것이 선조(先朝)에 있었고, 면천군수 서형리(徐亨履), 은산현감 김곡(金穀), 남포현감 안충로(安忠老), 만경현령 홍경우(洪傲禹), 무주현감 이정현(李靖賢), 정의현감 이탁남(李卓男)¹⁴²⁾, 회령관관 유

140) 포폄(褒貶): 조선시대 각 중앙 부서나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보고하던 일. 전최(殿最). 전(殿)은 맨 아래 등급을, 최(最)는 맨 위 등급을 말하는데, 고과 평정의 뜻으로 썼으며, 해마다 음력 6월과 설달에 시행하였다.

141) 하고(下考): 관리의 근무 고과에서 하(下)를 받는 것을 이른다. 감사는 휘하의 지방관에 대해 상고(上考)·중고(中考)·하고(下考)로 고과를 평정하였다.

142) 이탁남(?-?): 1651년(효종 2) 4월에 도입하여 1652년 4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천기(柳天機), 경흥부사(慶興府使) 이순(李洵), 기장현감 정명립(鄭名立), 김해부사 김효성(金孝性) 등은 인견한 일이 없었습니다. 곤양군수 조벽(趙璧)은 인견하였지만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고, 홍양현감 김서(金瑞)는 이 조 문서 중에 인견이 기록되지 않아 다시 주서일기(注書日記)¹⁴³⁾를 자세히 살펴 아뢰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정의현감, 이탁남, 포평, 박이립, 박경응, 서형리, 김곡, 안충로, 홍경우, 이정현, 유천기, 이순, 정명립, 김효성, 조벽, 김서.

143) 주서일기(注書日記): 승정원일기. 주서(注書)는 사초(史草)를 맡아 보던 승정원의 정7품 벼슬이다.

❖ 順治 九年 壬辰 七月 二十三日 壬辰

- 引見時, 領議政鄭太和曰, 全州中軍, 頃已差定, 而竊思可合之人, 前濟州牧使金汝水, 可委此任, 而曾以贓污被罪, 今此中軍之任, 雖非實職之比, 事係收用, 故敢此仰稟. 上曰, 如有可用之才, 則豈無可恕之道乎? 差送, 可也.

❖ 孝宗 3년(1652) 임진년 7월 23일(임진)

□ 인견(引見)에 정태화(鄭太和)가 입시하여 전주중군(全州中軍)에 김여수(金汝水)를 차송(差送)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인견(引見)할 때,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전주중군을 얼마 전에 임명하였습니다. 가만히 합당한 인물을 생각해보니 전 제주목사 김여수(金汝水)¹⁴⁴)가 이 직임을 맡을 만 한데, 일찍이 장오(贓污)¹⁴⁵)로 죄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군의 직임이 비록 실직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일이 거두어 들여 쓰는 것에 관계되기에 감히 이와 같이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쓸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어찌 용서하는 도리가 없겠는가?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정태화, 김여수, 제주목사.

144) 김여수(1600~1670): 본관은 김해. 자는 수재(水哉). 제주목사로 1647년(인조 25) 5월에 도임하고 1649년 9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재임 시 홍화각(弘化閣)과 영청(營廳)을 중수하였다. 사후 호조판서로 추증되었다.

145) 장오(贓污): 벼슬아치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사로이 취하고, 직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 順治 九年 壬辰 九月 三日 辛未

- 義禁府啓曰, 卽接刑曹移文, 則罪人崔香男處, 常平廳及戶曹應徵之物, 旣已區處, 配所發送云, 故配所定處別單書入, 而今若循例以羅將押送, 則當此湖南失稔之時, 一路夫馬, 非但貽弊可慮, 金吾之卒, 一入濟州, 則種種弊端, 不一而足. 今此香男, 依刑曹罪人例, 次次押送, 似爲便當, 敢啓. 傳曰, 知道.

❖ 孝宗 3年(1652) 임진년 9월 3일(신미)

죄인 최향남(崔香男)을 형조 죄인의 예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압송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접수한 형조의 이문(移文)¹⁴⁶에 죄인 최향남(崔香男)에게 상평청과 호조가 응당 징수해야 할 물건을 이미 구분하여 처리하였으니 배소(配所)로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때문에 배소로 정한 곳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는데, 지금 만약 전례에 따라 나장이 압송하면 호남이 흉년 든 이 때를 당하여 노정(路程)에 인부와 말이 끼치는 폐단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의금부의 군졸이 한번 제주에 들어가면 종종 폐단이 한 가지로 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향남을 형조 죄인의 예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압송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최향남, 제주.

146) 이문(移文): 관아와 관아 사이에 공사(公事)에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내는 것, 또는 그 문건. 공이(公移).

❖ 順治 九年 壬辰 九月 四日 壬申

- 兵批啓曰, 前因本曹草記, 些少禁旅, 不可有闕, 速爲填差事, 命下矣. 三廳禁軍, 必以取才者隨闕填差, 而前日取才未付者, 只有三人, 數多闕額, 不可以元無取才者, 苟充, 故昨於禁軍點閱之時, 令左右別將, 以騎芻·柳葉箭, 試其技藝, 就其中得中一技者, 填差似當, 且法典內, 兼司僕三員, 例以濟州人填差, 其意有在, 而本島之人, 若無出來者, 則空其窠闕矣. 今者宣傳官兼仕者, 亦爲革罷, 則濟州禁軍之代, 似當姑爲差出, 待本島人出來, 隨闕填差, 敢此竝稟. 傳曰, 允.

❖ 孝宗 3년(1652) 임진년 9월 4일(임신)

- 기추(騎芻) 등의 시재에서 1기(技)에 합격한 자를 결원(闕員)이 생긴 삼청(三廳)의 금군(禁軍)에 인원을 보충하되 검사복 3원(員)은 제주에서 올라온 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올라오는 대로 임명하여 보충하겠다는 병비(兵批)의 계
- 병비(兵批)¹⁴⁷가 아뢰기를, “전일 본조(本曹)의 초기(草記)¹⁴⁸에 의거하여, 사소한 금군(禁軍)이라도 결원이 있을 수는 없기에 신속히 결원에 따라 임명하여 보충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삼청 금군(三廳 禁軍)은 반드시 취재(取才)한 자로써 결원에 따라서 보충하여 임명하는데, 전일 취재에서 자리에 붙여지지 않은 자는 단지 3인에 불과하여 많은 결원을 본래 취재가 없는 자들로 구차하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금군을 점검하고 사열할 때에 좌우별장(左右別將)으로 하여금 기추(騎芻)¹⁴⁹·유엽전(柳葉箭)¹⁵⁰으로 그 기예를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기예라도 합격한 자를 취하여 임명하여 보충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한 법전에 검사복(兼司僕)¹⁵¹ 3원(員)을 으레 제주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럴만한 뜻이 있어서이니, 본도인(本島人) 중에 만약 올라오는 자가 없으면 그 자

147) 병비(兵批): 무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병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 참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148) 초기(草記): 각 관아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간단히 요지(要旨)만 기록하여 상주(上奏)하는 문서.

149) 기추(騎芻): 말 타고 달리며 표적에 활을 쏘는 일. 추(芻)는 추인(芻人). 곧 풀로 만든 허수아비, 말을 달리며 표적인 추를 향하여 활을 쏘는 것.

150) 유엽전(柳葉箭): 살촉이 버들잎처럼 생긴 화살.

151) 검사복(兼司僕): 궁중에서 쓰는 말을 관할하고, 아울러 세자궁의 호위와 궁전의 시위를 맡아보던 금군의 하나.

리의 결원을 비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전관¹⁵²⁾의 겸사(兼仕)가 또한 혁파되었으니¹⁵³⁾ 제주금군을 대신하여 우선 임명하였다가 본도인(本島人)이 나오기를 기다려 결원에 따라 임명하여 보충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울러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겸사복, 제주금군.

152) 선전관(宣傳官): 무반의 경관직(京官職)으로,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속하는 정3품부터 종9품까지의 벼슬아치를 이른다.

153) 《승정원일기》 효종 3년(1652) 임진년 8월 29일조 참조.

❖ 順治 九年 壬辰 九月 二十四日 壬辰

○ 濟州牧使, 以狂風狹雨事狀啓, 傳曰, 滄沒人, 令本州各別恤典舉行.

❖ 효종 3년(1652) 임진년 9월 24일(임진)

□ 비를 동반한 광풍에 관한 제주목사의 장계에 대해 내린 전교

○ 제주목사가 비를 동반한 광풍의 일로써 장계를 올렸다. 전교하기를, “물에 침수된 백성들에 대해 본주로 하여금 각별한 홀전(恤典)을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홀전.

❖ 順治 九年 壬辰 十月 二十一日 己未

- 傳曰, 李慶億之罪, 似難容易放釋, 而曾於奉使耽羅之日, 按覈公明, 予嘗嘉之, 豈可忘乎? 其令該府放送.

❖ 효종 3년(1652) 임진년 10월 21일(기미)

이경억(李慶億)에 대해 해당 관아로 하여금 풀어주도록 하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이경억(李慶億)의 죄는 쉽게 풀어주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일찍이 탐라에서 수령의 임무를 받들던 때에 정사를 자세히 살펴 공정하게 처리하였었다. 내가 이를 가상히 여겼었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해당 관아에 명하여 풀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이경억, 탐라.

❖ 順治 九年 壬辰 十月 二十六日 甲子

- 兵曹啓曰, …… 又啓曰, 丁丑年牛疫時, 義牛備納, 濟州居前萬戶金礪, 陞堂上事, 命下矣. 金礪之名, 載於本曹座目官案中, 曾以進上馬事, 陞堂上云. 納牛·納馬, 名目雖異, 連蒙賞加, 事涉過濫, 加設實僉知除授, 何如? 傳曰, 允.

❖ 효종 3년(1652) 임진년 10월 26일(갑자)

□ 김려(金礪)가 말을 바친 것으로 이미 당상에 승진되었으므로 실첨지(實僉知)에 제수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 병조 계목(啓目)에, 〈중략〉 또 아뢰기를, “정축년(1637) 소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우(義牛)를 갖추어 바친 제주에 사는 진 만호 김려(金礪)를 당상에 승진시키는 일을 명하였습니다. 김려의 이름은 본조 좌목관안(座目官案)에 올라있습니다. 일찍이 말을 진상한 일로 당상에 승진했다고 합니다. ‘소를 바쳤다’·‘말을 바쳤다’하는 것은 명목이 비록 다르지만 연이어서 상으로 가자(加資)의 은혜를 입는 것은 일이 분수에 지나치니 실첨지(實僉知)를 가설(加設)¹⁵⁴하여 제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김려, 의우, 실첨지.

154) 가설(加設): 정원(定員) 외의 벼슬자리를 임시로 더 늘림.

❖ 順治 九年 壬辰 十月 二十六日 甲子

- 宣惠廳啓曰, 今月二十二日晝講時, 侍讀官李廷夔 …… 又所啓, 以八結應役, 流來舊規, 而湖西大同之後, 到十斗外, 不敢下手, 故凡干公家之役, 每以煙戶分定, 煙戶之民, 亦八結之民也. 以此以彼, 無異同, 而八結則土豪與小民, 皆應其役, 煙戶則小民獨困, 且有主客去來不實之弊. 以今番點馬下去時, 驅馬軍一事言之, 此皆出於煙戶, 濟州馬上來時, 牽馬軍, 亦出於煙戶云. 臣意則如許等役, 以八結分定無妨矣. 上曰, 言于該廳事, 傳教矣. …… 本道大同設法之後, 虛結一事, 言之者多矣. 唯是量後新起奸民, 百般欺隱, 守令不以實報, 虛實相蒙, 其弊難防, 故該曹一從收稅結數而徵稅, 其意有在. 今若捨其本道所報收租之數, 而輕開給陳之路, 則奸僞百出, 將不勝其紛紜, 嚴飭列邑, 務得加起, 以充虛結之外, 更無他策. 雖以一邑言之, 頃見牙山縣監所報, 則本縣流來虛結, 以今年新起, 盡爲充數, 而苟有餘結云. 他邑舉皆如此, 虛結徵稅之弊, 不患難祛, 十斗外別役, 則移定煙戶<之>際 強弱難齊, 果涉不均, 至於不時迎送, 刷馬尤爲難處矣. 今此濟州馬牽軍, 則依一路夫馬例, 以收米計給其價爲當, 本道洪州等四邑牧場驅馬, 乃是四五年一次之後, 今年則已無及矣. 此後若至四年, 各官餘米, 必有餘儲, 驅馬軍所定之邑, 則各年餘米, 別爲留儲, 臨時計給, 事合便宜, 以此知會本道, 何如? 傳曰, 依啓.

❖ 孝宗 3年(1652) 임진년 10월 26일(갑자)

- 제주의 견마군(馬牽軍)을 인부와 말의 예에 의거하여 쌀로 그 값을 계산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선혜청의 계
-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이번 달 22일 주강(晝講) 때, 시독관(侍讀官)¹⁵⁵⁾ 이정기(李廷夔)가 <중략> 또 아뢴 바에 ‘8결(結)로써 역(役)에 응하는 것¹⁵⁶⁾이 전부터 내려오는 규칙인데, 호서지방에 대동법이 시행된 후에는 10두 외에는 감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가(公家)¹⁵⁷⁾의 역과 관련해서는 매년 연호(煙戶)¹⁵⁸⁾로서 몫을 나누어 정하는데, 연호의 백성은 또한 8결의 백성입니다. 이렇

155) 시독관(侍讀官):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에 두었던 정5품 관직으로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였다. 홍문관의 교리·부교리가 겸직하였다.

156) 8결(結)로써 역(役)에 응하는 것: 전토(田土) 8결마다 1명씩의 부(夫)를 두어 각종 부역(賦役)을 징수하는 것을 말함.

157) 공가(公家): 관아. 조정 또는 왕실 등. 즉, 국가를 말한다.

158) 연호(煙戶): 일반 백성의 집.

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8결로 하면 토호(土豪)와 소민(小民)¹⁵⁹⁾이 모두 그 역에 응하는 것이고, 연호로 하면 소민이 홀로 곤궁해져서 또한 주객(主客)을 주고받는 실속이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금번 점마(點馬)로 내려갈 때 말몰이꾼의 일로 말하자면, 이는 모두 연호에서 나오고, 제주마가 올라올 때 견마군(牽馬軍) 또한 연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역은 8결로 묶을 나누어 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관청에 말할 일이다.’라고 전교하였습니다. <중략> 10두 외의 별역(別役)은 연호에 옮겨 정할 때 강약을 가지런하기가 어렵고 과연 고르지 않는데, 불시에 영송(迎送)하는 때에 이르러 쇄마(刷馬)¹⁶⁰⁾가 더욱 난처합니다. 지금 제주의 견마군은 왕래하는 사이에 인부와 말의 예에 의거해서 거둬들인 쌀로 그 값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도의 홍주(洪州) 등 네 개 읍 목장의 말을 모으는 일은 곧 4~5년에 한 차례 있는 뒤라서 금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 만약 4년에 이르면 각 관아에 남은 쌀로써 반드시 쌓아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말몰이꾼[驅馬軍]으로 정해진 읍에서 매년 남은 쌀을 별도로 쌓아두었다가 그 때를 당하여 계산하여 주는 것이 일에 편리하고 마땅할 듯합니다. 이것으로 본도(本道)에 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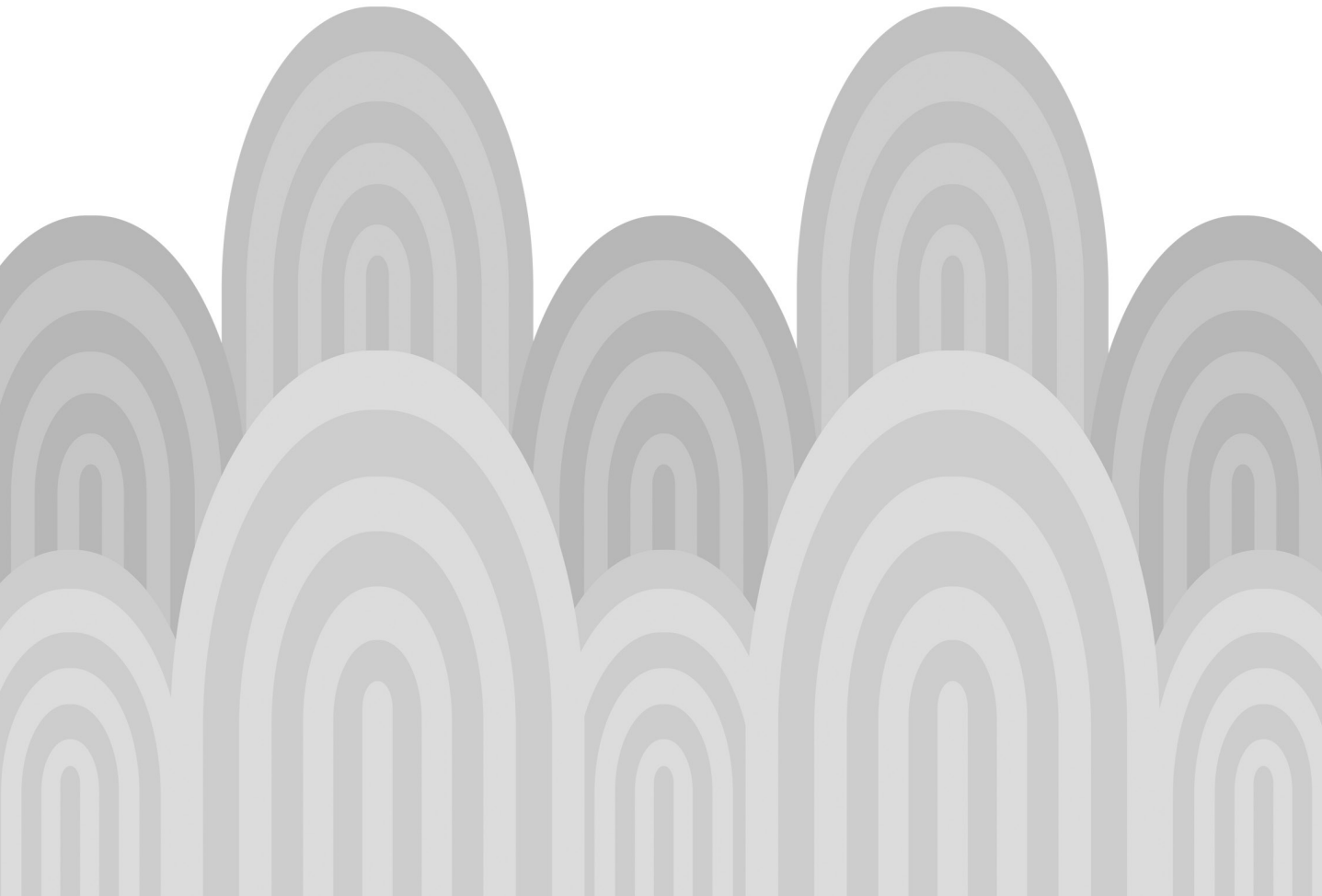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이정기, 대동법, 제주마, 견마군, 쇄마.

159) 소민(小民): 미천한 백성.

160) 쇄마(刷馬): 지방에 배치하였던 관용(官用)의 말로, 외관(外官)의 영송(迎送)이나 조사(詔使)의 방물(方物) 등을 수송하는 데 쓰였다. 주로 샅을 주고 민간의 말을 사용하였다.

1653年



❖ 順治十年癸巳二月二日己亥

- 司饗院草記. 答曰, 依啓. 近觀全南道啓本, 則濟州三邑褒貶狀, 連續出來, 而獨甘橘之供則全然不來, 事極駭愕. 一邊馳問于本州, 處之可也. 【出內下日記】

❖ 효종 4년(1653) 기사년 2월 2일(기해)

□ 사옹원(司饗院)의 초기

- 사옹원(司饗院) 초기(草記)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근래 전남도의 계본(啓本)을 보니 제주 3읍의 포폄장(褒貶狀)은 연속해서 내어 왔는데 유독 바쳐야 할 꿀은 전혀 오지 않으니 심히 놀랄 일이다. 한편으로 본주(本州)에 치문(馳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하일기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꿀, 사옹원.

❖ 順治 十年 癸巳 三月 十四日 庚辰

○ 有政. 吏批, 以 …… 權克中爲大靜縣監 …….

❖ 효종 4년(1653) 기사년 3월 14일(경진)

□ 권극중(權克中)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¹⁶¹에, 〈중략〉 권극중(權克中)¹⁶²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대정현감, 권극중.

161)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162) 권극중(1585~1659):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정지(正之). 호는 청하(靑霞).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인 최명룡(崔命龍)에게 수학하였다. 대정현감으로 1653년 6월에 부임하여 1656년 9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 順治 十年 癸巳 五月 十日 乙亥

- 司僕寺啓曰, 前大靜縣監趙廷璜, 遞位進上馬二匹上來, 禾毛色別單以入, 而依前內廄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出司僕寺謄錄】

❖ 효종 4년(1653) 기사년 5월 10일(을해)

- 조정황(趙廷璜)의 진상마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며 전례대로 내구(內廄)에서 기르게 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 조정황(趙廷璜)¹⁶³의 관직이 교체되며 올리는 진상마(遞進上馬) 2필이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들고 예전처럼 내구(內廄)에서 기르게 하는 것을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전 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대정현감, 조정황, 진상마, 내구.

163) 조정황(1613~?): 1636년(인조 14) 별시(別試) 병과에 급제하였다. 1650년(효종 1) 윤 11월에 부임하여 1653년 5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 順治十年癸巳閏七月九日壬寅

- 司僕寺啓曰, 今年濟州先運年例進上馬八匹三名進上馬六十匹, 今式年別封進御乘馬二十四, 差備進上馬八十匹, 及因本寺行移, 本州所儲, 故夫馬價布, 除出貿易馬三十七匹, 合三十五匹內, 一匹到衿川病留, 二百四匹來到本寺, 依前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出】

❖ 효종 4년(1653) 기사년 윤7월 9일(임인)

□ 제주에서 진상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금년 제주에서 선운(先運)하는 연례 진상마 8필과 삼명일(三名日)¹⁶⁴ 진상마 60필, 식년에 별봉(別封)하여 올리는 어승마 20필, 차비 진상마 80필 및 본시(本寺) 행이(行移)¹⁶⁵로 인하여 본주(本州)에서 대기하던 인부와 말에 대한 가포(價布)¹⁶⁶를 제하고 내는 무역마(貿易馬) 37필, 합 35필¹⁶⁷ 중에 1필은 금천(衿川)에 이르러 병이 들어 머물러, 204필이 본시(本寺)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전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진상마, 어승마, 무역마, 제주.

164) 삼명일(三名日): 정월 초하루, 동지, 임금의 탄신일을 가리킨다.

165) 행이(行移): 행문이첩(行文移牒)의 준말로서 관문서(官文書)를 발송하여 조회(照會)하는 것.

166) 가포(價布): 값으로 주는 베.

167) 35필: 205필의 오기(誤記)인 듯함.

❖ 順治 十年 癸巳 閏七月 二十四日 丁巳

- 司僕寺啓曰, 濟州再運凶咎雄馬一百三十五匹, 雌馬六十〈五〉匹, 合二百匹內, 一匹到茂長, 一匹到韓山, 一匹到鴻山病留, 二匹本州領馬金守逢授, 故失四匹, 本州沙工張碩逢授一匹, 順川沙工朱欣福逢授一匹, 務安沙工朴生逢授一匹云, 而時未上來, 其餘一百八十九匹, 昨日到本寺, 而其中八匹, 瘦病太甚, 到即致斃, 時存馬一百八十一匹, 禾毛色別單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4년(1653) 기사년 윤7월 24일(정사)

□ 제주에서 운송한 흉구마(凶咎馬) 181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에서 재운(再運)하는 흉구(凶咎) 숫말 135필, 암말 65필 합 200필 중에 1필은 무장(茂長)에 도착하여, 1필은 한산(韓山)에 도착하여, 1필은 홍산(鴻山)에 도착하여 병들어 머물고, 2필은 본주(本州) 영마(領馬) 김수(金守)에게 주고, 사고로 4필을 잃고, 본주 사공 장석(張碩)에게 1필을 주고, 순천 사공 주흔복(朱欣福)에게 1필을 주고, 무안 사공 박생(朴生)에게 1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던 그 나머지 189필이 어제 본시(本寺)에 도착하였는데 그 중 8필은 마르고 병 든 것이 아주 심하여 도착하자마자 죽고, 현재 있는 181필은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들입니다.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재운, 제주, 김수, 장석, 주흔복, 박생.

❖ 順治 十年 癸巳 八月 五日 丁卯

- 司僕寺啓, 濟州歲貢馬上來時, 一路各官, 定其軍人, 次次牽送, 且給水草, 所當無弊上送, 而今番上來之馬, 瘦瘠太甚, 不能得達, 留置各官者十三匹, 到京致弊四匹, 以病留置本寺亦三匹. 年例貢馬, 必趁夏節者, 爲其便於水草, 而沿路各邑, 不爲着實護送, 以致如此, 故推問濟州領來色吏, 則卸下康津, 以空官之故, 圍住沙場, 晝夜飢立者, 十二日, 行到文義, 以牽軍不得調發, 留五日, 到清州, 阻水, 留九日, 到振威, 牽軍定奪, 則留八日云. 遠路牽送之馬, 非但不即交替, 當其留日, 亦不備給芻草, 飢餒瘦瘠, 極爲可駭. 文義·清州·振威等官守令, 從重推考, 康津果爲空官, 則鄉所色吏, 令本道, 囚禁刑推後啓聞, 以懲日後, 何如? 傳曰, 依啓.

❖ 孝宗 4年(1653) 기사년 8월 5일(정묘)

- 제주의 세공마를 올려 보낼 때 꼴을 갖추어 주지 않은 문의(文義) 등의 수령을 종종 추고(從重推考)하고 강진(康津)의 색리를 잡아 가두어 형추(刑推)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 세공마가 올라올 때 오는 길의 각 관아는 그 역군을 정하여 차례로 끌어 보내고, 또 물과 꼴을 공급하여 마땅히 폐단 없이 올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올라오는 말은 야위고 허약한 것이 아주 심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서 각 관아에 놓아 둔 것이 13필이고, 서울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4필이고, 병으로 본시(本寺)에 놓아 둔 것이 또한 3필입니다. 연례 공마를 필히 초여름에 하는 것은 물과 꼴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인데 연로(沿路)의 각 읍이 착실히 호송하지 않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서 물고 온 색리를 추문(推問)¹⁶⁸하니, 강진(康津)에 내렸을 때 수령의 자리가 비어있어 모래사장을 에워싸서 머물며 밤낮으로 굶주려 서있던 것이 12일이었고, 행렬이 문의(文義)에 도착해서는 견마군(牽馬軍)을 징발할 수 없어 5일을 지체하였고, 청주(淸州)에 이르러서는 물에 막혀 9일을 지체하였는데, 진위(振威)에 도착해서는 견마군을 결정하는 일로 8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먼 길을 끌어 보내는 말에 대해 즉시 번갈아 교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머무르는 날을 당해서는 또한 췌야할 꼴을 준비하지 않아 굶주려 야윈 것이 심히 놀랄

168) 추문(推問): 추궁하여 심문하는 일.

만합니다. 문의·청주·진위 등의 관아 수령을 종중추고(從重推考)¹⁶⁹⁾하고, 강진은 과연 수령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 향소(鄉所)와 색리(色吏)를 본도(本道)로 하여금 잡아 가두어 심문한 후에 계문(啓聞)하도록 하여 훗날의 경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세공마, 제주, 종중추고.

169) 종중추고(從重推考): 벼슬아치의 죄과를 심문하여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

❖ 順治 十年 癸巳 十一月 十九日 辛亥

- 又啓曰, 刑曹參議李元鎮, 濟州牧使遞任之後, 尙未上來, 越海遲速, 有未可知, 本曹事務煩劇, 且當啓覆之時, 不可久曠, 李元鎮, 令該曹改差, 其代, 以在京無故人差出, 何如? 答曰, 依啓.

❖ 효종 4년(1653) 기사년 11월 19일(신해)

□ 제주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이원진(李元鎭)을 개차(改差)하고 후임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또 아뢰기를, “형조참의 이원진(李元鎭)¹⁷⁰⁾이 제주목사 체임(遞任) 후에 아직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늦고 빠름을 알 수 없고, 본조(本曹)의 사무가 몹시 바쁘고 또 계복(啓覆)¹⁷¹⁾하는 때를 당하여 자리를 오래도록 비워둘 수가 없으니 이원진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다시 임명하게 하고 그 대신 서울에 있으면서 사고가 없는 이를 임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이원진, 제주목사.

170) 이원진(1594~1665): 본관은 여주. 자는 승경(昇卿). 호는 태호(太湖)·어은(漁隱). 1651년(효종 2) 7월에 도입하고, 1653년 10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제주목사 체임 시 대정현에 표착한 하멜 등 30여명의 네덜란드인들을 서울로 압송하였다. 《담라지(耽羅誌)》를 편찬하였다.

171) 계복(啓覆): 전국의 이미 결정된 사형수에 대한 사형의 집행 윤희와 그 일시의 결정을 형조에서 계청(啓請)하는 일.

❖ 順治 十年 癸巳 十一月 二十四日 丙辰

○ 傳曰, 濟州牧使, 備邊司上送諺文雜錄等物, 入之, 推鞠, 本府爲之事, 命下.

❖ 효종 4년(1653) 기사년 11월 24일(병진)

□ 제주목사가 비변사에 보낸 언문잡록 등을 들이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제주목사가 비변사에 올려 보낸 언문잡록(諺文雜錄) 등의 물건을 들이고 추국(推鞠)은 본부(本府)¹⁷²⁾에서 할 것을 명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언문잡록, 추국.

172) 본부(本府): 의금부(義禁府)를 말함.

❖ 順治 十年 癸巳 十一月 二十五日 丁巳

- 內醫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臘藥方爲熟劑, 而龍腦乏絶, 徵責於貿易唐材未納之人矣. 今聞濟州龍腦, 已爲上來云, 亟令移送本院, 以爲和劑之用, 何如? 傳曰, 允.

❖ 효종 4년(1653) 기사년 11월 25일(정사)

- 납약(臘藥)을 짓기 위해 제주에서 올라온 용뇌(龍腦)를 속히 보내줄 것을 청하는 내의원의 계
- 내의원 관원이 도제조(都提調)¹⁷³⁾의 뜻으로 아뢰기를, “납약(臘藥)¹⁷⁴⁾을 지금 제조하는데 용뇌(龍腦)¹⁷⁵⁾가 부족하여 중국에서 사온 약재를 들이지 않은 사람을 징책(徵責)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제주에서 용뇌가 올라와 있다고 하니 본원(本院)으로 급히 이송하게 하여 약을 제조하는 용도로 쓰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납약, 용뇌.

173) 도제조(都提調): 1품(品)의 최고위 관원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때 붙이는 직명이다. 도제조가 수관(首官)인 아문은 비변사(備邊司)·승문원(承文院)·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糴院)·내의원(內醫院)·군기시(軍器寺)·군자감(軍資監)·사역원(司譯院)·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 등이 이에 해당한다.

174) 납약(臘藥): 해마다 납일(臘日)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약으로, 청심원(淸心元)·안신원(安神元)·소합원(蘇合元) 등인데, 내의원(內醫院)에서 조제하였다.

175) 용뇌(龍腦): 용뇌수(龍腦樹)라는 나무줄기에서 채취하여 만든 백색 반투명 결정체로써 향료를 만들고, 또 해열 진통하는 약으로도 사용한다.

❖ 順治 十年 癸巳 十一月 三十日 壬戌

- 引見入侍時, …… 戶曹判書李時昉所啓, 前頭似當有勅行, 凡策應之物, 欲爲預爲知會措備, 而其中鹿皮, 市上絶乏, 各處勿爲分定事, 前有定奪, 而事勢如此, 依前分定, 似不可已. 上曰, 見濟州牧使狀啓, 則漂流人鹿皮持來之數多云, 何以處之? 領議政鄭太和曰, 此鹿皮, 擇其可用者換用之, 價物, 則以司僕寺所納屯田木花題給, 以爲渠等過冬之資, 實爲便當矣. 上曰, 依爲之. 【出備局謄錄】

❖ 孝宗 4년(1653) 기사년 11월 30일(임술)

□ 인견(引見)에 이시방(李時昉) 등이 입시하여 鹿皮의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함

-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할 때에 <중략>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昉)¹⁷⁶⁾이 아뢰기를, “앞으로 칙사의 행차가 있을 듯합니다. 무릇 책응(策應)하는 물건을 미리 통보하여 대비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녹피(鹿皮)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부족합니다. 각 처로 나누어 정하지 말라는 앞서 전하의 재결(裁決)이 있었습니까만 일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전처럼 나누어 정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의 장계를 보면 표류인이 녹피를 가져온 수가 많다고 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¹⁷⁷⁾가 말하기를, “이 녹피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바꾸어 쓰고 값으로 주는 물건은 사복시(司僕寺)에서 납부하는 둔전의 목화(木花)로 제급(題給)¹⁷⁸⁾하여 저들이 겨울을 나는 채비로 삼게 하는 것이 실로 편하고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녹피, 표류인, 이시방, 정태화.

176) 이시방(1594~1660):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명(季明). 호는 서봉(西峯). 시호는 충정(忠靖).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제주목사로 1640년(인조 18) 9월에 도임하고 1642년 8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제주목사 재임 시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광해군이 죽자 손수 염습하였다.

177) 정태화(1602~1673):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유춘(囿春) 호는 양파(陽坡). 시호는 충익(忠翼). 기로소에 들어가고 현종(顯宗)의 묘정에 종향되었다.

178) 제급(題給):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제사(題辭)를 매기어 내어 줌.

❖ 順治 十年 癸巳 十二月 二日 甲子

- 戶曹啓曰, 勅行時各項需用之物, 若有先聲然後分定外方, 則臨急猝備, 例到窘迫之患, 而前頭又有不久出來之奇, 今番所用之物, 參酌其遺儲多少, 分定於各道, 題給價本, 使之前期措備, 而其中豹皮·鹿皮等物, 禮單應給之外, 最切於策應之資. 鹿皮則一勅行所用, 多至數百餘張, 在前不得已分定於監·兵·水營, 且自本曹買備於京市, 每患不足矣. 今者既不得如前分定於水營, 而濟州所在鹿皮, 雖或取來, 非但合用與否, 有不可知, 越海遲速, 亦且難期, 臨時取辦, 事極可慮. 竊念統營, 則乃是鹿皮所產之地, 營中物力, 亦非他水營之比, 雖不別爲徵布軍卒, 亦能隨便措辦, 禮單所用鹿皮, 依前量宜分定, 以爲補用之地, 何如? 傳曰, 統營外他水營, 勿爲分定.

❖ 孝宗 4年(1653) 기사년 12월 2일(갑자)

□ 칙사의 행차가 멀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되 녹피(鹿皮)는 통영(統營)에 나누어 정할 것 등을 청하는 호조의 계

- 호조에서 아뢰기를, “칙사 행차 시 각 항목에 쓰일 물건을 먼저 기별한 연후에 외방(外方)에 나누어 정하면 급한 때를 만나 갑자기 준비하게 되어 으레 궁색하고 급박하게 될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오래지 않아 나온다는 기별이 있으니 금번에 쓸 물건은 그 남은 것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각도에 나누어 정하고 값을 제급(題給)하여 다가올 날을 대비하게 하고, 그 가운데 표피(豹皮)·녹피(鹿皮) 등은 예단(禮單)으로 응당 주어야 할 것 외에 책응(策應)의 채비에 가장 절실합니다. 녹피는 한 번 칙사 행차에 쓰이는 것이 많게는 수백 여장(張)에 이르러 전에는 부득이 감영·병영·수영에 나누어 정하고 또 본조(本曹)로부터 경시(京市)에서 무역하여 갖추어도 매번 부족함을 염려했습니다. 지금은 전처럼 수영에 나누어 정할 수 없으니 제주에 있는 녹피를 혹여 취하여 온다고 해도 쓰기에 마땅한 지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데의 빠르고 늦음을 또한 기약하기 어려우니 때를 당하여 마련하는 일이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통영(統營)은 곧 녹피의 산지입니다. 영(營) 중의 물자와 노력 또한 다른 수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비록 별도로 군졸에게 징포(徵布)하지는 않지만 또한 편의에 따라 조처할 수 있으니, 예단에 쓰이는 녹피는 예전대로 잘 헤아려 나누어 정하여 부족한 것을 보태어 쓰게 하는 것

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통영 외의 다른 수영에는 나누어 정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녹피, 제주, 통영.

❖ 順治十年癸巳十二月四日丙寅

○ 戶曹啓曰, 以本月三十日引見時領議所啓, 濟州漂流人物貨中鹿皮, 擇其可用者, 換用於本曹, 而價物, 則以司僕寺所儲屯田木花題給, 以爲渠等過冬之資, 實爲便當矣. 上曰, 依爲之事, 命下矣. 今鹿皮, 擇其中可合國用者四五百張, 爲先熟正上送之意, 濟州牧使處, 已爲行會, 待其上來, 價本當爲參酌磨練, 而但渠輩當此冬月, 衣資最急, 故太僕屯田木花, 已令題給漂流人三十六名, 每人又衣資木各四匹, 除出於湖南應上納價布中, 及時入送, 以爲造衣之資, 前頭皮物價磨練時, 通計此數以給, 事勢便宜, 全南監司及濟州牧使處, 以此意急速行會, 何如? 傳曰, 知道. 每人四疋, 似爲略少, 綿花亦不多矣.

❖ 효종 4년(1653) 기사년 12월 4일(병인)

□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녹피(鹿皮)를 보내라고 명을 내려 실행 방법을 의논하게 하였으니 표류인의 옷을 마련하도록 호남에서 상납할 포(布)를 우선 보내주게 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호조에서 아뢰기를, “본월 30일 인견(引見)할 때에 영의정의 소계(所啓)에, ‘제주 표류인 물화(物貨) 중 녹피를, 그 쓸 수 있는 것을 가려서 본조(本曹)에 바꾸어 쓰게 하고 그 값으로 주는 물건은 사복시(司僕寺)가 저장해둔 둔전에서 나온 목화로 제급(題給)하여 저들이 겨울을 나는 채비로 삼게 한 것은 실로 편리하고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녹피는 그 가운데 나라의 소용(所用)에 합당할 만한 것을 가려 400 내지 500장(張)을 먼저 숙정(熟正)¹⁷⁹⁾하여 올려 보내는 뜻으로 제주목사에게 이미 명령을 내려 그것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값을 마땅히 참작하여 마련해야 할 것인데, 다만 저들이 이 겨울을 당하여 옷감이 가장 시급함으로 사복시 둔전의 목화를 이미 표류인 36명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자에게 또 옷감 무명 4필(疋)을 호남에서 상납해야 할 가포(價布) 중에서 덜어내어 때에 맞게 들여보내어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삼도록 하고, 앞으로 피물의 값을 마련할 때 이 수를 통틀어 계산하여 주는 것이 일의 형편상 편리하고 마땅하니 전남감사와 제주목사에게 이 뜻으로 급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각자에게 4필은 약소한 것 같고 목화 또한 많지 않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녹피, 표류인, 전남감사, 제주목사, 목화.

179) 숙정(熟正): 날 것을 익히는 일. 다뤄서 만든 가죽.

❖ 順治十年癸巳十二月五日丁卯

- 戶曹啓曰, 以去月三十日引見時, 領議政所啓, 濟州漂流人物貨中鹿皮, 擇其可用者, 換用於本曹, 而價物則以司僕寺所儲屯田木花題給, 以爲渠等過冬之資, 實爲便當矣. 上曰, 依〈爲〉之事, 命下矣. 今此鹿皮, 擇其中可合國用者四五百張, 爲先熟正上送之意, 濟州牧使處, 已爲行會, 待其上來, 價本當爲參酌磨鍊, 而但渠輩當此冬月, 衣資最急, 故太僕屯田木花, 已令題給漂流人三十六名, 每人又衣資木各四疋式, 除出於湖南應上納價布, 及時入送, 以爲造衣資, 前頭皮物價磨鍊時, 通計此數以給, 事勢便宜, 全南監司及濟州牧使處, 以此意急速行會, 何如? 傳曰, 知道. 每人四疋, 似爲略少, 木花亦不多矣. 【以上內下記草】

❖ 효종 4년(1653) 기사년 12월 5일(정묘)

-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녹피(鹿皮)를 보내라고 명을 내려 실행 방법을 의논하게 하였으니 표류인의 옷을 마련하도록 호남에서 상납할 포(布)를 우선 보내주게 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달 30일 인견(引見)할 때에 영의정의 소계(所啓)에 ‘제주 표류인 물화 중 녹피를 그 쓸 수 있는 것을 가려서 본조에서 바꾸어 쓰고 값은 사복시가 쌓아 둔 둔전의 목화로 제급(題給)하여 저들이 겨울을 나는 채비로 삼게 하는 것이 실로 편리하고 마땅합니다.’라고 하니 임금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이 녹피를, 그 가운데 국용으로 합당할 만한 것 500장(張)을 가려서 먼저 숙정(熟正)하여 올려 보내는 뜻으로 제주목사에게 이미 명령을 내려 그것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값을 마땅히 참작하여 마련해야 할 것인데, 다만 저들이 이 겨울을 당하여 옷감이 가장 시급함으로 사복시 둔전의 목화를 이미 표류인 36명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자에게 또 옷감 무명 4필(疋)씩을 호남에서 상납해야 할 가포(價布) 중에서 덜어내어 때에 맞게 들여보내어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삼도록 하고, 앞으로 피물의 값을 마련할 때 이 수를 통틀어 계산하여 주는 것이 일의 형편상 편리하고 마땅하니 전남감사와 제주목사에게 이 뜻으로 급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각자에게 4필은 약소한 것 같고 목화 또한 많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상 내하기초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녹피, 표류인, 전남감사, 제주목사, 목화.

❖ 順治十年癸巳十二月十九日辛巳

- 同府啓目, 粘連濟州牧放未放啓本云云. 罪人金大生等二十二人所犯甚重, 依啓聞施行, 何如? 啓. 依回啓施行爲乎矣, 朴尙俊段, 似無身犯之罪, 特爲放釋.

❖ 효종 4년(1653) 기사년 12월 19일(신사)

- 중죄를 범한 김대생(金大生)에게 계문(啓聞)한 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의정부의 계목(啓目)¹⁸⁰⁾에 “첨부하여 올린 제주목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¹⁸¹⁾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인 김대생(金大生) 등 22인이 저지른 것이 심히 중하니 계문(啓聞)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아뢰니,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되 박상준(朴尙俊)은 자신이 범한 죄가 없는 것 같으니 특별히 풀어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방미방계본, 김대생, 박상준.

180) 계목(啓目): 임금에게 일을 아릴 때 조목별로 적어서 올리던 계본(啓本). 대개 승정원에 바치면 승지들이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어떤 때는 그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고하기도 하였다.

181)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 사면령이 내린 뒤 각 도의 감사(監司)가 그 도의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쭙어 결정할 부류(稟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계본으로, 이를 토대로 사면이 시행되었다.

1654年



❖ 順治 十一年 甲午 二月 二十二日 癸未

- 晝講時, 參贊官李元鎮所啓, 臣前任濟州下直之時, 本州良馬別屯事, 親承下教, 往彼後別設牧場於山南, 擇其良種純色馬二百餘匹, 放牧而來矣. 上曰, 雖別設牧場, 牧子遺失馬生徵者, 率皆無用云, 而仍爲混放, 則似無別屯之效, 此後則牧子處所徵馬, 勿爲混放於別屯事, 言于司僕寺. 【司僕謄錄】

❖ 효종 5년(1654) 갑오년 2월 22일(계미)

□ 주장(晝講)에 이원진(李元鎭)이 입시(入侍)하여 제주(濟州) 양마(良馬) 별둔(別屯)에 대해 논의함

- 주장(晝講)¹⁸²⁾ 시에 참찬관(參贊官)¹⁸³⁾ 이원진(李元鎭)¹⁸⁴⁾이 아뢰면 바, “신(臣)이 전임(前任)했던 제주목사에서 하직할 때, 본(제주) 고을의 양마(良馬) 별둔(別屯)의 일에 대해, 친히 하교(下教)를 받아들여 그곳(제주)에 간 뒤에 산남(한라산 남쪽)에 특별히 목장을 설치하고, 양종(良種)의 순색(純色) 말 2백여 필을 가려서 그곳에 놓아서 길러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목장을 특별히 설치하고 목자(牧子)가 유실(遺失)한 말에 대해 생징(生徵)하는 것은 대다수가 쓸모가 없다고 하니, 그대로 섞여 방목한 즉 거의 별둔(別屯)의 효과가 없었다. 이후에는 목자(牧子)에게서 거둬들이는 말은 별둔(別屯)에서 섞여 방목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사복시에 말하라.”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이원진, 제주목사, 양마별둔.

182) 주장(晝講): 조선 시대에, 경연특진관 이하가 오시(午時)에 임금을 모시고 법강(法講)을 행하던 일.

183) 참찬관(參贊官): 조선 시대에, 경연청에 속한 정삼품 벼슬. 승정원의 승지, 홍문관의 부제학이 겸했는데, 동지경연사의 다음 서열이다.

184) 이원진(1594~1665): 1651년(효종 2) 신묘 7월에 제주 절제사(節制使)로 부임하여 1653년(효종 4) 계사 10월에 떠났다.

❖ 順治 十一年 甲午 七月 二十三日 庚戌

○ 都目政. 吏批 以韓井一爲敦寧參奉 …… 濟州教授單禹糾.

❖ 효종 5년(1654) 갑오년 7월 23일(경술)

□ 우규(禹糾)를 제주교수(濟州教授)에 제수함

○ 도목정(都目政)¹⁸⁵⁾이 있었다. 이비(吏批)¹⁸⁶⁾에서 한정일(韓井一)을 돈령(敦寧) 참봉(參奉)으로 삼았다. <중략> 제주교수(濟州教授)는 우규(禹糾)¹⁸⁷⁾로 단부(單付)하였다.¹⁸⁸⁾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한정일, 제주교수, 우규.

185) 도목정(都目政): 해마다 음력으로 6월과 선달(12월)에 벼슬아치의 성적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 자리를 떼어버리거나 더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던 것이나, 그런 일.

186)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187) 우규(1619~?): 1653년(효종 4)에 별시 병과에 합격하고, 벼슬은 유곡찰방에 이르렀다.

188) 원문에는 ‘單(단)’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單付(단부)’ 또는 ‘單擧(단거)’를 뜻하는 말. 곧 단망(單望)으로 벼슬아치를 골라 정(定)하거나 임명함. 또는 그러던 일.

❖ 順治 十一年 甲午 七月 二十八日 乙卯

○ 有政. 吏批 以宋時喆爲兵曹佐郎 …… 副司直南重晦 旌義縣監除授事, 承傳.

❖ 효종 5년(1654) 갑오년 7월 28일(을묘)

□ 부사직(副司直) 남중회(南重晦)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¹⁸⁹⁾ 이비(吏批)에서 송시철(宋時喆)을 병조 좌랑(佐郎)으로 삼았다. <중략> 부사직(副司直) 남중회(南重晦)¹⁹⁰⁾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제수한 일로 전교를 받들었다.¹⁹¹⁾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송시철, 남중회, 정의현감.

189) 유정(有政): 정치. 정사. 有는 조자로, 예전에, 벼슬아치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일. 有政은 문맥에 따라서 '정사가 있었다' 또는 '정사를 베풀었다', '정적이 있었다' 정도로 번역한다.

190) 남중회(南重晦): 1654년(효종 5) 7월에 정의현감을 제수 받고, 같은 해 8월에 정의현감으로 부임하여 1654년(효종 5) 9월 15일에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제수 받고 떠났다.

191) 《효종실록》 권13, 1654년(효종 5) 7월 갑인(27일) 기사에, “전 지평 남중회(南重晦)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특별히 제수”한 내용이 있음.

❖ 順治 十一年 甲午 七月 三十日 丁巳

○ 下直, 旌義縣監南重晦.

❖ 효종 5년(1654) 갑오년 7월 30일(정사)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중회(南重晦)가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중회(南重晦)가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정의현감, 남중회, 하직.

❖ 順治 十一年 甲午 九月 十八日 甲辰

- 司僕寺提調元斗杓所啓, 馬政, 國之重事, 而諸場馬籍所載實數, 二萬匹, 而點馬所捉, 皆不可用, 四百軍兵所給, 亦不能充數, 此無非監牧官專不擇人之致. 時任監牧官中, 假稱司果庶孽之輩, 竝爲汰去, 蔭官則以曾經監察·主簿之人, 武弁則以曾經僉萬戶者, 擇差, 何如? 上曰, 依爲之. 李元鎮爲濟州牧使時, 使之抄擇好馬, 養於別場矣, 馬政甚重. 卿等各別嚴飭牧子處代捧雜種之馬, 勿令渾雜, 可也. 又啓曰, 司僕寺, 自前爲草記矣. 近來政院以爲少各司而使爲啓目, 故雖有時急啓達之事, 不能爲之, 今後則以草記啓達, 何如? 左副承旨金佐明曰, 少各司, 非都提調衙門, 則不得爲草記, 而司僕寺, 大臣兼帶提調之時, 始爲開路, 仍成謬例, 故不捧矣, 古規如此, 則何以爲之? 上曰, 異於他司, 使爲草記, 可也.【司僕寺牘錄】

❖ 효종 5년(1654) 갑오년 9월 18일(갑진)

□ 원두표(元斗杓)가 입시하여 마정(馬政)에 대해 논의함

- 사복시 제조 원두표(元斗杓)가 아뢰 바, “마정(馬政)은 국가의 중대한 일로, 모든 목장의 마적에 들어 있는 실수는 2만 필인데, 점마한 것을 4백 군병에게 주려면 모두 가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능히 충분한 수가 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감목관이 전적으로 택인(擇人)하지 못한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감목관을 맡은 사람 가운데, 임시로 사과(司果)와 서얼(庶孽)의 무리라 일컫는 무리들은 모두 사태(沙汰)로 없애버리고, 음관(蔭官)은 일찍이 감찰(監察)과 주부(主簿)를 지낸 사람으로써 삼고, 무변(武弁: 무관)은 일찍이 첨만호(僉萬戶)¹⁹²⁾를 지낸 사람을 간택하여 차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이원진이 제주목사로 있을 때, 그로 하여금 호마(好馬)를 초택(抄擇)하게 해서 별장(別場)에서 기르게 하였다. 마정은 매우 중대한 일이어서 경(卿)들이 각별히 목자(牧子)들에게 엄칙(嚴飭)하여 잡종(雜種)의 말을 대신 봉진하는 것을 엄칙하여 혼잡(渾雜)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아뢰기를, “사복시는 전부터 초기(草記)¹⁹³⁾를 올렸는데, 근래에 정원(政院: 승정원)이 각사(各司)를

192) 첨만호(僉萬戶): 첨사(僉使)와 만호를 아울러 이르는 말.

193) 초기(草記): 서울 각 관아에서, 행정에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단히 적어 임금에게 올린 상주문(上奏文).

업신여겨서, 사(使)¹⁹⁴가 계목(啓目)¹⁹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급하게 계달(啓達)¹⁹⁶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후부터 초기(草記)로 계달(啓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좌부승지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각사(各司)를 업신여기는 것은 도제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문(衙門)은 부득이 초기(草記)로 하고, 사복시 대신(大臣)이 제조를 겸대(兼帶: 겸임)하게 할 때 비로소 일을 시작하여 잘못된 예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간택하지 않았습니니다. 고규(古規)도 이와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사(司)의 사(使)와 달리 초기(草記)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원두표, 이원진, 마정, 제주목사, 김좌명.

194) 사(使):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직언하던 세 관아.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으뜸벼슬.

195) 계목(啓目): 조선 시대에,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 양식의 하나. 주로 작은 일을 계할 때에 썼다.

196) 계달(啓達): 계품(啓稟). 조선 시대에, 신하가 글로 임금에게 아뢰던 일.

❖ 順治 十一年 甲午 九月 二十一日 丁未

○ 司僕寺啓曰, 辛卯年故相臣韓興一爲提調時, 濟州牧場中, 骨相奇駿, 而有色馬雌雄, 竝一百十五匹出捉, 別爲一屯, 各別看護取種. 時存牧子等, 厥數不多, 許多遺失馬, 責立其代, 實爲難堪之役, 一依備局回啓, 各給二保. 且故失馬代立之際, 或苟充常馬, 或出陸買得雜種, 故漸致馬種庸雜, 自今以後, 一切禁斷. 如有現捉者, 則依事目臬示, 摘發告官者, 則仍給其馬, 兼監牧不遵事目者, 一一罷黜, 牧使牽情掩置者, 令本道監司, 摘發啓聞, 或自本寺, 間見請罪等事, 具由啓稟, 則自上判付內, 照房良馬之產, 自古名焉, 而近者率皆駑駘, 無一駿骨, 豈有古今之異? 京外官事, 無一人舉職, 悠泛度日. 因此本寺所當深思, 商量區劃, 庶有一分之二效, 可也. 又判付內, 陸馬雜種嚴禁事, 誠是島中亦豈無駑駘惡種乎? 今後則凡牧子所徵之馬, 切勿混處屯內, 別作一屯, 毋令相混, 嚴立科條以爲變通之地, 此等事專在牧使爲人之如何奉公之如何? 全責牧使, 使之惕念舉行, 本寺亦勿尋常, 銘心聞見, 如有慢忽不從令之人, 一一入啓重治宜當事, 命下矣. 前後聖教, 若是丁寧明白, 爲牧使者, 所當惕念奉行之不暇, 而前濟州牧使李元鎮, 則壬辰十月日, 各處屯馬禾毛色, 開錄啓聞中, 體壯色好, 稍右者一百一十一匹擇取, 別屯分放云, 而專沒啓辭及判付內辭意, 時任牧使蘇東道, 則癸巳十一月日, 例馬籍上送啓聞中, 只稱前牧使李元鎮, 在任時, 抄擇體壯稍駿馬一百十五匹點閱云, 而亦無生產長養等舉論之語, 今此擇放別屯, 已至四年, 留意看護, 必不無奇駿生產者, 而尙未聞一匹良駒之產, 前後牧使悠泛度日, 據此可知. 所當依事目科斷, 而今姑未減, 前後牧使爲先從重推考, 切勿如前尋常看過, 着實奉行之意, 濟州牧使處申飭, 何如? 傳曰, 依啓. 【司僕騰錄】

❖ 孝宗 5年(1654) 갑오년 9월 21일(정미)

- 양마(良馬) 생산에 힘쓰지 않은 전임 목사들을 종종(從重)하여 추고(推考)하고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도록 제주목사에게 신칙(申飭)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가 아뢰기를, “신묘년(1651)에 고(故) 상신(相臣) 한흥일(韓興一)이 제조가 되었을 때 제주 목장 가운데 걸모양이 기준(奇駿)하고 유색(有色)인 암말과 수말을 아울러서 115필을 붙잡아내서 특별히 한 둔(屯)을 만들고 각별히 잘 돌보아 취종(取種)게 하였다. 당시 목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유실마(遺失馬)가 허다(許多)하니, 그 책임을 물어 직위를 교체하였으니 실로 난감(難堪)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비변사의 회계(回啓)¹⁹⁷⁾에 따라 각 2보(保: 보증인)를 주었습니다. 또한 고실마(故失馬)를 대신할 때는 흑 임시로 상마(常馬)로 충당하고, 흑 출륙(出陸)하여 잡종마(雜種馬)를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차 마종(馬種)이 용잡(庸雜)해지고 있으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일체 금지해야 합니다. 만일 나타나서 잡히는 사람이 있으면 곧 사목(事目)에 따라 효시(梟示)하고, 적발(摘發)하여 관에 알리면 곧 그 말을 주어 감목(監牧)을 겸하게 하려 합니다. 사목(事目)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일일이 파면하고, 목사(牧使)가 견정(牽情)하여 엄치(掩置)한 사람은 본도(전라도) 감사(監司)로 하여금 적발하여 계문(啓聞)하게 합니다. 흑 본시(사복시)에서 문견(聞見)하여 청죄(請罪)하는 등의 일은 연유를 갖추어 품계(稟啓)했습니다. 임금에게서 판부(判付)¹⁹⁸⁾한 내용에, ‘조방(照房)에서 양마(良馬)가 난 것은 예로부터 명마(名馬)라 하고, 근자에는 모두 노태(駑駘)가 나서 준골(駿骨)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 고금의 다름이 있겠는가? 경외관(京外官)의 일은 1인이 복직하면서 유범(悠泛)하게 세월을 보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본 시(사복시)에서 마땅히 깊이 생각해서 구획(區劃)하게 하면 거의 한 푼의 효과가 있을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부(判付) 내용에, ‘육마(陸馬)에서도 잡종(雜種)을 엄금하는 일이 참으로 옳은 일인데, 섬 안에서도 또한 어찌 노태(駑駘)와 악종(惡種)이 없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목자(牧子)가 징수한 말은 절대로 섞인 곳이 없게 해서, 둔(屯) 안에 특별히 한 둔(屯)을 만들어 서로 섞이는 일이 없도록 과조(科條)를 엄격히 세워 변통(變通)하도록 하라. 이런 일들은 오로지 목사(牧使)에게 달려 있으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행하느냐, 공사(公事)를 받들어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목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행하고 그로 하여금 척념(惕念) 거행(舉行)하고, 본 시(사복시) 또한 대수롭지 않게 예사로 명심(銘心)하라. 문견(聞見)하여 만홀(漫忽)함이 있으면 종령(從令)한 사람을 일일이 들어오게 해서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앞뒤의 성교(聖敎)가 이와 같이 정녕 명백하니, 목사 된 사람이 부당하게 척념(惕念)하여 거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이 임진년(1652, 효종 3) 10월 일에, ‘각처의 둔마 나이와 털색을 개록(開錄)하여 계문(啓聞)한 가운데, 체장(體壯)하고 색이 조금 나은 것 111필을 가려 취해서 별둔(別屯)에 나누어 방목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문(專沒)한 계사(啓辭) 및 판부(判付) 내의 사의(辭意)를 보면, 현재 목사 소동도(蘇東道)¹⁹⁹⁾가

197)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일.

198) 판부(判付): 주안(奏案)을 임금이 윤가(允可)함.

199) 소동도(1592~1671): 조선 중기의 문신. 1650년(효종 1) 의주부윤이 되어 호란 후 피폐하여진 민생을

계사년(1653, 효종 4) 11월 일에 전례의 마적[例馬籍]을 상송(上送)한 계문(啓聞) 안에, ‘단지 일꾼기를 전 목사 이원진이 재임할 때, 신체 건장한 초준마(稍駿馬) 115필을 뽑아 가려 점열(點閱)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生産)이나 장양(長養) 등의 일을 거론(舉論)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가려서 별둔(別屯)에 놓아 먹인지 이미 4년이 지난 것을 유의하여 간호하면 반드시 기준(奇駿)한 말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아직 듣지 못한 1필의 양구(良駒)가 생산된 것은 앞뒤의 목사가 유범도일(悠泛度日)하여 이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사목(事目)에 따라서 과단(科斷)한 바, 지금 잠시 말감(末減)²⁰⁰⁾하여, 앞뒤 목사를 위선 중중(從重)에 따라 추고(推考)하고 절대로 전과 같이 심상(尋常)하게 간과하지 말고 착실하게 봉행해야 한다는 뜻을 제주목사에게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傳教)하기를, “아된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한흥일, 제주목사, 이원진, 소동도, 초준마, 별둔.

구제하고 국방과 영선 사업에 힘썼다.

200) 말감(末減): 감면하여 가장 가벼운 형벌에 처함. 형벌을 가볍게 내림.

❖ 順治 十一年 甲午 十月 三日 己未

- 上謂海城君金汝水曰, 近來濟州馬品, 何如是不好耶? 金汝水曰, 馬之不好, 有妙理矣. 本州人與牧子輩私和, 多設田場於牧場之內, 驅馬踏田, 以堅土脈, 然後始爲耕種, 以此馬甚疲瘦矣. 兵曹判書元斗杓曰, 牧場耕作, 乃是守令不爲禁斷之致, 今後則一切嚴禁. 若有如前冒耕之事, 則田主從重科罪, 牧使·判官及旌義·大靜等守令, 亦難免不禁之罪, 此意申明知委, 何如? 且本官守令, 例兼監牧官, 乃是古規, 而今則守令, 非但牧場之事, 視之尋常, 至於侵虐牧子, 使不安集, 極爲駭異, 今後則守令例兼監牧之任, 牧場若有不謹之事, 與監牧官, 一體論罰之意, 分付於各官, 何如? 上曰, 依爲之. 【司僕寺謄錄】

❖ 효종 5년(1654) 갑오년 10월 3일(기미)

□ 김여수(金汝水) 등이 입시하여 제주 마필의 품질이 나쁜 이유에 대해 논의함

- 임금이 해성군(海城君) 김여수(金汝水)에게 말하기를, “근래에 제주도의 마품(馬品)이 어떠냐? 좋지 않느냐”라고 하자, 김여수가 말하기를, “말이 좋지 않은 것에는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본 고을 사람과 목자배들이 사사로이 화통하여 목장 안에 전장(田場: 농장)을 많이 설치하여, 말을 몰아 밭을 밟게 하여 토맥(土脈)을 단단하게 다진 연후에 비로소 갈아서 씨를 뿌리니, 이로써 말이 매우 피로하여 여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목장을 경작하는 것은 수령이 금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후에는 일체 엄금하고, 만일 전과 같이 모경(冒耕)하는 일이 있으면 발주인을 종중(從重)하여 과죄하고, 목사나 관관, 정의와 대정 등의 수령 또한 금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뜻을 신명(申明)하여 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한 본관의 수령이 예로 감목관을 겸하게 하는 것이 옛 규례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수령이 단지 목장의 일을 심상하게 보지 말고, 침학(侵虐)하는 목자에 이르러서는 하여금 안집(安集)하지 않게 하고 극히 해이(駭異)하니, 금후에는 수령 예로 감목의 소임을 겸하는 예로, 만일 목장에 엄하게 하지 않으면 감목관과 더불어 일체로 논죄할 뜻을 각관에 분부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해성군, 김여수, 제주, 정의, 대정, 검감목, 원두표.

❖ 順治 十一年 甲午 十二月 十二日 戊辰

- 漢城府啓曰, 式年戶籍設行, 國之大政也. 應行節目及成籍上送期限, 磨鍊啓下, 預先知會各道矣. 其中濟州三邑, 則海外路遠, 平安道, 則責應多事, 限內未及上送, 勢固然矣. 其他各道戶籍, 則已盡來到, 而但忠清道, 定限於五月, 而文義縣戶籍, 尙無形影, 以近京之地, 過限今已七朔, 其不有事目, 慢不舉行, 據此可知, 極爲可駭. 同縣令, 依事目罷黜, 本道監司, 令攸司推考, 鄉所色吏, 囚禁重治, 何如? 傳曰, 依啓. 應罷縣令, 許崙.

❖ 孝宗 5年(1654) 갑오년 12월 12일(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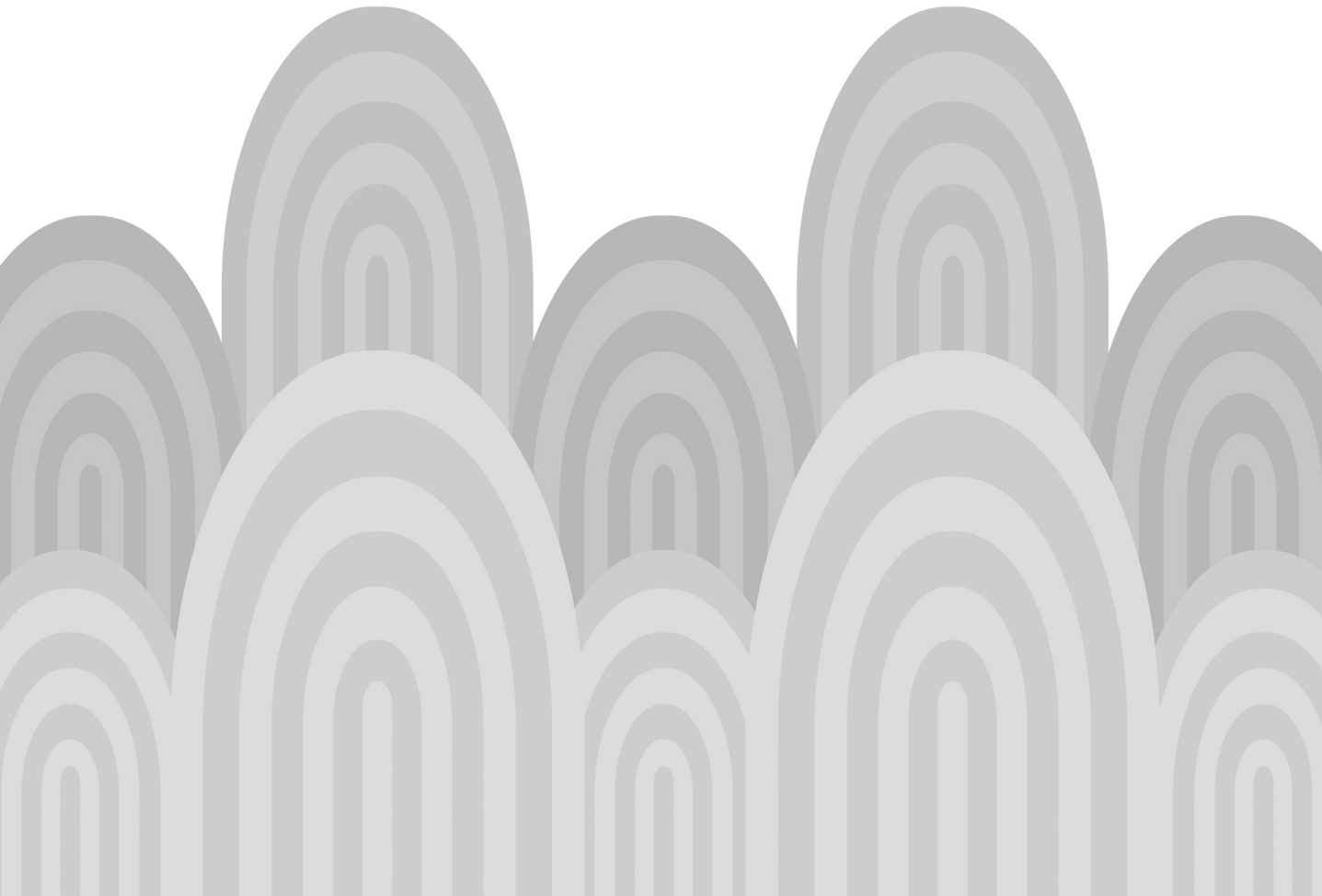
□ 식년 호적 설행을 위한 응행절목과 성적(成籍)을 올리지 않은 문의현령을 사목에 따라 파출할 것 등을 청하는 한성부의 계

- 한성부가 아뢰기를, “식년에 호적을 설행(設行)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응행절목과 성적(成籍)을 올려 보내는 기한(期限)을 마련하여 계하(啓下)하여 미리 먼저 각 도에 통하여 알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 세 고을은 바다 밖이어서 길이 멀고, 평안도는 책임지고 물품을 내줄 일이 많아서 기한 내에 미처 올려 보내지 못할 형세가 있습니다. 기타 각 도의 호적은 이미 다 올라왔는데, 다만 충청도는 5월까지 기한을 정했으나 문의현(文義縣) 호적은 아직 형영(形影)이 없는데, 근경(近京)의 땅으로, 지금 기한이 이미 7삭(朔)을 지났으나 사목(事目)이 없으니 게을리 거행하지 말고 이에 의지하여 알리니 지극히 해괴합니다. 동 현령은 사목에 따라 파출(罷黜)하고, 본도(충청도) 감사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고(推考)하게 하고, 향리(鄉吏)와 색리(色吏)는 가두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된 대로 마땅히 현령 허륜(許崙)을 파직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식년 호적, 응행절목, 제주삼읍.

1655年



❖ 順治 十二年 乙未 二月 二十三日 戊寅

- 以四學摘奸單子, 傳曰, 有頗處則依例舉行, 而在學儒生等, 則令本館, 明日聚會于四學中一寬闊處, 以待明朝. 大提學及大司成命招, 書題書入命下後, 偕承旨進去, 製述以來, 且濟州人雖闕, 勿論.

❖ 효종 6년(1655) 을미년 2월 23일(무인)

- 탈이 있는 곳은 전례에 따라 거행하라는 등의 사학(四學)을 적간(摘奸)한 단자(單子)에 대해 내린 전교
- 사학(四學)²⁰¹을 적간(摘奸)²⁰²하는 단자(單子)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탈(頗)이 있는 곳은 전례에 따라 거행하고, 재학(在學) 유생(儒生)들은 본관(本館: 성균관)에 영을 내려 내일 사학 안 넓은 곳에 모이게 해서 아침을 기다리게 하라. 대제학과 대사성을 명초(命招)하여, 글의 제목을 써놓도록 명령을 내린 뒤에, 승지와 함께 나아가 제술(製述)하여 오라. 또한 제주인이 비록 빠져 있어도 말할 것 없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사학, 제술, 제주.

201) 사학(四學):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네 곳에 세운 교육 기관. 위치에 따라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이 있었는데, 1411년(태종 11)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없앴다.

202) 적간(摘奸): 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캐어 살핌.

❖ 順治 十二年 乙未 六月 六日 己未

- 上御熙政堂, 備局堂上引見時, 兵曹判書元斗杓, 吏曹判書李厚源, 延城君李時昉, 右參贊鄭維城, 判尹李浣, 副提學金益熙, 大司憲洪命夏, 大司諫閔應協, 都承旨李行進, 記事官安縝, 事變假注書崔錫祐, 記事官洪汝河·宋奎濂, 入侍. …… 上曰, 聞濟州雌馬, 人多換來云, 欲祛此弊, 而誰能奉行? 牧使蘇東道, 養病而臥, 只待遞日, 官事何能修舉乎? 斗杓曰, 東道, 清白矣. 上曰, 雖不清白, 若奉行國事則善矣. 不舉官事, 徒尙清白, 則與秋毫不犯官庫板蕩者, 何異乎? …….

❖ 孝宗 6년(1655) 을미년 6월 6일(기미)

□ 희정당(熙政堂)에 원두표(元斗杓) 등이 입시하여 제주목사 소동도(蘇東道)의 체임에 대해 논의함.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할 때, 병조판서 윤두표, 이조판서 이후원(李厚源), 연성군(延城君) 이시방(李時昉), 우참찬(右參贊) 정유성(鄭維城), 판윤(判尹) 이완(李浣), 부제학(副提學) 김익희(金益熙), 대사헌(大司憲) 홍명하(洪命夏), 대사간(大司諫) 민응협(閔應協), 도승지(都承旨) 이행진(李行進), 기사관(記事官) 안진(安縝), 사변(事變) 가주서(事變假注書) 최석우(崔錫祐), 기사관(記事官) 홍여하(洪汝河)·송규렴(宋奎濂)이 입시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암말에 대해서 듣기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보내왔다고 하던데, 이러한 폐단을 떨어 없애려면 누가 능히 봉행(奉行)할 수 있겠는가? 목사 소동도(蘇東道)가 병이 더하여 누워 있으면서, 지금 체임(遞日)을 기다리고 있으니, 관아의 일을 어떻게 능히 수거(修舉)²⁰³⁾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소동도는 청백리(清白吏)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청백리(清白吏)가 아니라도 나라일을 잘 봉행(奉行)해야 한다. 관아의 일을 받들지 않고 한갓 청백리(清白吏)라 하면, 털끝만큼도 관아의 창고를 범하지 않고 판탕(板蕩)²⁰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희정당, 원두표, 제주, 소동도, 청백리.

203) 수거(修舉): 잘 다스려서 좋은 성과를 올림.

204) 판탕(板蕩): 1) 나라의 형편이 정치를 잘못하여 어지러워짐을 이르는 말. 《시전(詩傳)》 <대아(大雅)>의 판(板)과 당(蕩) 두 편(篇)이 모두 문란한 정사(政事)를 읊은 데서 유래하였다. 2) 탕진(蕩盡). 재물 따위를 다 써서 없앴.

❖ 順治 十二年 乙未 六月 二十一日 甲戌

○ 上御熙政堂. 引見. 右議政沈之源, 延城君李時昉, 右參贊鄭維城, 判尹李浣, 平興君申垓, 戶曹判書許積, 大司憲洪命夏, 副提學金益熙, 大司諫金佐明, 左承旨南老星, 記事官呂聖齊, 事變假注書崔錫祐, 記事洪汝河·宋奎濂入侍 …… 沈之源曰, 濟州則以海島之故, 推刷與否, 初不舉論, 而濟州奴婢身貢, 本無上納之規, 自其處以米收捧會錄, 此則何以爲之? 上曰, 本州推刷, 令牧使爲之, 奴婢之移居陸【缺二行半】主簿·判官等帖, 而無免賤公文者, 何以處之? 上曰, 令都監稟處. …… 【出燼餘日記】

❖ 孝宗 6년(1655) 을미년 6월 21일(갑술)

□ 제주 노비 추쇄(推刷)의 건

○ 임금이 회정당에 나아가 인견(引見)할 때, 우의정 심지원, 연성군 이시방, 우참찬 정유성, 관운 이완, 평흥군 신준, 호조판서 허적, 대사헌 홍명하, 부제학 김익희, 대사간 김좌명, 좌승지 남노성, 기사관 여성제, 사변가주서 최석우, 기사 홍여하·송규렴이 입시하였다. <중략> 심지원이 아뢰기를, “제주는 해도(海島)이므로 추쇄(推刷)²⁰⁵⁾ 여부를 처음에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주 노비의 신공(身貢)은 본래 상납하는 규약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쌀로 수봉(收捧)하여 회록(會錄)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 고을의 추쇄(推刷)는 목사로 하여금 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노비를 육지로 이거(移居)하는 것은 【2행 반이 빠짐】라고 하였다. “주부·관관 등의 첩(帖)에 따라 면천(免賤) 공문이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감(都監)에서 품처(稟處)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불타고 남은 승정원일기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해도, 노비, 신공, 면천, 심지원, 이시방, 정유성, 이완, 신준, 허적, 홍명하, 김익희, 김좌명, 남성, 여성제, 최석우, 홍여하, 송규렴.

205) 추쇄(推刷): 1) 빚을 모두 받아들이던 일. 2) 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3)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붙잡아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 順治 十二年 乙未 六月 二十五日 戊寅

- 司僕寺啓曰, 濟州牧使蘇東道遞任, 進上馬三匹上來, 依前禾毛色別單書入, 而內廐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出司僕牘錄】

❖ 효종 6년(1655) 을미년 6월 25일(무인)

□ 소동도(蘇東道)가 진상한 말 3필을 내구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 소동도가 체임할 때, 진상마 3필을 가지고 올라 왔는데, 전례에 따라 말의 나이와 털색은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고, 내구(內廐)²⁰⁶에 두어 기르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소동도, 진상마, 내구.

206) 내구(內廐): 내사복시(內司僕寺). 조선 시대에, 임금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아.

❖ 順治 十二年 乙未 七月 十五日 丁酉

○ 吏批, 以李箕徵爲司贍主簿 …… 具義俊爲濟州牧使 …….

❖ 효종 6년(1655) 을미년 7월 15일(정유)

□ 구의준(具義俊)을 제주목사로 삼음.

○ 이비(吏批)에서 이기징(李箕徵)을 사섬주부(司贍主簿)로 삼고, <중략> 구의준(具義俊)²⁰⁷⁾을 제주목사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이기징, 구의준, 제주목사.

207) 구의준(?~?): 1655년(효종 6) 9월에 도입하여 1658년(효종 9) 4월에 이임하여, 2월 7개월동안 제주목사로 재임하였다.

❖ 順治 十二年 乙未 七月 十七日 己亥

- 大司憲洪命夏, 執義成夏明, 掌令柳俊昌, 持平安後稷·郭齊華啓曰 …… 且爲濟州都會, 累經匪人, 將爲棄地, 苟非有風力之人, 無以憚壓, 新除授縣監朴尙質, 請命改差, 以有風力善治文官, 各別擇送. 新除授活人別提金琳, 本以卑賤之人, 冒授東班六品實職, 仕路之不清, 未必不由於此, 活人別提金琳, 請命汰去. 答曰, 不允. 朴尙質事, 依啓. 四次祈祭之後, 開城府·長湍等官, 馳啓雨澤, 亦多施賞, 似無不可矣.

❖ 孝宗 6年(1655) 을미년 7월 17일(기해)

□ 제주를 도회(都會)로 삼는 건

- 대사헌 홍명하, 집의 성하명, 장령 유준창, 지평 안후직·곽제화 등이 아뢰기를, “〈상략〉 또한 제주를 도회(都會)로 삼는 것은 여러 차례 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꺾어서 장차 버릴 땅이 되었으니, 구차하게 풍력(風力)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탄압(憚壓)할 수 없습니다. 새로 현감으로 제수한 박상질(朴尙質)을 개차(改差)하도록 명하기를 바랍니다. 풍력(風力)이 있으면서 선치(善治)할 수 있는 문관(文官)으로써 각별히 택송(擇送)하소서. 새로 활인별제(活人別提)²⁰⁸로 제수한 김림(金琳)은 본래 비천한 사람으로서, 동반 6품의 실직(實職)을 모수(冒受)하고 벼슬길의 맑지 못함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활인서의 별제 김림을 태거(汰去)하도록 명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박상질의 일은 계에 따라 4차의 기제(祈祭)를 지낸 뒤 개성부와 장단 등의 관에서 우택(雨澤)을 치계하여 또한 여러 번 시상(施賞)했으니 불가(不可)하지 아니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박상질, 제주, 도회, 김림, 활인별제.

208) 활인별제(活人別提): 활인서(活人署)의 별제(別提). 활인서는 조선 때, 서울에서 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별제는 조선시대에, 각 관아에 속한 정육품·종육품 벼슬이다.

❖ 順治十二年乙未七月十九日辛丑

- 洪處大,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罪人放未放啓本, 自刑曹移送本府, 而判義禁元斗杓, 方在呈告中, 待其出仕, 回啓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6년(1655) 을미년 7월 19일(신축)

- 제주 죄인 방미방(放未放)의 계본에 대해 원두표(元斗杓)가 출사(出仕)한 뒤에 회계(回啓)하겠다는 의금부(義禁府)의 계
- 홍처대(洪處大)가 의금부(義禁府)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 죄인의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²⁰⁹⁾은 형조(刑曹)에서 본부(의금부)로 이송(移送)하였으며, 판의금(判義禁)²¹⁰⁾ 원두표(元斗杓)가 바야흐로 정고(呈告)²¹¹⁾ 중에 있어서 그 출사(出仕)를 기다린 뒤에 회계(回啓)하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홍처대, 방미방계본, 원두표, 제주.

209)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 죄인의 석방 여부를 묻는 계본(啓本: 임금에게 큰일을 아뢴 때 제출하던 문서). 사면령을 내린 뒤, 각 도의 감사가 그 도의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쭙어 결정할 부류(稟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계본(啓本)으로, 이를 토대로 사면이 시행된다.

210) 판의금(判義禁):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조선시대에 둔, 의금부의 으뜸 벼슬.

211) 정고(呈告): 관리가 사직 또는 휴가를 청원하는 글을 올림.

❖ 順治 十二年 乙未 七月 二十一日 癸卯

- 南老星以成均館官員, 以知館事意啓曰, 全南道扶安地蝟島, 靈巖地楸子島, 羅州地都草島, 靈光地角里島·鵠島·紫雲坪等六處, 自祖宗朝, 折給本館, 以補多士供養之資, 今至數百年. 上司宮家, 曾不敢侵占. 往者鹽鐵設立時, 靈·羅所屬五島則皆屬鹽鐵, 而蝟島一島, 猶屬本館. 近年以來, 本道本官【缺一行半】主投獻宮家, 凡島中魚物興產之處, 本館皆不得下手 收稅國學供饋, 日益無形, 誠非細慮. 其本道本官, 檢察宮家諸所冒占者, 竝一一還屬本館, 以重養士之地, 何如? 傳曰, 令該曹, 查覈處之.

❖ 효종 6년(1655) 을미년 7월 21일(계묘)

□ 영암 땅 추자도를 성균관에 떼어 줌

- 남노성(南老星)이 성균관 관원으로써 지관사(知館事)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남도 부안 땅 위도(蝟島), 영암 땅 추자도(楸子島), 나주 땅 도초도(都草島), 영광 땅 각리도(角里島)와 작도(鵠島), 자운평(紫雲坪) 등 6곳은 조종조(祖宗朝)부터 본 관(성균관)에 떼어 줘서 많은 선비를 공양하는 물자로 돕게 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상사(上司)와 궁가(宮家)도 일찍이 감히 침점(侵占)하지 못했습니다. 그 섬에 가는 자는 염철(鹽鐵)을 설립할 때 영암, 영광 및 나주 소속의 다섯 섬에는 모두 염철(鹽鐵)에 속했으며, 위도(蝟島) 한 섬만 본관에 속했습니다. 근년 이래로 전남도의 본관에서【1행 반이 빠짐】궁가에 바쳐서 무릇 섬 안은 어물(魚物)이 흥산(興產)하는 곳인데, 본관은 모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거둔 세금은 국학(國學)에 공궤(供饋)하니 날마다 이익이 없어서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전남도의 본관 궁가 여러 곳에서 모점(冒占)한 것을 검찰(檢察)해서 모두 일일이 본관에 환속(還屬)하고 선비를 기르는 곳을 중히 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핵(查覈)하여 처리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남노성, 성균관, 위도, 도초도, 각리도, 추자도, 작도, 자운평.

❖ 順治十二年乙未八月二日癸丑

- 晝講【入侍座目見上】上讀前受音一遍. 李端相進講小雅天保六章, 上亦讀音釋各一遍, 講訖. …… 上曰, 嘗聞濟州牛隻甚多, 或可得之於其處耶? 浣曰, 濟州之牛, 其皮甚薄, 不可用矣. 【擧條並見上故不錄 出燼餘日記】

❖ 효종 6년(1655) 을미년 8월 2일(계축)

□ 제주 우척(牛隻)의 가족에 관한 건

- 주강(晝講)【입시(入侍)의 좌목(座目)이 앞 글에서 보임】에서, 임금이 전에 배운 것을 음(音)으로 한번 읽었다. 이단상(李端相)²¹²⁾이 나아가 <소아(小雅)>의 천보(天保) 6장²¹³⁾을 강하였다. 임금 또한 음으로 한 번 읽고, 해석도 각 한 번씩 한 뒤, 강을 마쳤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제주의 소가 매우 많다고 들었는데, 혹 그곳보다 더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완(李浣)이 말하기를, “제주의 소는 그 가족이 매우 얇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에게 아뢴 조항은 모두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음. 불타고 남은 승정원일기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우척.

212) 이단상(1628~1669): 조선 후기의 학자·문신. 1664년(현종 5) 집의가 되어 입지권학(立志勸學)에 관한 다섯 조목을 상소하고 스스로 관직을 떠났다. 홍명하(洪命夏)·송준길(宋浚吉)·조복양(趙復陽) 등이 그의 학문과 덕행을 인정해 경연관(經筵官)에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를 사양하고 양주 동강(東岡)으로 은퇴하였다.

213) 소아(小雅): 《시경》의 한 편의 이름. 작은 정사(政事)에 관한 일을 노래한 정악(正樂)으로, 《시경》 305편 중 72편을 이룬다. <천보(天保)>는 오래 살기를 축수하는 내용이라고도 하고, 신하가 임금께 답하는 노래라고도 함. 여(如) 자가 9자 들어 있어서 천보 9여(天保九如)라고도 함.

❖ 順治 十二年 乙未 八月 十七日 戊辰

○ 下直, 大靜縣監李禮男.

❖ 효종 6년(1655) 을미년 8월 17일(무진)

□ 大靜縣監(大靜縣監) 이예남(李禮男)이 하직함.

○ 大靜縣監(大靜縣監) 이예남(李禮男)²¹⁴⁾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大靜縣監, 이예남, 하직.

214) 이예남(1604~?): 자는 자화(子和), 본관은 전주(全州). 1636년(인조 14)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급제함.

❖ 順治 十二年 乙未 八月 二十日 辛未

- 司僕寺啓曰, 濟州後運歲貢馬二百匹, 而其中一匹, 到康津下陸之際, 致傷即斃, 一匹到長興病留, 其餘一百九十八匹上來, 依前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6년(1655) 을미년 8월 20일(신미)

□ 제주 후운(後運) 세공마 상래(上來)에 관한 건

- 사복시가 아뢰기를, “제주에서 후운(後運)한 세공마(歲貢馬)가 200필인데, 그 가운데 1필이 강진(康津)에 도착하여 하륙(下陸)할 때 치상(治傷)하여 죽고, 1필은 장흥(長興)에 도착하여 병류(病留)하고, 그 나머지 198필은 상래(上來)했으니, 전례에 따라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세공마, 영마색리.

❖ 順治 十二年 乙未 八月 二十日 辛未

- 又啓曰, 歲貢馬例於初秋草未衰之時上來然後, 箭串放牧, 各邑分養之際, 可免倒損之患, 而今始到京, 故推問濟州領馬色吏, 則七月初九日, 下陸於初面康津縣云, 沿般遲滯, 據此可知. 今若不治, 後弊難防, 領馬色吏等則自本寺 從重治罪, 一路稽滯官吏 則令京畿·忠清·全南三道監司查出, 推考啓聞, 何如? 傳曰, 依允. 【出司僕騰錄】

❖ 효종 6년(1655) 을미년 8월 20일(신미)

□ 제주 후운(後運) 세공마 상래(上來)에 관한 건

- (사복시에서) 또한 아뢰기를, “세공마는 초가을에 풀이 아직 마르지 않을 때에 전례에 따라 상래(上來)한 뒤에 살곳이[箭串]²¹⁵⁾에 놓아먹이고,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할 때 쓰러져 죽을 염려를 면하는데, 지금에야 비로소 서울에 도착하여 그러므로 제주의 영마색리(領馬色吏)를 추문(推問)한 즉, 7월 초9일에 초면(初面) 강진현(康津縣)에 하륙했다고 합니다. 연반(沿般)으로 지체(遲滯)된 것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영마색리들은 본 시(사복시)에서 죄의 무거움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오는 길에 늦어지게 한 관리는 경기(京畿), 충청(忠淸), 전남(全南) 3도의 감사(監司)에게 사출(查出)하여 추고(推考)한 내용을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로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살곳이, 세공마, 영마색리.

215) 살곳이[箭串]: 지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을 이름.

❖ 順治 十二年 乙未 九月 六日 丁亥

- 司僕寺啓曰, 大靜縣監權克中遞任, 進上馬二匹上來, 依前禾毛色別單書入, 而內廄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出司僕騰錄】

❖ 효종 6년(1655) 을미년 9월 6일(정해)

□ 大정현감(大靜縣監) 권극중(權克中) 체임 때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건

- 사복시가 아뢰기를, “대정현감 권극중(權克中)이 체임(遞任)할 때 진상마 2필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전례에 따라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적어 들여보냈으니, 내구(內廄)에서 입양(立養)하는 뜻을 감히 아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대정현감, 권극중, 진상마, 내구.

❖ 順治 十二年 乙未 十一月 二十三日 癸卯

- 司僕寺啓曰, 平安道定州都致串·鐵山大串·宣川身彌島等處, 本以本寺所屬之地, 放馬設屯, 其來已久, 而椲島漢人設鎮之時, 侵害屯民, 殺食馬匹, 不得支保, 因此革罷矣. 此處土地肥沃, 水草豐盛, 空棄可惜, 故曾於己丑年間, 啓下捉出濟州場馬五十八匹, 移放於身彌島, 以本道人, 差定監官, 收拾舊時牧子. 又令新募流民看護馬群, 耕作陳荒處, 其意專在於漸次復設三處, 前後監官, 皆不得其人, 今已七年. 馬群孳息, 僅至百三十匹, 屯穀所收, 亦甚零星, 仍循度日, 不爲變通, 則成就無期. 定州居前縣監林大穢, 素稱勤幹, 家且不遠, 想必備諳設施利病, 復設監牧官, 以此人差除, 所用印信則依他例, 令該曹給送, 所食料米則亦依他例, 自本寺題給屯穀, 以責成效, 何如? 傳曰, 允. 【出司僕牒錄】

❖ 효종 6년(1655) 을미년 11월 23일(계묘)

□ 제주 목장의 58필을 착출하여 신미도(身彌島)로 옮겨 놓아먹이게 한 것과 임대직(林大穢)을 감목관으로 차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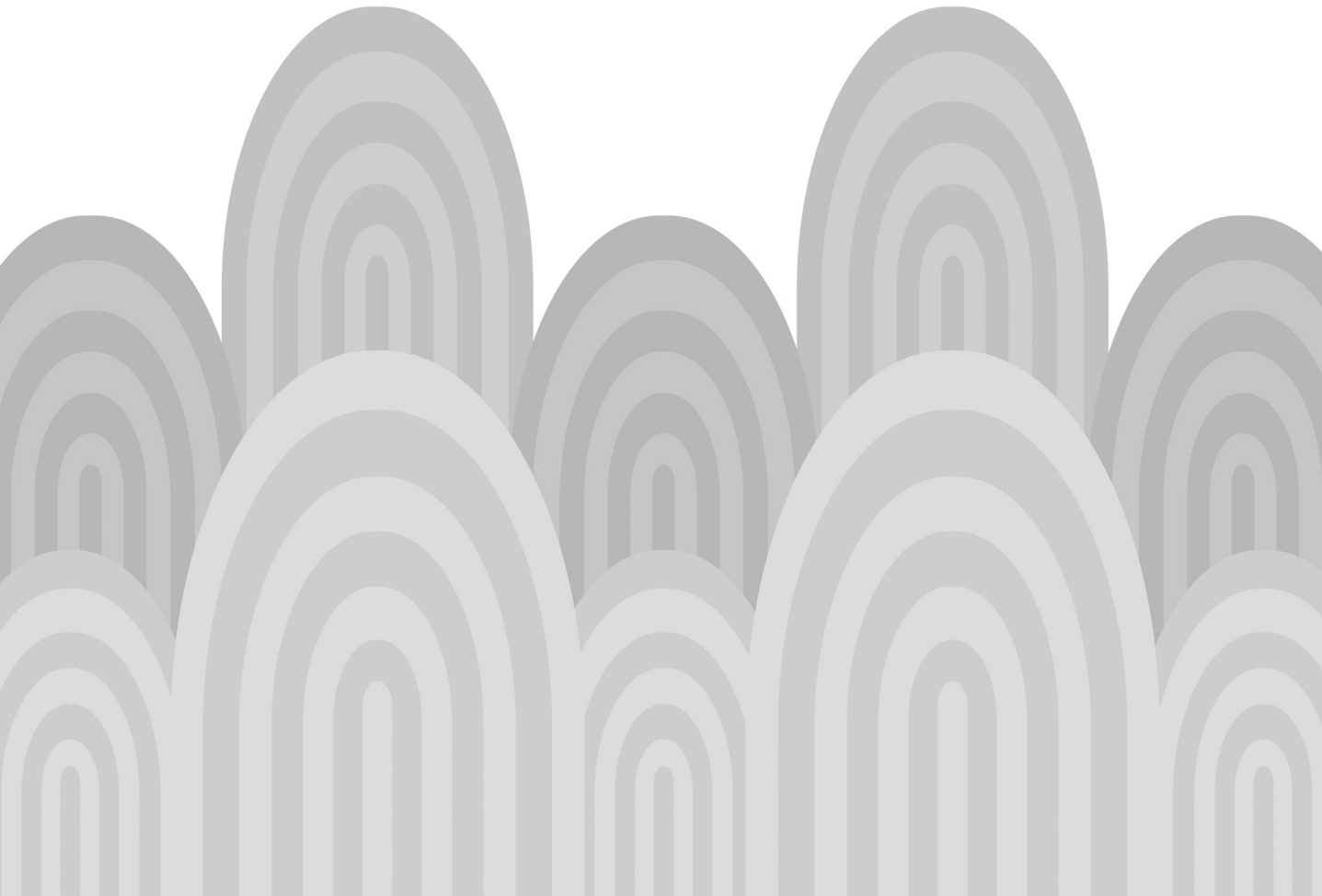
- 사복사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정주(定州)의 도치곶이[都致串], 철산(鐵山)의 한곶이[大串], 의천(宜川)의 신미도(身彌島) 등은 본래 본시(사복시) 소속의 땅으로, 말을 놓아먹이는 둔(屯)을 설치해서 운영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도(椲島)는 한인(漢人)이 진(鎭)을 설치할 때 둔민(屯民)을 침해(侵害)하고 마필(馬匹)을 죽여 먹어버려서 보전할 수가 없어서 이곳을 혁파(革罷)하였습니다. 이곳의 토지가 비옥하고 물과 풀이 풍성하여 비워서 버려놓기가 아까워서 일찍이 기축(1649, 효종 즉위년) 연간에 제주 목장의 말 58필을 계하(啓下)하여 착출하고, 신미도(身彌島)로 옮겨서 방목하고, 본도인을 감관(監官)으로 정하고 옛날의 목자들을 수습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민(流民)을 새로 모집하여 말들을 간호하게 하고, 황무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그런 뜻으로 점차 복설한 3곳을 오로지 있게 했는데, 전후의 감관은 모두 그 책임자를 얻지 못한 지가 지금 이미 7년이 되었다. 마군(馬群)이 번식한 게 겨우 130필에 이르고, 둔곡(屯穀)을 거두는 것 또한 매우 영성(零星)해서, 그대로 세월만 보내니 변통할 수가 없는 즉 성취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정주(定州)에 사는 전 현감 임대직(林大穢)은 본디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집 또한 멀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반드시 잘 배워서 알고 이로운 일과 병폐를 잘 헤아려 계획해서 다시 감목

관(監牧官)을 설치하여 이 사람으로 제수하고, 필요한 인신(印信)은 곧 다른 예에 따라서 해조로 하여금 제수하고, 지급할 요미(料米) 또한 다른 예에 따라 본시(사복시)에서 둔곡(屯穀)을 지급하여 효과를 이루도록 책임지우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도치곶이, 한곶이, 신미도, 가도, 감목관, 임대직.

1656年



❖ 順治 十三年 丙申 三月 三日 壬午

- 大臣·備局堂上引見時, 上曰, 義州國之西門, 一民有關, 前日定配罪人等放送, 以示朝家顧恤之意, 可也. 前者莫乃母子之放釋, 非爲彼人之請也, 欲以邊上顧恤之意也. 以此知委于該道, 且令該曹, 放送. 右議政沈之源所啓, 伏見濟州牧使推刷都監牒報, 則本州奴婢出居固城者, 將至九十餘名云, 其在國法, 似當, 盡爲刷送矣. 兵曹判書元斗杓曰, 濟州民出陸居生者, 多至二千七百餘口. 以法言之, 固宜一一刷送, 而其勢甚難, 頃見慶尙監司狀啓, 則固城時居者九十餘名, 今若盡爲刷還, 則固城將至一空云, 何以爲之? 上曰, 此時邊民騷屑, 亦甚可慮. 只近年出陸入送, 且此後則各別嚴禁, 以杜出陸之弊, 可也. 上曰, 北民刷還, 不可不嚴明爲之, 而以頃年金禮健事觀之, 則無實可知. 當初金禮健事, 該曹非不詳知, 而尙無舉行之實, 殊甚未妥. 自刑曹更爲嚴督於北人所在官, 使之趁速刷還, 可也.

❖ 효종 7년(1656) 병신년 3월 3일(임오)

제주목사(濟州牧使) 추쇄(推刷)의 건과 고성(固城)에 살고 있는 제주인(濟州人)을 되돌려 보내는 것에 대한 것

-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할 때,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는 국가의 서문(西門)이고 한 나라 백성들의 관문이 있는 곳이므로, 전날의 정배죄인(定配罪人)들을 풀어 주어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구출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전자(前者) 막내 모자를 풀어 준 것은 그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변경에서 불쌍히 여겨 구출하는 뜻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를 해당 도에 알리고, 또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풀어주게 하라.”라고 하였다.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뢴 바, “엿드려 제주목사를 추쇄(推刷)한 도감의 첩보(牒報)를 살펴보건대, 본 고을의 노비를 고성(固城)으로 내보내 살게 한 것이 거의 9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국법이 있으니 마땅히 같게 해서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병조 판서 원두표가 말하기를, “제주 백성 가운데 육지로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2,700여 명에 이릅니다. 법으로서 그것을 말하면 당연히 일일이 돌려보내야 하나, 그 형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침 경상감사의 장계를 보니, 고성(固城)에 현재 살고 있는 90여 명을 지금 만약 다 돌려보내면 고성은 장차 비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때 변경 백성의 소요가 있을까 또한 매우 염려스럽다. 다만 가까운 해에 출륙한 사람을 입송

시키고, 또한 이 후에는 각별히 엄금하여 출륙하는 폐단을 막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북민(北民)을 돌려보내는 것은 엄명(嚴明)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안 되는 몇 해에 김예건(金禮健)의 일을 보니, 실체가 없는 것을 알겠다. 당초에 김예건의 일은 해조가 자세히 알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거행한 사실이 없었으니, 매우 타당하지 않다. 형조에서 다시 북인(北人)²¹⁶⁾ 소재관(所在官)에 엄독(嚴督)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돌려 보내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심지원, 원두표, 김예건, 추쇄.

216) 북인(北人): 북방 사람.

❖ 順治 十三年 丙申 六月 十一日 戊子

- 司譯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各學【二行缺】之次尹廷昌, 依法例差定濟州兼軍官【四字缺】越海之任, 累次呈狀, 今過半年, 無意赴任, 如此之流, 若不重治, 無以懲其頑悍之習. 尹廷昌兼軍官改差, 定配濟州, 何如? 傳曰, 允.

❖ 효종 7년(1656) 병신년 6월 11일(무자)

□ 윤정창(尹廷昌)을 제주 겸군관(兼軍官)으로 차정하는 건

- 사역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원의 각 학【2행이 빠짐】의 다음으로 윤정창(尹廷昌)을 법과 전례에 따라 제주 겸군관(兼軍官)으로 차정하고, 【4자가 빠짐】바다 건너의 소임은 여러 번 장계를 올렸습니다. 지금 반년이 지나도 부임하려 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부류는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완악하고 사나운 습속을 응징하지 않고서 윤정창을 겸군관에서 고쳐서 제주로 정배(定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윤정창, 제주, 겸군관.

❖ 順治 十三年 丙申 六月 二十三日 庚子

○ 都目政 以宋之濂爲康陵參奉 …… 李益亨爲濟州判官 …… 【都目政事】

❖ 효종 7년(1656) 병신년 6월 23일(경자)

□ 이익형(李益亨)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음.

○ 도목정(都目政)에서 송지렴(宋之濂)을 강릉참봉(康陵參奉)으로 삼고, <중략>
이익형(李益亨)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도목정사²¹⁷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송지렴, 이익형, 제주판관.

217) 도목정사(都目政事): 해마다 6월과 선달(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벼슬을 올리거나 내리던 일. 도목정(都目政). 세초도목(歲抄都目).

❖ 順治 十三年 丙申 七月 六日 壬子

- 司僕寺【六字缺】州, 每式年凶咎馬一百匹, 年例凶咎馬一百【十字缺】元數內, 減其三十三匹, 只送一百六十【十三字缺】載來一匹, 到海南病留一匹, 到【十字缺】一匹, 到恩津故失一匹, 病留一匹, 到尼山故失【十二字缺】稷山故失三匹, 到振威病留二匹 故失計餘雜【八字缺】十二匹上來, 依前毛禾色, 另單書入, 而在前則沿路各邑, 或【二字缺】或物故之馬, 本州押領及色吏等, 枚呈本邑, 受出公文, 以憑虛實矣. 今番雜頃, 若是之多, 而可據公文, 本無一張, 馬匹禾毛色, 亦與總目單子, 間間有不同者, 莫重馬政, 殊甚虛疏, 本邑所爲, 亦甚不當. 牧使具義俊, 爲先推考, 所謂押領及色吏, 竝爲囚禁, 查問一路有頃虛實後 處啓, 何如? 傳曰, 允.

❖ 효종 7년(1656) 병신년 7월 6일(임자)

- 식년(式年) 흥구마(凶咎馬)의 이송 중에 발생한 잡탈마(雜頃馬)에 대한 공문(公文)의 허실(虛實)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구의준(具義俊)의 추고(推考), 압령(押領)과 색리(色吏)의 수금(囚禁)을 청하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사복시에서 【6자가 빠짐】(제)주에서 매 식년 흥구마 100필, 연례흥구마 1□□【10자가 빠짐】, 원래 수효 중 33필이 줄어 다만 16□【13자가 빠짐】1필을 실고 왔는데, 해남에 이르러 1필이 병으로 머물고, 【10자가 빠짐】□□에 이르러 1필, 은진에 이를 사고로 1필 잃고, 병으로 1필 머물렀으며, 니산에 이를 사고로【12자가 빠짐】, 직산에서 사고로 3필 잃고, 진위에서 병으로 2필 머물러 사고 합쳐 남은 잡【8자가 빠짐】12필이 올라왔습니다. 전례에 따라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에도 있던 즉 연로의 각 읍에서 혹은 【2자가 빠짐】 혹은 사고로 잃은 말에 대해 “본주(제주)에서 말을 호송한 색리들이 본 고을에서 올려 받고 나온 공문으로써 허실(虛實)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금번과 같은 잡탈(雜頃: 여러 가지 잡스런 탈)이 이와 같이 많으나, 그것을 증명할 만한 공문이 본래 1장도 없습니다. 마필의 나이와 털색도 총목단자와 비교하니 간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막중한 마정(馬政)이 허술하기 짝이 없으니, 본 고을에서 한 것 또한 심히 부당합니다. 목사 구의준(具義俊)을 우선 추고(推考)하고 소위 말을 호송한 색리는 모두 잡아 가두고, 오는 길에 유탈(有頃)한 허실(虛實)을 조사하여 물은 뒤에 처리하여 아뢰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잡탈마, 구의준, 흥구마.

❖ 順治 十三年 丙申 七月 十一日 丁巳

- 李皙,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丙申式年, 御乘馬二十匹, 差備馬八匹, 及年例馬□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合一百六十八匹內, 沿路病留馬四匹計除, 一百六十四匹, 禾毛色別單開錄以入, 而病留之馬, 無該邑公文, 殊甚虛疎, 押來人等, 自本司從重治罪, 查問該邑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7년(1656) 병신년 7월 11일(정사)

□ 제주(濟州) 병신년(丙申年) 식년(式年)의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건

- 이석(李皙)²¹⁸⁾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의 병신년(丙申年) 식년(式年)에는 어승마(御乘馬) 20필, 차비마(差備馬) 80필, 연례마(年例馬) □필²¹⁹⁾, 삼명일(三名日) 진상마(進上馬) 60필, 합계168필 중 연로(沿路)에 병류마(病留馬)²²⁰⁾ 4필을 계산에 제외하면 164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개록(開錄)하여 들여보냈으며, 병류마(病留馬)는 해당 고을의 공문이 없어서 매우 미덥지 않으니, 호송해 온 사람들을 본사(本司)에서 무거움에 따라서 죄를 다스리고 해당 고을을 사문(查問)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이석, 제주, 어승마, 차비마, 연례마, 삼명일 진상마.

218) 이석(1603~1685): 조선 후기의 문신. 1650년(효종 1) 사헌부집의로 김여수(金汝水)의 탐장(貪贓)을 논하고, 1656년 동부승지·공조참의를 지내고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연행(燕行)하였다. 이듬해 여주목사로 나가 요무(妖巫)가 함부로 부중(府中)을 출입하면서 음사(淫祀)를 행하므로 그를 장살하여 그 폐단을 없앴다.

219) □필: 8필로 추정됨.

220) 병류마(病留馬): 병이 걸려 보내지 못하고 머무르게 한 말.

❖ 順治 十三年 丙申 七月 十二日 戊午

- 李皙,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出來丙申歲貢馬二百匹【二字缺】龍潭病留, 四匹潭陽病留, 一匹鎭安病留, 二匹【六字缺】匹, 合八匹計除, 實捧一百九十二匹, 【九字缺】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7년(1656) 병신년 7월 12일(무오)

□ 제주(提州)에서 출래(出來)한 병신년(丙申年, 1654, 효종 5) 세공마(歲貢馬)에 관한 건

- 이석(李皙)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에서 올라 온 병신년 세공마(歲貢馬) 200필 중에【2자가 빠짐】(□필은) 용담(龍潭)에서 병으로 머물고, 4필은 담양(潭陽)에서 병으로 머물고, 1필은 진안(鎭安)에서 병으로 머물고, 2필은 【6자가 빠짐】 필, 합계 8필을 계산에서 제외하니 실제 받들어 올린 것은 192필입니다. 【9자가 빠짐】 들여보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이석, 제주, 세공마.

❖ 順治 十三年 丙申 七月 十八日 甲子

- 俞場,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三字缺】年例馬, 實數三三百五十匹內, 差備賜給六十匹計除, 餘馬二百九十匹, 而擇其中有將來二百五十匹, 放牧箭串, 待草衰分養各邑, 以爲日後國用, 其餘四十匹及凶咎馬一百五十二匹, 則前後受帖人等處, 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7년(1656) 병신년 7월 18일(갑자)

제주 연례마(年例馬)에 관한 건

- 유창(俞場)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3자가 빠짐】 연례마의 실수 350필²²¹⁾ 중 차비마(差備馬)로 사급(賜給)한 60필을 계산에서 제외한 나머지 말은 290필입니다. 그 가운데 장래(將來)할 250필을 가려서 살곶이[箭串]에 방목하고, 풀이 마를 때를 기다려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해서, 뒷날에 나라의 소용으로 삼고, 그 나머지 40필과 흉구마(凶咎馬) 152필은 전후로 첩(帖)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유창, 제주, 연례마, 차비마, 흉구마, 살곶이.

221) 필사본 《승정원일기》에는 “三三百五十”으로 표기되었는데, “三百五十”의 잘못이다.

❖ 順治 十三年 丙申 七月 二十二日 戊辰

- 沈膺,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韓汝尹遞任, 進上馬三匹上來, 馬毛色別單以入, 而其中一匹, 則右前膝有病, 韓汝尹, 姑先從重推考, 馬匹則依前內廄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7년(1656) 병신년 7월 22일(무진)

□ 제주판관(濟州判官) 한여윤(韓汝尹)이 체임할 때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건

- 심노(沈膺)가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 전 판관 한여윤(韓汝尹)이 체임(遞任)할 때, 진상마 3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의 털색은 별단(別單)으로 들여보냈는데, 그 가운데 1필은 오른쪽 앞무릎에 병이 있으니, 한여윤을 우선 무거운 죄에 따라 추고하고, 말은 전례에 따라 내구(內廄)에서 기르게 할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심노, 한여윤, 제주판관, 진상마, 내구.

❖ 順治 十三年 丙申 七月 二十六日 壬申

- 沈膺, 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濟州六月朔別進上 大妃殿烏賊魚四十貼內 十五貼, 槌鮓二百四十貼內, 一百貼, 大殿槌鮓三百一十貼內 一百四十貼, 中殿烏賊魚四十貼內 二十貼, 槌鮓二百四十【十字缺】敗臭. 莫重進上, 不謹看護, 以致如此, 殊極可駭. 當該陪持人, 令攸司囚禁治罪, 何如? 傳曰, 允.

❖ 효종 7년(1656) 병신년 7월 26일(임신)

□ 6월 대비전(大妃殿) 진상품에 관한 건

- 심노(沈膺)가 사용원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에서 6월 초하루에 특별히 진상한 대비전(大妃殿) 오징어 40첩 중 15첩, 추복(槌鮓) 240첩 중 100첩, 대전(大殿) 추복(槌鮓) 310첩 중 140첩, 중전(中殿) 오징어 40첩 중 20첩, 추복(槌鮓) 240【10자 빠짐】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막중한 진상품에 대해 잘 보호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주 해괴합니다. 그러니 해당 (진상품을) 호송해 온 사람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가두어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심노, 제주, 별진상.

❖ 順治 十三年 丙申 八月 二十九日 甲辰

○ 以李敏迪爲典籍 …… 鄭思翰爲濟州判官 …….

❖ 효종 7년(1656) 병신년 8월 29일(갑진)

정사한(鄭思翰)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음

○ 이민적(李敏迪)을 전적으로 삼고, <중략> 정사한(鄭思翰)을 제주판관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이민적, 정사한, 제주판관.

❖ 順治 十三年 丙申 九月 十八日 癸亥

- 司僕寺啓曰, 旌義縣監南重晦, 遞任, 進上馬二匹上來, 依前禾毛色, 別單書入, 而內廄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7년(1656) 병신년 9월 18일(계해)

□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중회(南重晦) 체임(遞任) 때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건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중회(南重晦)가 체임(遞任)하면서 진상마(進上馬) 2필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전례에 따라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²²²으로 써서 들고, 내구(內廄)에서 기르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정의현감, 남중회, 진상마, 내구.

222) 별단(別單): 임금에게 올리는 주본(奏本)에 덧붙이던 문서나 인명부.

❖ 順治 十三年 丙申 九月 二十一日 丙寅

○ 有政 以呂聖齊爲注書 …… 以安汝玃爲旌義縣監 …… 【以上朝報】

❖ 효종 7년(1656) 병신년 9월 21일(병인)

□ 안여공(安汝玃)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음

○ 정사(政事)가 있었다. 여성제(呂聖齊)를 주서(注書)로 삼고, <중략> 안여공(安汝玃)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이상 조보에 의함】²²³⁾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여성제, 안여공, 정의현감.

223) 조보(朝報): 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기별(奇別)·기별지·난보(爛報)·조지(朝紙).

❖ 順治 十三年 丙申 九月 二十四日 己巳

- 司僕寺啓曰, 七月十七日, 因傳教 雌馬三匹, 另擇體大有才禾少者, 趁即上送之意, 行文, 分付于濟州牧矣, 今來之馬, 臣等看審, 則體少無才, 皆是不用之物也. 本州公私雌馬, 不許出陸, 防禁甚嚴, 故素多良品, 而今此三匹, 苟充出送, 其不有朝家命令, 莫此尤甚, 極爲駭愕. 牧使具義俊, 姑先從重推考, 國屯私屯中, 有才體大良品三匹, 各別精擇, 冬間善養肥澤, 待明春草長, 四月內上送, 今來三匹, 則退送, 何如? 傳曰, 允. 【司僕騰錄】

❖ 孝宗 7년(1656) 병신년 9월 24일(기사)

□ 암말 3필 진상 건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7월 17일에 암말 3필을, 체구가 크고 재주가 있으면서 나이가 적은 것을 잘 가려서 진즉에 올려 보내라는 전교로 인해, 행문(行文)하여 제주목에 분부하였습니다. 지금 온 말을 신들이 간심(看審)한 즉 체구가 작고 재주가 뛰어나지 않아서 모두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본 고을의 공사(公私)의 암말은 출륙(出陸)을 허용하지 않고 방금(防禁)하는 것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본디 양품(良品)이 많으나 이번의 3필은 구차하게 충당하여 내보내 조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어서 매우 놀랄 만한 일입니다. 목사 구의준을 우선 죄의 무거움에 따라 추고하고, 국둔(國屯)과 사둔(私屯) 가운데 재주가 있고 체구가 큰 양품(良品) 3필을 각별히 가려 택하고 겨울 사이에 살찌고 윤택하게 잘 길러 내년 봄풀이 자라는 때를 기다렸다가 4월 안에 올려 보내라 하고, 지금 온 3필은 물려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구의준, 국둔, 사둔.

❖ 順治 十三年 丙申 十一月 六日 庚戌

- 又啓曰, 新除授綾州牧使蘇東道戶奴, 呈狀于本曹曰, 其上典, 自濟州出來之後, 重患濕脹, 浮氣遍身, 痰喘亦重, 不得運身, 無路赴任, 斯速處置云, 蘇東道, 身在遠方, 所患如此, 改差, 何如? 傳曰, 允.

❖ 효종 7년(1656) 병신년 11월 6일(경술)

□ 제주 출래(出來) 호노(戶奴)에 관한 건

- (이조에서) 또한 아뢰기를, “새로 능주목사로 제수 받은 소동도(蘇東道)의 호노(戶奴)가 본 조에 낸 소장에 이르기를, ‘제 상전이 제주에서 올라온 뒤에, 중환의 습창으로 부기(浮氣)가 온몸으로 퍼지고, 가래가 심한 천식 또한 중하여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임할 길이 없어서 속히 처리해주시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소동도가 먼 곳에 있으면서 병환 중인 바가 이와 같으니, 관직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능주목사, 소동도, 제주.

❖ 順治 十三年 丙申 十一月 二十一日 乙丑

- 以濟州牧使石金橘封進狀啓, 傳于金振曰, 此等果實, 元非貴物, 年年加植, 則自然有裕, 其弊亦不及於民間, 而何以無一人留意種植, 每每公然馳啓如是乎? 事極痛駭, 此意言于該曹, 使之嚴飭該道.

❖ 효종 7년(1656) 병신년 11월 21일(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석금귤(石金橘) 봉진(封進) 장계(狀啓)에 관한 건

- 제주목사의 석금귤(石金橘) 봉진 장계에 대해, 김진(金振)에게 전교하기를, “이들 과실은 원래 귀중한 물건이 아닌데도 해마다 더 심었으니, 자연히 넉넉해졌다. 폐단 또한 민간에 미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한 사람도 유의하여 종식(種植)하지 않아서, 매번 공연히 이와 같이 치계(馳啓)하는가? 일이 몹시 이상스러워 놀라우니, 이 뜻을 해조에 알려서, 그로 하여금 해도를 엄칙(嚴飭)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석금귤, 김진.

❖ 順治 十三年 丙申 十一月 二十二日 丙寅

- …… 金振以禮曹言啓曰, 以【十字缺】曰, 此等果實, 元非貴物, 年年加植, 【九字缺】於民間, 而何以無一人留意於種植, 每每公然馳啓, 如是【四字缺】駭, 此意言于該曹, 使之嚴飭本道事, 傳教矣. 金橘等果, 非如諸處興產之比, 非本邑則他無封進之處, 其於臣子享上之情禮, 所當逐年加植培養, 使之茂盛, 則必不艱於封進, 而只有二根之說, 似爲不近, 誠極可駭, 濟州牧使具義俊, 姑先從重推考. 今後栽植之數, 每於年終報本曹, 毋得如前任他, 亦不得以他果代封事, 嚴辭申飭, 何如? 傳曰, 依啓. 非特此果, 本島所產諸果, 皆以一體爲之, 且前因御史李慶億別單, 本曹覆啓, 各樣果木, 廣加栽植事, 分付矣. 厥後所植者, 幾許耶? 亦令查問, 可也.

❖ 효종 7년(1656) 병신년 11월 22일(병인)

□ 제주 감귤(柑橘) 봉진(封進)과 관련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구의준(具義俊)을 사문(查問)하는 건

- <상략> 김진(金振)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10자 빠짐】 이르기를, “이들 과실은 원래 귀중한 물건이 아닌데도 해마다 더 심었으니, 【9자가 빠짐】²²⁴⁾ (폐단 또한 민간에 미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한 사람도 유의하여 종식(種植)하지 않아서, 매번 공연히 이와 같이 치계(馳啟)하는가? 이와 같이【4자가 빠짐】²²⁵⁾ (일이 몹시) 이상스러워 놀라우니, 이 뜻을 해조에 알려서, 그로 하여금 본도를 엄칙(嚴飭)하도록 하라.”라고 전교하였다. 감귤 등의 과일은 여러 곳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에 견줄 것이 아니어서, 이 고을(제주)이 아니면 달리 봉진할 곳이 없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받드는 정리와 예의는 마땅히 해마다 더 심고 가꾸어서 무성하게 해서 반드시 봉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두 그루 이야기는 사리에 맞지 않은 일 같아서 진실로 해괴합니다. 제주목사 구의준(具義俊)은 우선 죄의 무거움에 따라 추고하고, 이후에는 심은 수를 항상 연말에 본조에 보고하고 전임의 다른 사람과 같게 하지 말라. 또한 부득이 다른 과일로 대신 봉진하는 일을 엄사(嚴辭)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다만 이 과일만 아니라 본도에서 나는 여러 과일도 모두 같이 시행하도록 하라. 또한 전 어사 이경억(李慶億)의 별단(別單)에 따라 본조에

224) 9자가 빠짐: 위의 효종 7년(1656) 11월 21일조의 ‘(則)自然有裕 其弊亦不及’을 의미하는 듯함.

225) 4자가 빠짐: 위의 효종 7년(1656) 11월 21일조의 ‘乎事極痛’을 의미하는 듯함.

서 다시 아된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를 널리 더 심는 일을 분부하였는데, 그 후에 심은 것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사문(査問)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6〉

△ 검색어: 김진, 제주목사, 구의준, 금굴, 이경억.

1657年



❖ 順治 十四年 丁酉 正月 十八日 辛酉

○ 濟州牧使具義浚, 以柑橘過時封進, 待罪事狀啓, 傳于洪處亮曰, 勿待罪事回諭.

❖ 효종 8년(1657) 정유년 1월 18일(신유)

□ 제주목사 구의준(具義浚)의 장계에 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구의준(具義浚)²²⁶⁾이 감귤 진상 올리는 것이 늦었다고 하여 대죄한다고 장계를 올리자 홍처량(洪處亮)²²⁷⁾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도록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구의준, 감귤, 홍처량.

226) 구의준(?~?): 1624년(인조 2) 정시 급제. 충청병사, 경상좌병사 역임. 1655년 9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658년 4월 이임함. 원문 具義浚의 ‘浚’이 뒤의 기사(효종 8년 8월 25일, 27일)에는 ‘俊’으로 되어 있음.

227) 홍처량(1607~1683): 본관 남양(南陽). 자 자회(子晦). 호 북정(北汀). 시호 정정(貞靖). 인조 15년(1637) 문과 급제. 예조참판, 대사헌 역임. 저서 《북정집》.

❖ 順治 十四年 丁酉 正月 十九日 壬戌

○ 金壽恒啓曰, 以備邊司·慶尙左水使·東萊府使狀啓粘目, 寶城海夫十餘名, 六月調送濟州時, 縣監拿問定罪事, 命下矣. 拿推傳旨, 卽當捧入, 而其時當該守令, 問于吏曹, 則縣監鄭萊彰, 丙申二月二十八日除授, 閏五月二十一日身死. 其代崔灝, 六月十一日除授, 被論卽遞, 其代成震燉, 七月初八日除授, 赴任云, 本縣海夫, 發船入往, 在於六月二十六日, 則此是鄭萊彰身死之後, 新縣監未及赴任之前, 今此拿推現告, 無當之者, 此傳旨何以爲之? 敢稟. 傳曰, 如是空官之時, 尤爲駭異. 令本道監司, 擅自調送者, 查問以啓.

❖ 孝宗 8년(1657) 정유년 1월 19일(임술)

□ 보성 해부를 제주로 조송할 때 현감 정죄에 대한 김수항(金壽恒)의 장계

○ 김수항(金壽恒)²²⁸이 아뢰기를, “비변사, 경상좌수사, 동래부사의 장계 접목에 보성(寶城)의 해부(海夫) 10여 명을 6월 제주(濟州)로 조송(調送)할 때 현감을 잡아 죄를 묻는 일로 하교의 명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잡아 추고하라는 전지가 곧 봉입 되었는데 그 당시의 해당 수령을 이조에게 물어본 결과 ‘현감 정래창(鄭萊彰)²²⁹이 1656년(丙申) 2월 28일 제수되었는데 윤5월 21일 사망하였고, 후임으로 최호(崔灝)²³⁰가 6월 11일 제수되었는데 논박을 받아 곧 갈렸으며, 후임으로 성진문(成震燉)이 7월 8일에 제수되어 부임하였다.’고 합니다. 본 현의 해부가 배를 띄워 들어간 것은 6월 26일이었다고 하니 이는 정래창이 사망한 뒤요, 신현감이 미처 부임하기 이전입니다. 지금 이처럼 잡아 추고하여 아뢰기에는 해당하는 자가 없는데 이 전지가 어찌하여 내려졌는지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와 같다면 (해당) 관아 수령이 비어 있었던 때이니 더욱 놀랍고 이상한 일이다. 본도 감사에 영을 내려 제멋대로 조송한 자를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김수항, 보성, 해부, 제주, 정래창, 최호, 성진문.

228) 김수항(1629~1689): 본관 안동(安東). 자 구지(久之). 호 문곡(文谷). 시호 문충(文忠). 효종 2년(1651) 문과 장원급제. 육조 판서, 영의정 역임. 김상헌(金尙憲)의 손자, 송시열(宋時烈) 등과 교유.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에게 사사됨. 현종 묘정 배향. 저서 《문곡집》 28권.

229) 정래창(1620~?): 본관 동래. 자 여명(汝明). 1651년(효종 2) 무과 별시 급제. 부친은 정석(鄭錫).

230) 최호(?~?): 본관 등 미상. 다만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에 대한 기사가 3건 등장. 1638년(인조 16) 1월 사과(司果)로 임용되었고, 1644년(인조 22) 6월에는 고부군수, 1649년(인조 27) 2월에는 전 군수 최호를 다시 서용하라는 기사가 그것임.

❖ 順治 十四年 丁酉 三月 十七日 庚申

- 政院啓曰, 濟州人李虞臣拿來, 假都事黃寅瑞, 在康津乘船待風狀啓, 二月二十六日成貼, 而全南監司趙啓遠, 據義禁府行關, 別定能走人, 飛關傳送之啓, 出於同月二十八日, 雖未及傳關於未發船之前, 既見鞠廳雖已發船, 別定風船入送, 勿爲拿來之關, 則所當依分付舉行, 一邊馳啓, 而已浹二旬, 尙爾寥寥, 莫知其由, 監司趙啓遠, 請推考. 傳曰, 允.

❖ 효종 8년(1657) 정유년 3월 17일(경신)

□ 제주인 이우신(李虞臣)에 대해 치계하지 않은 전남감사 조계원(趙啓遠)을 추고하도록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주인(濟州人) 이우신(李虞臣)²³¹을 잡아오려 가도사(假都事) 황인서(黃寅瑞)²³²가 강진에서 배를 타려 바람을 기다리다 장계한 것은 2월 26일 성첩(成貼)²³³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감사 조계원(趙啓遠)²³⁴이 의금부의 행관(行關)²³⁵에 의거 특별히 능한 심부름꾼을 정해 관문을 빨리 전송한다고 동월 28일 출발하였다고 아뢰었습니다. 비록 아직 띄우지 않은 배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청(鞠廳)²³⁶ 중이었고, 비록 이미 배를 띄운 뒤라도 별도로 정한 배에 잡아 오지 말라는 관문을 들여보내 분부대로 거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의 변경에서 말을 달려 아뢴 것이 이미 2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용하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감사 조계원을 추고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

231) 이우신(1624~?): 본관 용인(龍仁). 자 순부(舜附). 부친은 동지중추부사 이익(李益). 1644년(인조 22) 무과 정시(庭試)에 병과로 급제.

232) 황인서(?~?): 무과에 급제(연월 미상)하여 우후(虞候)를 지냄. 《국조인물고》(속고3, 경제, 황우한 묘표)에 의하면, 그의 증조부가 선조 때 대사헌을 지낸 황우한(黃佑漢)이고, 조부는 황정호(黃挺豪), 부친은 황연(黃旻).

233) 성첩(成貼): 문서에 관청의 도장을 찍음.

234) 조계원(1592~1670): 본관 양주(楊州). 자 자장(子長). 호 약천(藥泉). 시호 충정(忠靖). 신흘(申欽)의 사위, 이항복(李恒福)의 문인. 1628년(인조 6) 별시문과 급제. 삼사의 관원을 두루 역임. 김상헌(金尙憲)이 탄핵 당할 때 이를 힘써 구원함. 1662년(현종 3) 형조판서에 이르러 사직하고 보령에 은퇴하여 여생을 보냄.

235) 행관(行關): 상급관아에서 하급관아로 관문(공문)을 보내는 일.

236) 국청(鞠廳): 조선시대 역적 등 나라의 큰 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왕명으로 설치한 임시관청. 죄의 경중에 따라 친국(親鞠), 추국(推鞠), 삼성추국(三省推鞠)이 있다. 친국은 임금이 직접 신문하는 것이며, 추국은 필요에 따라 친국을 계속하는 것이고, 삼성추국은 강상죄인(綱常罪人)을 국문하는 것임.

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이우신, 황인서, 강진, 전남감사, 조계원.

❖ 順治 十四年 丁酉 四月 八日 庚辰

- 義禁府啓曰, 大靜定配罪人崔智男, 因其子上言覆啓, 陸地移配事, 判下, 故本道潭陽府移配單子, 已爲啓下矣. 絶島羅卒入送, 押領出來, 多有往來貽弊之端, 依近例令本道次次押送, 交付配所後, 啓聞之意, 行會本道, 何如? 傳曰, 允. 【禁府謄錄】

❖ 孝宗 8年(1657) 정유년 4월 8일(경진)

□ 대정에 정배된 최지남(崔智男)의 이배에 대한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정(大靜)에 정배된 죄인 최지남(崔智男)을 그 아들이 상언하여 거듭 아뢰었기 때문에 육지로 이배하는 일을 재가하여 본도 담양부(潭陽府)로 이배하는 단자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절도에 나졸을 들여보내 압송하여 나오도록 하면 왕래하며 폐를 끼치는 바가 많습니다. 근례(近例)에 의거 본도에 천천히 압송하라는 명을 내리고 배소에 교부한 후에 아뢴 뜻을 본도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의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의금부, 대정, 최지남, 담양부.

❖ 順治 十四年 丁酉 五月 十八日 庚申

- 備邊司啓曰, 頃因忠淸監司徐必遠條列狀啓, 濟州及西北人物刷還一事, 限秋成前姑停事, 既已覆啓蒙允. 他道似當一體施行, 以此意分付, 何如? 答曰, 允.

❖ 孝宗 8年(1657) 정유년 5월 18일(경신)

□ 제주와 서북의 인물 쇄환을 미루도록 분부하자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근래 충청감사 서필원(徐必遠)²³⁷이 조례 때문에 장계를 올려 제주(濟州) 및 서북(西北) 인물을 쇄환하는 하나의 일을 추수 전에 한하여 잠시 멈추는 것을 이미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타도에서도 일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니 이와 같은 뜻을 분부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비변사, 충청감사, 서필원, 제주, 서북인.

237) 서필원(1614~1671): 본관 부여(扶餘). 자 재이(載邇). 호 육곡(六谷), 만죽헌(萬竹軒). 시호 정헌(貞憲). 1648년 정시문과에 급제. 충청, 진라,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며 민생 구휼 및 지방의 폐단 개혁 사업을 많이 함. 왕에게 직언을 잘하여 당대 이상진(李尙眞) 등과 함께 오직(五直)이라 불림. 저서 《육곡유고(六谷遺稿)》.

❖ 順治 十四年 丁酉 六月 二日 癸酉

- 太僕寺啓曰, 近來內廐, 絶無御乘可合之馬, 只有獐馬若干匹而已, 事極寒心. 濟州牧場中, 擇取雌馬數十匹, 且質閭閻間禾老體大雄馬五六匹, 放于京畿牧場, 以爲別樣孳息之地, 似合便宜. 勅使回還後, 發遣本寺郎廳一人, 可合放牧處, 先爲看審後, 料理稟處, 何如? 上曰, 事甚便當, 依爲之. 【已上太僕騰錄】

❖ 孝宗 8年(1657) 정유년 6월 2일(계유)

□ 어승마를 방목할 장소에 관한 태복시의 계

- 태복시에서 아뢰기를, “근래 내구(內廐)²³⁸에는 어승마에 합당한 말이 거의 없고 다만 달마(獐馬) 약간 필만 있을 뿐이어서 사세가 매우 한심합니다. 제주(濟州) 목장 중에 암말 수십 필을 골라 취해서, 시중에 나이 있고[禾老] 몸집이 큰 숫말 5~6필과 바꾸고 경기 목장에 방목하여 특별히 번식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편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칙사가 돌아온 후에 본 관아의 낭청 1인을 보내 방목처로 합당할만한 곳을 먼저 살펴본 후에 맡길 곳을 헤아림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세가 가장 편리하고 합당한대로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태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태복시, 내구, 어승마, 제주.

238) 내구(內廐): 조선 시대 궁궐 안에 따로 두었던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별칭, 또는 내사복시에서 관리하는 궁궐 안의 마굿간.

❖ 順治 十四年 丁酉 七月 十三日 甲寅

- 曹漢英, 以司僕官員, 以提調意啓曰, 畿內南陽·仁川·江華等地諸島中, 牧馬最多, 難爲移置處. 三島外, 其他十餘島, 水草豐足, 可合放牧處. 今番本寺僉正李星徽, 遍尋其形勢以來, 聽其所言, 則江華長峯島, 雖在海中數十里之地, 而乘潮往來, 水路便易, 四山環立, 地勢平衍, 以其水草豐足之故, 居民之作畝耕食處亦多云. 取考馬籍, 則本島所放之馬, 不過八十七匹, 前頭點馬時, 沒數捉出, 分給禁軍, 而樹木蔥蔚之處, 待其草枯, 伐去荊棘藤蔓, 依例放火, 以絕毒虫之棲所, 則可便於放牧. 濟州雌馬, 似當移放於此島, 旣得可合放牧之所, 則雌馬之數, 不必依前定奪, 限以數十匹, 雖至五六十匹, 未爲不可, 豫爲知會. 濟州牧, 今冬本州點馬時, 極擇其體大有才品良種, 別爲移放之地, 何如? 傳曰, 依啓. 凡物多則不精, 五六十匹, 似爲過多, 減其數而極擇出送. 放場後, 本寺各別留意爲之, 俾爲實效, 可也. 且雄馬則何處馬用之乎?

❖ 효종 8년(1657) 정유년 7월 13일(갑인)

□ 제주 암말을 강화 장봉도에 옮겨 방목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조한영(曹漢英)²³⁹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경기 안의 남양(南陽), 인천(仁川), 강화(江華) 등의 여러 섬 안에 기르는 말이 매우 많아 옮겨 둘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 섬 외에 기타 10여 섬의 물과 풀이 풍족하여 방목할 만합니다. 금번 본 관아 검정 이성휘(李星徽)가 그 형세를 두루 살펴 보고 와서 말한 바를 들어보니 ‘강화 장봉도(長峯島)²⁴⁰가 비록 바다 가운데에 있는 수십 리의 땅이라도 조류를 타고 왕래하는 수로가 편리하고 합당하며 네 산이 둘러서 있고 지세가 편평하며 물과 풀이 풍족하기 때문에 백성이 살면서 농사짓고 밥먹고 살만한 곳 또한 많다.’고 합니다. 마적(馬籍)을 취해 살펴보니 본도에서 방목했던 말이 87필에 불과했는데 앞전에 짐마할 때 모조리 차출하여 금군에

239) 조한영(1608~1670): 본관 창녕(昌寧). 자 수이(守而). 호 회곡(晦谷). 시호 문충(文忠). 김장생(金長生)의 문인. 1637년(인조 15) 정시문과에 장원급제. 1641년 척화파인 김상헌(金尙憲) 등과 함께 심양에 끌려가 고문을 받음.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고, 문장이 뛰어나 인조, 효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함. 여주 고산서원(孤山書院)에 배향. 문집은 《회곡집》.

240) 장봉도(長峯島):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에 있는 섬. 조선시대에는 교동현에 속했으며, 위치는 강화도 최남단 마니산에서 서남쪽으로 보이는 섬. 원문 長峯島의 ‘峯’자가 이후 기록에는 모두 ‘峰’자로 되어 있음.

분급했으며, 수목이 울창한 곳에 풀이 마르기를 기다려 가시나무와 넝쿨을 없애고 규례에 의거 불을 놓아 독충이 서식하는 곳을 없애 방목하기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제주(濟州)의 암말을 이 섬에 옮겨 방목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고 이미 방목하기에 합당할 만한 곳을 얻었으니 암말의 수는 반드시 전에 결정한대로 할 것 없고 수십 필에 한하여 비록 50~60필에 이르러도 불가하다 할 정도는 아니니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제주목(濟州牧)에서 금번 겨울 본주[제주] 점마시 몸집이 크고 재품이 우수한 종을 세심히 골라 특별히 옮겨 방목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뉘 대로 하라.”라고 하였으며, “무릇 물건이 많으면 정밀하지 못하다. 50~60필은 지나치게 많은 듯하니 그 수를 줄이고 잘 골라서 보내도록 하라. 목장에 방목한 후에는 본 관아에서 각별히 유의하고 실제 효험이 있도록 함이 가하다. 또 숫말은 어느 곳의 말을 쓰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조한영, 이성휘, 남양, 인천, 강화, 장봉도, 제주.

❖ 順治 十四年 丁酉 七月 十三日 甲寅

- 曹漢英,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傳曰, 凡物多則不精, 五六十匹, 似爲過多, 減其數而極擇出送. 放牧後, 本寺各別留意爲之, 俾有實效, 可也. 且雄馬則何處馬用之乎事, 傳教矣. 當初臣時昉, 曾於榻前, 以濟州牧場中雌馬數十匹擇取, 移放畿內牧場, 別樣孳息之意, 啓達, 而及其尋得可放之處, 則本道形勢便好, 水草豐足云, 故敢以五六十匹啓稟矣. 今承下教, 有步才良種, 擇得亦難, 依前啓請, 體大有才雌馬二十匹, 令濟州牧使, 勿論國屯與私屯, 十分極擇, 待草衰卽爲捉出, 三冬別養, 期於肥澤, 趁開春出送, 而雄馬則求諸濟州, 難得其體大良種, 閭家馬禾多有才體大, 可合取種者, 限四五匹擇取, 而或自本寺給價買得. 或以禾少之馬, 從願相換, 以爲移放之地, 何如? 傳曰, 允.

❖ 효종 8년(1657) 정유년 7월 13일(갑인)

□ 숫말의 마련 방도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조한영(曹漢英)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교 내리기를, ‘무릇 물건이 많으면 정밀하지 못하다. 50~60필은 지나치게 많은 듯하니 그 수를 줄이고 잘 골라서 보내도록 하라. 목장에 방목한 후에는 본 관아에서 각별히 유의하고 실제 효험이 있도록 함이 가하다. 또 숫말은 어느 곳의 말을 쓰려고 하는가?’라는 전교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신 이시방(李時昉)²⁴¹이 일찍이 어전에서 제주(濟州) 목장에서 암말 수십 필을 골라 취하여 경기의 목장으로 옮겨 방목하고 특별히 번식시키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는데, 방목할 만한 곳을 찾아 얻고 보니 본도의 형세가 편리하고 좋으며 물과 풀이 풍족하다고 하여 그 때문에 감히 50~60필을 아뢰었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드는데 잘 견고 우수한 품종을 골라 얻기가 또한 어려워 전에 아뢰 대로 몸체가 크고 우수한 암말 20필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명을 내려 국둔(國屯)이나 사둔(私屯)을 막론하여 최대한 잘 골라 초지가 마르면 곧 차출하여 겨울 동안 특별히 양육하고 몸집이 크고 윤택해 지기를 기다려 봄이 되면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숫말을 제주에서 구하는데 몸집이 크고 우수한 품종을 얻기 어려우면 일반 민가의 말 중에 나이 있고 재

241) 이시방(1594~1660): 본관 연안(延安). 자 계명(季明). 호 서봉(西峯). 시호 충정(忠靖). 부친은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이며, 영의정 이시백(李時白)의 아우. 1623년 인조반정 때 2등공신,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 때 토벌에 참가하였다. 1640년 제주목사로 부임, 이듬해 제주에 안치되어 있던 광해군이 죽자 손수 염습함. 저서 《서봉일기》.

주가 좋으며 몸집이 커서 종마로 취할 만한 것을 4~5필에 한하여 가려 뽑아 혹은 본 관아에서 가격을 지불하고 사오거나 혹은 나이 어린 말로 원하는 대로 서로 교환하여 이로써 옮겨 방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조한영, 이시방, 제주, 경기.

❖ 順治 十四年 丁酉 八月 十一日 辛巳

- 司僕寺啓曰, 各官分養馬, 隨其上來, 卽爲分給禁軍及都監馬隊禦營別抄事, 既有傳教, 故隨其所捧, 左右禁軍處, 爲先從願分給, 而以其十分擇取之故, 所給者只三十八匹, 訓局馬隊二十四匹, 禦營別抄十匹, 合七十二匹. 從其自願, 已爲擇給, 而其餘二百八十八匹, 則放牧於箭串, 姑待前頭濟州歲貢馬上來, 將爲一體分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已上司僕騰錄】

❖ 효종 8년(1657) 정유년 8월 11일(신사)

□ 제주에서 세공마가 올라온 후 각 관청에 분양마를 정하자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각 관아에 분양할 말은 올라오는 데 따라 곧 금군, 훈련도감 마대(馬隊), 어영별초에 분급할 일은 이미 전교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봉입하는 데 따라 좌우금군에 먼저 분급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골라 취하도록 하여 지급할 것이 38필이요, 훈련도감 마대에 24필, 어영별초에 10필 등 합계 72필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데 따라 이미 골라 지급하면 나머지 288필은 전곶(箭串)²⁴²에 방목하여, 앞전에 제주(濟州) 세공마가 올라오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장차 일체 분양하고자 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금군, 훈련도감, 어영별초, 전곶, 제주, 세공마.

242) 전곶(箭串): 뚝섬, 살곶이. 지금의 광진구 자양동과 성동구 성수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 임금이 무예를 검열하던 곳으로 이때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독기(纛旗)를 세운 곳이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됨.

❖ 順治 十四年 丁酉 八月 二十三日 癸巳

- 司僕寺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及凶咎馬六十一匹. 共一百二十九匹內, 一匹則本州載船時病傷, 不爲出送, 其餘一百二十八匹, 已到本寺. 禾毛色, 別單以入之意, 敢啓. 傳曰, 允. 【已上司僕騰錄】

❖ 효종 8년(1657) 정유년 8월 23일(계사)

□ 제주 진상마의 내역에 대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보내온 처음 운송분은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三名日)²⁴³ 진상마 60필 및 흉구마(凶咎馬) 61필입니다. 합계 129필 중 1필은 제주에서 배에 실을 때 다쳐 보내지 못했고 그 나머지 128필이 이미 본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진상마, 흉구마.

243) 삼명일(三名日): 임금탄신일, 정월초하루, 동지의 세 명절.

❖ 順治 十四年 丁酉 八月 二十五日 乙未

- 司僕寺啓曰, 濟州年例馬八匹, 三名日馬六十匹, 及凶咎馬六十匹, 先運上來, 按籍點閱, 則非但少無才品, 駑劣體小, 未有甚於今年. 所謂年例馬八匹, 自前以八駿爲名, 本州十分精擇, 善爲護養, 待其肥澤上送, 而如是無形, 其爲不曾留意於馬政, 據此可知. 且其越海, 必趁夏初, 七月旬前, 例爲上納, 而今年則秋節已深之後, 始爲上來, 當此草枯之時, 放牧箭串, 亦爲難便. 濟州牧使具義俊, 從重推考. 凶咎馬則不係於國用, 而本寺一日留養, 亦且有弊, 爲先分給於納帖願受人處, 何如? 傳曰, 依啓. 【已上司僕騰錄】

❖ 효종 8년(1657) 정유년 8월 25일(을미)

□ 제주마를 점열한 후 구의준(具義俊)을 추고하길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연레마 8필, 삼명일마 60필, 흥구마 60필의 처음 운송분으로 올라 온 것을 마적(馬籍)을 살펴 점검해 본 즉 재품이 없을 뿐 아니라 둔하고 약하며 체구도 작아 금년보다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연레마 8필은 예부터 팔준(八駿)²⁴⁴이라 이름 붙여 본주에서 최대한 정밀히 가려서 잘 길러 기름지고 윤기나기를 기다려 올려 보냈는데, 이처럼 보잘 것 없다는 것은 일찍이 마정(馬政)에 뜻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에 의거해 알 만 합니다. 또 바다를 건널 때는 반드시 초여름을 틈타 7월 10일 이전에 상납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올해는 가을이 이미 깊어진 뒤에 비로소 올라 왔으니 풀이 말라죽은 때가 되어버려 전곳(箭串, 뚝섬)에 방목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구의준(具義俊)을 엄중히 추고해야 합니다. 흥구마는 국용에 관계되지 않으니 본 관아에서 하루 길러보고 또한 폐단이 있으면 납첩하여 받기를 원한 사람에게 먼저 분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전곳, 구의준.

244) 팔준(八駿): 팔준마(八駿馬). 중국 주(周)나라 때 목왕(穆王)이 사랑하던 여덟 마리의 준마. 화류(華驪), 녹이(綠耳), 적기(赤驥), 백의(白義), 유륜(踰輪), 거황(渠黃), 도려(盜驪), 산자(山子)를 이른다.

❖ 順治 十四年 丁酉 八月 二十七日 丁酉

- 司僕寺啓曰, 濟州牧使具義俊遞任, 進上馬三匹上來, 依前禾毛色, 別單以入, 而內廐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已上司僕膳錄】

❖ 효종 8년(1657) 정유년 8월 27일(정유)

□ 구의준(具義俊)의 체임과 진상마를 내구에서 기르기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구의준(具義俊)이 체임하여 진상마 3필이 올라오니 전례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올려 내구에 두고 기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목사, 구의준, 진상마, 내구.

❖ 順治 十四年 丁酉 八月 二十八日 戊戌

- 司僕寺啓曰, 濟州後運歲貢馬二百匹上來, 依前禾毛色, 別單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司僕膳錄】

❖ **효종 8년(1657) 정유년 8월 28일(무술).**

제주의 후운(後運) 세공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뒤에 운송한 세공마 2백 필이 올라오니 전례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올립니다. 감히 아뢰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흥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세공마.

❖ 順治 十四年 丁酉 九月 五日 甲辰

- 司僕寺啓曰, 兩南及咸鏡道牧場, 捉出馬三百五十匹, 則分養於該道各邑事, 三道點馬下去時, 已爲分付以送矣. 上年分養馬, 禁軍都監武士等擇給後, 箭串放牧者, 及今番濟州馬中, 自四禾至八禾筋骨稍壯者, 三禾之有將來者, 先擇二百四十五匹, 分養於京畿忠清黃海江原等四道, 而御營武士, 又有願受者, 從願擇給. 其餘則納帖願受人處, 依前分給, 何如? 傳曰, 知道. 【司僕騰錄】

❖ 효종 8년(1657) 정유년 9월 5일(갑진)

□ 제주마의 분양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영남과 호남 및 함경도의 목장에서 차출한 말 350필을 해당 도의 각 읍에 분양하는 일은 삼도 점마가 내려 갈 때 이미 분부한 대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분양한 말은 금군과 훈련도감 무사 등에게 가려 지급한 뒤 전곶(箭串, 뚝섬)에 방목한 것과 금번 제주마(濟州馬) 중 4화(禾)부터 8화까지 근골이 조금 건장한 것과 3화 중 장래가 있는 것을 먼저 245필을 골라 경기, 충청, 황해, 강원 등 4도에 분양하고 어영청 무사 또한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바람대로 가려 지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납첩하여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례에 따라 분급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함경도, 금군, 훈련도감, 전곶, 제주, 경기, 충청, 황해, 강원, 어영청.

❖ 順治 十四年 丁酉 九月 十五日 甲寅

○ 以權堦·吳挺緯爲承旨 …… 金之聲爲濟州教授, …… 李時彬爲大靜縣監, …….

❖ 효종 8년(1657) 정유년 9월 15일(갑인)

□ 김지성(金之聲)을 제주교수(濟州教授) 및 이시빈(李時彬)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권우(權堦)와 오정위(吳挺緯)를 승지로 삼고, <중략> 김지성(金之聲)²⁴⁵을 제주교수(濟州教授)로 삼고, <중략> 이시빈(李時彬)²⁴⁶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권우, 오정위, 김지성, 이시빈, 제주교수, 대정현감.

245) 김지성(1610~?): 본관 부안(扶安). 자 대이(大而). 부친은 김연(金沆). 1648년(인조 26) 문과 급제.

246) 이시빈(?~?): 효종 때의 대정현감. 1657년(효종 8) 11월, 이에남(李禮男) 후임으로 대정현에 도입하여 얼마 안 돼 모친상을 만나자 동년 12월에 이임.

❖ 順治 十四年 丁酉 十二月 二日 庚午

- 司僕寺啓曰, 自祖宗朝以來, 御乘馬八匹, 世子坐馬四匹, 備三之內廐, 而御乘則稱以八駿矣. 近年以來, 耽羅公私馬屯, 絕無良種, 其他陸地所產, 尤爲無形, 不得已買得清馬之出來者, 而徒費重價, 終不得良品, 所立之數, 亦僅數三匹. 此無非臣等不職之致, 殊甚惶恐, 反覆思惟, 私買清馬而來者, 大半留置關西, 肥澤之後, 必求重價而放賣, 本寺些少物力, 何能每每辦價買得乎? 平安道熙川地管餉所屬柔院別將, 處於江邊往來之路, 如有價本, 可以取販輕貨, 以此買馬於初來瘦瘠之時, 則其價必廉, 且以所收屯穀, 仍爲留養, 則事甚便當. 此處移屬本寺, 別將亦爲擇送, 備給價本, 存本取利, 以爲買馬養飼之地, 則本寺不過一番捐價, 更無所費, 養飼穀物, 亦無別樣措辦之事, 而管餉則旬管兩西, 設屯甚多, 雖無此一處, 亦無大段損益, 依此爲之, 何如? 傳曰, 更觀前頭之效爲之, 可也. 【太僕謄錄】

❖ 효종 8년(1657) 정유년 12월 2일(경오)

□ 평안도 희천 지역의 유원(柔院)을 사복시로 이속시켜 달라는 게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조종조 이래 어승마 8필, 세자좌마 4필은 내구(內廐)에서 마련하는데 어승마는 팔준마라 불렀습니다. 근년 이래 탐라(耽羅)의 공사 마둔에서 우수한 품종이 없고 기타 육지에서 생산된 것도 더욱 보잘 것 없어 부득이 청나라 말을 사올 수밖에 없는데, 헛되이 비싼 값을 주어도 마침내 좋은 품종을 얻지 못하여 확보한 수효가 또한 겨우 3~4필입니다. 이는 신 등이 직무를 다하지 못한 바이니 매우 황공합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사적으로 청나라 말을 사오는 것은 태반을 관서(關西)에 유치하여 살찌고 윤택한 후에 반드시 비싼 값으로 되팔면 본 관아의 매우 적은 물력에 어찌 능히 번번이 가격을 책정하여 사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안도 희천(熙川) 지경 군량 소속 유원(柔院) 별장을 강변 왕래하는 길에 두어 원가로 특산물을 취하여 이로써 처음에 수척할 때 온 말을 사면, 곧 값이 반드시 헐값이며 또 둔곡을 거두어 그로써 기른다면 일이 매우 편리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이곳을 본 관아에 이속하여 별장 또한 가려 보내 원가를 지급하고 이로써 이자를 취하여 말을 사고 기르는 지역으로 삼은 즉 본 관아는 불과 한 번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는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기르기 위한 곡물도 또한 별도의 조치하는 일 없이 군량은 양서(兩西)²⁴⁷⁾에 맡기고 둔전을

247) 양서(兩西): 황해도와 평안도.

개설한 곳이 매우 많아 비록 이 한 곳이 없더라도 또한 크게 손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전의 효과를 다시 살펴보고 하는 것이 가하겠다.”라고 하였다. 【태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내구, 탐라, 평안도, 희천, 유원.

❖ 順治 十四年 丁酉 十二月 四日 壬申

○ 星州牧使李斗陽 …… 大靜縣監李尙稷, …….

❖ 효종 8년(1657) 정유년 12월 4일(임신).

□ 이상직(李尙稷)을 대정현감에 제수함

○ 성주목사 이두양(李斗陽),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상직(李尙稷)²⁴⁸.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성주목사, 대정현감, 이두양, 이상직.

248) 이상직(1616~?): 본관 전주(全州). 자 호성(好聖). 부친은 이정양(李廷楊). 1644년(인조 22) 무과 급제. 1658년(효종 9) 2월, 이시빈(李時彬)의 후임으로 대정현에 도입하고 1660년(현종 1) 6월에 이임.

❖ 順治 十四年 丁酉 十二月 二十一日 己丑

○ 有政. 吏批, 長陵參奉李海寬 …… 濟州牧使邊炭 …….

❖ 효종 8년(1657) 정유년 12월 21일(기축)

□ 변급(邊炭)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²⁴⁹에, 장릉참봉 이해관(李海寬),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변급(邊炭)²⁵⁰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장릉참봉, 제주목사, 이해관, 변급.

249)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250) 변급(?~?): 인조 때 제주관관 재임(1642.10.~1645.3.). 1654년(효종 5) 나선정벌(羅禪征伐) 때 함경도병마우후로 있다가 조총군 100여 명을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 청군과 합류, 흑룡강에 이르러 러시아군을 맞아 큰 전과를 올리고 개선했. 1958년(효종 8) 12월 구의준의 뒤를 이어 제주목사로 임용되었으나 사헌부의 반발로 도입하지 못하고 이피(李檉)가 대신 임용됨.

1658年



❖ 順治十五年 戊戌 二月 一日 戊辰

- 司僕寺啓曰, 內外寺馬匹致斃者, 前後相繼, 而外寺尤甚焉. 外寺騎卜馬致斃者, 姑置不論, 而駕轎馬一匹, 曾無一番言其病狀矣, 致斃之後, 遽邇來告, 濟州雌馬一匹, 亦爲病死, 養理馬等, 常時專不看養, 病後一不顧見, 據此可知, 其爲事狀, 殊極痛駭. 色官固難免其罪, 而遞任之後, 未及差出, 數日假代之官, 雖不足責, 專授養理馬等, 不可不治. 馬醫司僕閔有信及當該養理馬等, 令攸司從重治罪. 駕轎馬, 則分徵價本, 斯速代立, 以爲日後徵[懲]戢之地, 何如? 傳曰, 允. 【司僕寺牒錄】

❖ 孝宗 9年(1658) 무술년 2월 1일(무진)

□ 내, 외시마의 치사로 관원의 치죄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내외시(內外寺)²⁵¹⁾의 마필 죽은 것이 전후로 서로 이어지고 외시가 더욱 심합니다. 외시의 기복마(騎卜馬)²⁵²⁾로 죽은 것은 잠시 논하지 않더라도, 가교마(駕轎馬)²⁵³⁾ 1필은 일찍이 한 번도 그 병상에 대해 말이 없다가 죽은 후에 급히 와서 고했고 제주(濟州)의 암말 1필은 또한 병으로 죽었으니 양리마(養理馬)²⁵⁴⁾ 등이 항상 잘 살피 기르지도 않고 병이 든 후에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음이 이에 알 만하고 그 일의 형세가 지극히 이상하고 놀랍습니다. 담당 관원들은 참으로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체임한 후 차출하지 말고, 수일 동안 임시로 맡은 관원이 비록 책임이 부족해도 오로지 양리마 등에게 주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의사복(馬醫司僕)²⁵⁵⁾ 민유신(閔有信)과 당해 양리마 등은 유사에 명을 내려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가교마는 원가로 나누어 징수하여 빨리 대신 세우고 뒷날에 징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가교마, 제주, 양리마, 마의사복, 민유신.

251) 내외시(內外寺): 사복시 중 대궐 안의 마굿간 관리 등을 맡은 곳을 내사복(內司僕), 내시(內寺), 내구(內廄)라고 하였으며, 사복시를 외시(外寺)라 함.

252) 기복마(騎卜馬): 타는 말과 짐 싣는 말.

253) 가교마(駕轎馬): 임금에 타던 가교를 끌던 말.

254) 양리마(養理馬): 말을 먹여 키우던 일을 맡아 보던 사복시 관원.

255) 마의사복(馬醫司僕): 사복시에서 말의 병을 치료하던 수의사로 정7품의 잡직.

❖ 順治十五年 戊戌 二月 二日 己巳

- 府啓, …… 濟州爲任之重, 非如尋常州牧之比, 自前必以文武中, 清簡者擇遣, 意非偶然. 新除授牧使邊岌, 本以愚濫之人, 曾爲本州判官, 多有不謹之事, 至今言者未已, 豈可以此人, 復授此地重任乎? 濟州牧使邊岌, 請命遞差, 其代, 極擇差送. 答曰, 不允.

❖ 효종 9년(1658) 무술년 2월 2일(기사)

제주목사 변급(邊岌)의 경질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략〉 제주(濟州)는 임무가 막중한 곳이어서 일반의 수령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문무관리 중에 청렴결백한 자를 골라 파견한 것이 무릇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 제수된 목사 변급(邊岌)은 본래 어리석고 분수에 넘치는 사람으로 일찍이 본주[제주] 판관으로 있을 때²⁵⁶⁾ 성실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말하는 자가 그치지 않으니 어찌 이 사람을 다시 제주의 중임을 제수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주목사(濟州牧使) 변급을 교체하고, 그 후임을 잘 가려서 보내도록 명을 내리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사헌부, 제주목사, 변급.

256) 변급의 제주판관 재임기간은 1642년(인조 20) 10월 도입, 1645년 3월 이임.

❖ 順治 十五年 戊戌 二月 三日 庚午

○ 府啓, 濟州牧使邊炭, 請命遞差, 其代, 極擇差送. 【措語見上】 答曰, 依啓.

❖ 효종 9년(1658) 무술년 2월 3일(경오)

□ 제주목사 변급(邊炭)을 경질하고 대임자를 보내도록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변급(邊炭)을 교체하고, 그 후임을 잘 가려서 보내도록 명을 내리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뒤섞인 말로 앞에서 보임】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사헌부, 제주목사, 변급.

❖ 順治十五年 戊戌 二月 四日 辛未

○ 吏批, 以李尙達爲靑山縣監, …… 李檜爲濟州牧使, …… 【以上吏曹政事】

❖ 효종 9년(1658) 무술년 2월 4일(신미)

□ 이괴(李檜)를 제주목사로 삼음

○ 이비(吏批)²⁵⁷⁾에, 이상달(李尙達)을 청산현감으로 삼고, 〈중략〉 이괴(李檜)²⁵⁸⁾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이상은 이조정사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이상달, 청산현감, 이괴, 제주목사.

257)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258) 이괴(1607~1666): 본관 연안(延安). 자 자방(子方). 1631년(인조 9) 별시문과 급제. 제주목사 재임(1658.4.~1660.5.) 중 산마(山馬)감목관 제도를 설치. 김만일(金萬鎰)의 아들 김대길(金大吉)이 말 208두를 조정에 헌납하자 그에게 감목관 벼슬을 주고 자손에게 세습하게 함. 1660년(현종 1) 명도암(明道庵) 김진용(金晉鎔)의 제안에 따라 장수당(藏修堂)을 건립. 원문 ‘李檜(이회)’는 ‘李檜(이괴)’의 오기임.

❖ 順治十五年 戊戌 二月 五日 壬申

- 李廷夔, 以宣惠廳言啓曰, 以全南道各樣價米磨鍊別單, 傳曰, 逐年應減米, 何以應減耶? 問啓事, 傳教矣. 今此餘米二萬二千八百石零以下二十四條價米, 湖西則計減其價於一年餘米八千石之內, 而其中監兵水營, 藥材紙地旗幟使命行次沙格伺候, 初則湖西不爲給價, 新舊官迎送刷馬, 則守令遞易無常, 各樣旗幟帳幕, 則十年一次, 到界進上, 牧場騎馬軍, 自有當次之年, 故湖西不爲逐年計減價米, 而至於濟州馬牽軍, 以煙戶次次調用, 亦是湖西之規, 載運沙格, 湖西所無, 而本道成冊中, 以海邑輪回之役開錄, 難以定式, 故不爲磨鍊, 於逐年計減價米之中, 而其他春秋習操時, 犒饋等十四種價米, 則應爲逐年給價, 故以逐年應減米, 書啓矣, 原別單還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孝宗 9年(1658) 무술년 2월 5일(임신)

□ 전남도 각종 가미(價米)의 마런 별단에 관한 선혜청의 계

- 이정기(李廷夔)²⁵⁹가 선혜청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남도 각종 가미(價米)²⁶⁰의 마런 별단(別單)²⁶¹에 대해 전하기를, ‘해마다 감면하는 쌀에 응하여 어떻게 감면하는가?’하고 그 까닭을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 나머지 쌀 2만2천800석령 이하 24조 가미입니다. 호서는 1년여에 쌀 8천석 안으로 그 가미를 계산하여 삭감하는데 그 중에 감영, 병영, 수영의 약재, 종이, 기치(旗幟)²⁶², 사명행차, 사격(沙格)²⁶³, 척후에 대해 처음은 호서에서 값을 치를 수 없고, 신구 관리를 영접하고 환송하는 관아의 말은 곧 수령 교체가 일정치가 않고, 각종 기치, 장막은 곧 10년에 한 차례 임지에 도착해서 진상하고, 목장 기마군은 예부터 순번적으로 돌아오는 해가 있기 때문에 호서는 해마다 가미를 계산하여 감면하지 않습니다. 제주마(濟州馬)의 견군(牽軍)에 대해서는 연호(煙戶)를 차차 임명하니 또한 이 호서의 규례인데, 조세 운송의 사격은 호서에 없는 바 본도의 (조세) 정책 중

259) 이정기(1612~1671): 본관 한산(韓山). 자 일경(一卿). 호 귀천(歸川). 1648년(인조 26) 정시문과에 장원급제. 성균관대사성, 대사간을 역임함. 저서 《월과만록(月坡漫錄)》, 《순외편(順外編)》.

260) 가미(價米): 생산할 수 없는 공물 대신, 또는 신역을 면하는 대가로 내는 쌀.

261) 별단(別單): 첨부문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본 내용의 문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첨부한 문서.

262) 기치(旗幟): 군중(軍中)에서 쓰던 온갖 깃발.

263) 사격(沙格): 사공과 그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걸꾼.

바다 고을이 돌아가며 부담하는 역(役)도 문서 끝에 개록(開錄)²⁶⁴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가미를 계산하여 삭감하는 가운데 기타 봄, 가을로 습조(習操)²⁶⁵할 때 호궤(稿饋)²⁶⁶ 등 14종의 가미는 곧 해마다 값을 치러 옹하기 때문에 해마다 감면하는 쌀로 옹하도록 복명서를 아뢰고 원 별단을 다시 들이는 뜻을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이정기, 선혜청, 전남도, 호서, 제주.

264) 개록(開錄): 상급관청에 보내는 문서 끝에 이름이나 의견 따위를 적음.

265) 습조(習操): 군사 훈련 연습.

266) 호궤(稿饋): 군사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는 것.

❖ 順治 十五年 戊戌 二月 十三日 庚辰

- 韓震琦,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忠淸監司李慶億狀啓, 則新除授濟州牧使李禴, 請仍泰安郡守, 揆以事體, 殊甚未便. 李慶億推考, 其狀勿施, 何如? 傳曰, 依啓. 李慶億必不循私, 今姑勿推.

❖ 효종 9년(1658) 무술년 2월 13일(경진)

□ 제주목사로 제수된 이괴(李禴)와 관련, 이경억(李慶億)에 관한 추고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한진기(韓震琦)²⁶⁷)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충청감사 이경억(李慶億)²⁶⁸)의 장계를 보니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괴(李禴)를 태안군수로 삼도록 요청하니 일의 본체를 살피건대 매우 편치 못합니다. 이경억을 추고하고 그 요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이경억은 반드시 사사로이 하지 않았을 것이니 지금 추고하지는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비변사, 한진기, 이경억, 이괴, 충청감사, 제주목사, 태안군수.

267) 한진기(1610~1665): 본관 청주(淸州). 자 치규(稚圭). 1649년(효종 1)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동래부사, 수원부사, 안동부사 역임.

268) 이경억(1620~1673): 본관 경주(慶州). 자 석이(錫爾). 호 화곡(華谷). 시호 문익(文翼). 1644년(인조 22) 25세로 정시문과 장원급제. 대사헌, 이조판서, 좌의정 역임. 효종 사후 예송(禮訟)에서는 송시열(宋時烈)의 설을 반대한 윤선도(尹善道)를 공격하여 남인과 대립함. 저서 《화곡유고》.

❖ 順治十五年 戊戌 四月 二十一日 丁亥

- 司僕寺啓曰, 上年六月間, 本寺提調楊前啓稟, 濟州牧場雌馬數十匹擇取, 趁三月上送畿內牧場, 別養孳息之意, 定奪後, 雌馬才品最良者, 十分極擇上送之意, 卽爲行會濟州矣. 雌馬二十匹, 已爲入來, 臣等看品後, 禾毛色才品有無, [及其中一匹, 中路產雛緣由,] 俱錄別單書入, 而可合放牧處, 上年本寺官員發遣, 遍諸島看審, 則江華所屬長峰島, 海路便邇, 水草豐足, 實合放牧孳息, 故曾已啓稟停當矣. 將爲放牧之馬, 外寺衆馬之中, 一日留養, 事極難便, 不可不速爲發送於應放之地, 本寺官員, 數日內下送長峰島, 留放馬八十餘匹, 依前定奪, 使之移放於水原洪原串, 此雌馬, 仍爲放牧於其處把夫, 雌馬四匹, 則分養牧場馬中, 擇取體大者, 一時下送放牧, 何如? 傳曰, 允. 【司僕寺騰錄】

❖ 효종 9년(1658) 무술년 4월 21일(정해)

□ 제주에서 올려 보낸 암말을 강화 장봉도에 방목하도록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6월 사이에 본 관아 제조가 어전에 품계하기를 제주(濟州) 목장의 암말 수십 필을 가려 취해 3월을 틈타 경기 안의 목장으로 올려 보내고 별도로 번식할 뜻을 결정한 후 암말의 재품 중 가장 우량한 것을 십분 엄선하여 올려 보내라는 뜻을 곧 제주에 시행토록 알렸습니다. 암말 20필이 이미 들어와 신 등이 재품을 살펴본 후 나이, 털색, 재품의 유무를 [그 중 1필은 도중에 태어난 새끼임.] 모두 기록한 별단을 책으로 들였습니다. 방목하기에 합당한 곳은 지난해 본 관아의 관원을 파견하여 여러 섬을 두루 살펴본 즉 강화 소속의 장봉도(長峰島)가 해로도 편리하고 물과 풀도 풍족하여 실로 방목, 번식에 합당하기에 일찍이 이미 타당하고 아뢰어 올렸습니다. 청컨대 방목하는 말은 외시의 여러 말 중에서 삼고 하루 두고 길러 보아 일이 편리하지 못하면 속히 방목하기 합당한 곳으로 발송하지 않으면 안 되어 본 관아의 관원을 수일 내 장봉도로 내려 보내 방목하던 말 80여 필을 전에 결정하신 대로 수원(水原) 홍원곶(洪原串)²⁶⁹으로 옮겨 방목하게 하고, 이 암말들을 그 곳 파부(把夫)에 방목하여, 암말 4필은 곧 분양한 목장마 중에서 몸집이 큰 것을 골라 취하여 일시에 내려 보

269) 홍원곶(洪源串): 《신증동국여지승람》(권9, 경기 수원도호부 산천)에 의하면 “용성현(龍城縣)에 있는데 수원부 남쪽으로 55리이다. 둘레가 75리이며 목장이 있다.”고 함. 지금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일대임.

내 방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강화, 장봉도, 수원, 흥원곳.

❖ 順治 十五年 戊戌 四月 二十八日 甲午

- 司僕寺 …… 又啓曰, 濟州上送雌馬二十匹, 江華所屬長峯島放牧事, 已爲啓稟, 蒙允矣. 本寺官員, 今當下送, 長峯島曾前留牧馬移放後, 雌馬放牧等事, 當爲看檢, 次第舉行, 主簿姜項及所帶書吏理馬等, 竝依前例給馬, 急速發送, 使之爲先提出前馬, 空棄場內雌馬, 則差後數日, 別定養馬一人, 領護以行, 而牽馬及所喂草料整待之意, 知委京畿, 何如? 傳曰, 允. 【司僕寺牒錄】

❖ 효종 9년(1658) 무술년 4월 28일(갑오)

□ 장봉도로 내려 보내는 강항(姜項) 등에게 급마하는 문제에 대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암말 20필을 강화 소속 장봉도에 방목하는 일은 이미 품의를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본 관아의 관원을 지금 내려 보내는데 장봉도에 일찍이 전에 기르던 말들을 옮긴 후에 암말을 방목하는 등의 일은 마땅히 잘 살펴서 차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주부 강항(姜項) 및 담당 서리와 양리마 등은 아울러 전례대로 말을 지급하고 빨리 보내어 그들에게 먼저 예전의 말을 차출하게 하고 비어 있는 마장 안의 암말들은 수일 뒤에 양리마 1인을 별도로 정해 이끌어 가게하고 견마 및 풀을 먹이는 비용 등은 기다리라는 뜻을 경기에 명령을 내려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강화, 장봉도, 강항, 경기.

❖ 順治 十五年 戊戌 六月 十六日 壬午

- …… 院啓, …… 我國邊境, 北路最遠, 土瘠民貧, 王化未霑, 祖宗朝遣重臣鎮撫者, 意亦有在. 近來廊廟綱繆之謨, 不及於此, 加以守令貪虐, 邊將侵漁, 民不堪命, 流散殆盡, 嶺東·嶺西·嶺南初境山峽之間, 火耕立作者, 皆是北民之逃避者. 至於六鎮最深之處, 則人煙絕無, 千里將空, 脫有事變, 無一可恃, 北來士夫, 有口皆言, 此誠朝家之大可憂者. 請令廟堂, 速講安集固圉之策, 或遣近侍, 宣布朝廷德意, 糾察守令臧否, 審視關防可倚之勢. 六鎮之距京城, 道里絕遠, 文·武科初試入格之人, 夫馬糧資, 末由自辦, 每於會試設行之日, 不得來赴云. 其於國家計貢興造之道, 誠有所欠. 請命一如濟州子弟縣食赴舉付祿留邸之規, 俾無聖化不均之弊. 計民獻數, 王者之大政, 近來我國立作之弊, 言之久矣. 況聞數年以來, 峽中立作之徒, 莫不持弓劔挾烏銃, 此不可不謂之亂民, 安知國家可憂之端, 不在於此, 而朝廷諉之於無可奈何, 不思變通之策, 守令且利其火粟私用之稅, 厭聞禁斷之令, 臣於此不勝痛慨. 請令廟堂斯速講議, 或令道臣主管其事, 嚴飭列邑, 隨其新入, 輒籍其數, 以爲痛革痼弊, 還集逃民之地. …… 答曰, …… 一如濟州子弟之規, 亦令廟堂處之.

❖ 孝宗 9年(1658) 무술년 6월 16일(임오)

□ 제주자제에 관한 사간원의 계

- <전략>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전략> 우리나라의 변경은 북로가 가장 멀어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왕의 교화가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조종조에서 중신을 보내 위무하는 것도 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래 낭묘(廊廟)²⁷⁰에서 미리 준비한 계책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수령의 탐학과 변장의 침탈이 더해져 백성들이 목숨을 보전치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며 거의 다 흩어졌습니다. 영동, 영서, 영남 쪽 경계의 산골짜기 사이에 화전민은 모두 이 북로 사람들이 도피한 것입니다. 6진 가장 깊은 곳에 이르면 인적이 거의 끊겨 천리가 거의 비었고, 만일 사변이 일어나면 의지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어서 북에서 온 사대부들이 한결 같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조정의 큰 근심거리라고 합니다. 청컨대 묘당(의정부)에 명령을 내려 속히 편안히 거쳐하며 방어의 대책을 강구케 하고, 혹은 근시를 보내 조정의 덕화를 선포하고, 수령의 부패 여부를 규찰하고, 관방의 의지할

270) 낭묘(廊廟): 조정의 정사를 논의하는 건물을 뜻함. 조선시대는 의정부(議政府)를 가리킴. 묘당(廟堂).

만한 형세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6진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문무과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말먹이를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회시가 열리는 날에 와서 응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가 인재를 선발하고 널리 구하는 도를 진실로 빠뜨린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자제(濟州子弟)²⁷¹⁾들에게 고을에서 비용을 대서 과거에 응시하고 녹봉을 주어 머물게 하는 규례와 똑같이 하도록 명령 내려 임금의 교화가 고르지 못한 폐단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호적을 헤아리는 것은 왕자의 큰 정사인데, 근래에 우리나라의 호구를 정하는 폐단을 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물며 듣건대 수년 이래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무리들은 활과 검을 지니거나 조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이는 난민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어서 국가의 우환이 될 단서가 여기에 있지 않다고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핑계 대며 변통하는 대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수령 또한 화전의 곡식을 사사로이 쓰는 조세라 하여 이익을 취하여 금지 명령 알리는 것을 막고 있으니 신은 이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의정부에 속히 의논을 강구하도록 하고, 혹은 관찰사에게 그 일을 주관할 것을 명령 내려 여러 읍에 엄하게 훈계하여 새로 들어온 인구수에 따라 항상 호적을 정리하여 고질적 폐단을 개혁하고 도망한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곳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전략> 제주자제의 규례와 같이 하고 또한 의정부에 명령을 내려 이를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영동, 영서, 영남, 6진, 제주자제.

271) 제주자제(濟州子弟): 조선시대 제주 출신의 하급무관을 일컫는 말. 제주목사가 제주, 정의, 대정 3읍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관직에 적당한 자를 골라 관찰사에게 상신하면, 관찰사는 다시 이것을 병조에 보고하여 체아직(遞兒職)으로 임명되었다. 정원은 30명, 도목은 2회(1월, 7월) 실시하고 재직 만기 450일이 지나면 품계를 올림.

❖ 順治 十五年 戊戌 七月 二十七日 壬戌

- 司僕寺啓曰, 諸道牧場點馬, 例爲間二年舉行, 而忠洪黃海兩道, 則不爲點馬, 今已六七年, 京畿則丙申年, 只行於江華·仁川, 而南陽監牧官所屬六處, 未行亦至六年. 非但累年孳息故失之數, 無從憑考, 必須趁冬前捉出可用之馬, 分養於各邑, 以備翌年之用. 京畿點馬, 當以本寺之官, 依例發送, 忠洪黃海兩道點馬別監, 令該曹極擇差出後, 應行事目磨鍊, 啓下施行宜當. 且平安道宣川身彌島牧場, 曾於己丑年, 始爲復設, 擇送濟州好品雌馬四十九匹雄馬九匹放牧矣. 概以其後監牧官所報計之, 孳息之數今至二百九十六匹, 亦宜差送京官, 而本道事勢, 似與他道有異, 姑令道臣, 別定剛明差使員, 與監牧官眼同照點, 其中有才品者, 定數捉出, 分養道內, 明春上送之意, 詳細知委, 何如? 傳曰, 允. 【司僕寺臚錄】

❖ 孝宗 9年(1658) 무술년 7월 27일(임술)

□ 제도 목장의 점마를 위한 여러 문제 마련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의 목장에 대한 점마는 규례가 2년 사이로 거행하는 것입니다만 충흥, 황해 두 도는 점마를 하지 않은 지 지금 이미 6~7년이 되었으며, 경기는 병신년(1656, 효종 7)에 강화, 인천은 시행하였습니다만 남양 감목관 소속의 여섯 곳은 시행 안한 지 또한 6년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해 동안 번식과 잃은 수를 상고할 수 없어서 반드시 초겨울 이전에 쓸 만한 말을 차출하여 각 읍에 분양해서 내년의 소용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경기의 점마는 의당 본 관아의 관원을 예대로 보내고, 충흥, 황해의 두 도의 점마별감은 해당 부서에 명령 내려 엄선하여 차출한 뒤 해야 할 사목을 마련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고 시행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평안도 선천(宣川)의 신미도(身彌島)²⁷²⁾ 목장은 일찍이 기축년(1649, 인조 27)에 비로소 다시 세워 제주(濟州)의 좋은 품종의 암말 40필과 숫말 9필을 가려 보냈습니다. 그 후 감목관이 헤아려 보고한 대략은 번식한 수가 지금 296필에 이르러 이 또한 마땅히 서울로 보내야 하나 본도의 형세가 타도에 비해 달라 잠시 관찰사에게 령을 내려 별도로 정한 강직한 차사원을 감목관과 더불어 입회하여 점검하고 그 중에 재품이 있는 것 일정 수량을 차출하여 도내에

272) 신미도(身彌島): 《신증동국여지승람》(권53, 평안도 선천군 산천)에 의하면 “선천군의 남쪽 30리에 있다. 높은 봉우리와 험한 벼랑이 바다 위의 큰 산을 이루고 있으며, 목장이 있다.”고 함.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큰 섬이며, 인조 때 임경업(林慶業)이 이곳에서 장차 나라를 침범할지 모를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하여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기도 함.

분양하고 (나머지는) 다음해 봄에 올려 보낼 뜻을 상세히 명령 내려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충흥, 황해, 경기, 강화, 인천, 남양, 평안도, 선천, 신미도, 제주.

❖ 順治 十五年 戊戌 八月 十日 乙亥

○ 兵批, 以邊國翰爲部將, …… 尹全之爲濟州萬戶 …….

❖ 효종 9년(1658) 무술년 8월 10일(을해)

□ 윤전지(尹全之)를 제주만호(濟州萬戶)에 제수함

○ 병비(兵批)²⁷³⁾에, 변국한(邊國翰)을 부장으로 삼고, 〈중략〉 윤전지(尹全之)²⁷⁴⁾를 제주만호(濟州萬戶)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병조, 변국한, 윤전지, 제주만호.

273) 병비(兵批): 무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병조의 당상인 관서, 참관, 참의, 참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274) 윤전지(1611~?): 1637년(인조 15) 무과 급제. 본관 해평(海平). 인조 때 마병초관, 안주판관을 역임. 부친은 윤간(尹旰)인데, 윤간은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尹斗壽)의 서자로 안주목사를 지냄.

❖ 順治十五年 戊戌 八月 十一日 丙子

○ 金徽, 以司僕寺言啓曰, 長峰島所放濟州雌馬, 既已捉出, 今方繫養, 議定牧場, 不容少緩, 而形勢之便好, 水草之豐足, 雖莫如鎮江一隅之進築, 此則已經廟堂定奪, 有不敢更論. 此外可合之處, 廣加聞見, 反覆思度, 終不得焉. 至於發遣本寺官員, 審察箭【一字缺】地勢, 而亦難着手. 聞江華北一場, 不及於鎮江, 頗勝於長峰, 現存之馬, 厥數不多, 此馬則移放於長峰, 以濟州雌馬及任義男貿來之馬, 同放於北一, 似爲便當, 依此舉行, 何如? 傳曰, 依啓. 北一串所放之馬, 幾匹耶.

❖ 효종 9년(1658) 무술년 8월 11일(병자)

□ 제주의 암말을 강화의 북일장에서 방목하는 문제에 대한 사복시의 계

○ 김휘(金徽)²⁷⁵가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장봉도(長峰島)에 방목한 제주(濟州)의 암말들은 이미 차출하여 지금 매어 기를 목장을 의논하여 정하는데 조금도 느슨함이 없어야 해서 형세의 편리함과 수초의 풍족함이 비록 진강(鎭江)²⁷⁶ 한 모퉁이에 마장을 쌓는 것만 못하고 이는 곧 이미 의정부의 결정을 거쳤기에 감히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합당할 만한 곳을 널리 묻고 들어보고 반복해서 생각해도 마침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 관아의 관원들을 파견하여 전곳(箭串)²⁷⁷【1자가 빠짐】의 지세를 자세히 살펴봐도 또한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듣건대 강화 북일장(北一場)²⁷⁸은 진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봉도 보다는 좀 낮고 현재 있는 말은 그 수가 많지 않아 이 말을 곧 장봉도로 옮겨 방목하고 제주의 암말과 임의남(任義男)²⁷⁹이 사온 말을 함께 북일장에 방목하는 것이 편리하고 마땅한 듯하여 이렇게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뢰대로 하고, 북일곳에 방목하는 말은 몇 필인가?”라고 물었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김휘, 장봉도, 제주, 강화, 북일장, 진강, 임의남.

275) 김휘(1607~1677): 본관 안동(安東). 자 돈미(敦美). 호 사휴정(四休亭), 만은(晩隱). 1642년(인조 20) 문과 급제. 이조정랑, 사헌부집의 등을 역임. 1666년(현종 7) 남인의 탄핵으로 삭직되었으나, 그 뒤 복직되어 대사헌, 이조판서 역임. 그림을 매우 잘 그림.

276) 진강(鎭江):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일대를 말한다. 배후에 진강산(鎭江山, 441m)이 있다.

277) 원문에는 ‘箭’자 뒤에 한 글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이는데(【一字缺】), 문맥상 ‘전곳(箭串)’으로 보임.

278) 북일장(北一場):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일대에 있었던 조선시대 목마장을 말한다. 마니산 서남사면에 해당함.

279) 임의남(?~?): 송계(松溪)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연도기행(燕途紀行)》(상)에 의하면 1656년(효종 7) 인평대군이 청에 다녀올 때 만상군관(灣上軍官)으로 함께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의주(義州) 사람으로 궁마(弓馬)에 능한 무인으로 소개되어 있음.

❖ 順治 十五年 戊戌 八月 十一日 丙子

- 又啓曰, 以本寺江華北一場馬, 移放於長峰, 濟州雌馬, 放牧於北一事啓辭, 傳曰, 依啓, 北一所放之馬幾匹耶事, 命下矣. 以馬籍所付觀之, 則時存壯弱雌雄, 竝一百五十九匹, 而壬辰以後, 不爲驅點, 只憑逐年孳息之報, 而錄此都數, 其間虛實, 亦難的知之意, 敢啓. 傳曰, 允. 【司僕寺牒錄】

❖ 효종 9년(1658) 무술년 8월 11일(병자)

강화의 북일에서 방목하는 말의 수효에 대해 보고하는 사복시의 계

- 또 아뢰기를, “본 관아의 강화 북일장(北一場)의 말을 장봉도(長峰島)로 옮겨 방목하고 제주(濟州)의 암말을 북일장에 방목하는 일로 계사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북일장에 방목하는 말은 몇 필이나 되는가?하고 하명하였습니다. 마적(馬籍)에 올라있는 바를 살펴보니 현재 건장하고 약한 암말, 숫말 아울러 159필인데 임진년(1652, 효종 3) 이후로 점마를 하지 않아 매년 번식하는 보고에 의거하여 이 모든 수를 기록한 것이 그 사이에 허실 또한 알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강화, 북일장, 장봉도, 제주.

❖ 順治十五年 戊戌 八月 二十三日 戊子

- 司僕寺啓曰, 京畿點馬, 則欲以本寺官員差送, 初不別爲差出矣. 近日本寺之官, 無故察任者, 只三員, 各有所掌, 事不閑漫. 且有往來江華檢飭之事, 濟州年例貢馬入來, 亦在不多日之內, 點捧區處, 不可失時, 此時可爲除出一員, 則餘存之官, 將不能周旋. 今者忠清道點馬趙尙周, 因備局啓辭, 不爲發送, 此人旣以治裝, 且其爲人詳明, 以此仍爲移送京畿, 何如? 傳曰, 依允. 【司僕寺臚錄】

❖ 효종 9년(1658) 무술년 8월 23일(무자)

□ 경기점마 제수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경기 점마는 본 관아의 관원을 보내려 하여 처음에는 별도로 차출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본 관아의 관원 중 탈 없이 임무를 맡길 자가 다만 3명인데 각기 담당 업무가 있어서 일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또 강화를 왕래하며 점검하고 바로잡는 일도 있으며, 제주(濟州) 연례공마가 들어온 지 또한 여러 날이 지나서 방목할 곳을 점검하여 봉입시키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어 이때 한 사람이라도 덜어내면 나머지 관원들이 장차 두루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충청도 점마 조상주(趙尙周)가 비변사의 계사 때문에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행장을 차렸고 또 그 사람됨이 자세하고 분명하여 이로써 경기 이송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경기, 강화, 제주, 충청도, 조상주.

❖ 順治 十五年 戊戌 八月 二十八日 癸巳

- 金徽,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馬五十三匹, 來到本寺, 故禾毛色別單, 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在前則貢馬, 必於草長時早秋上來矣. 今年則何以今始上來耶? 本寺察處.

❖ 효종 9년(1658) 무술년 8월 28일(계사)

□ 제주 진상마 공마의 시일이 늦은 데 대해 감찰하라는 전교

- 김휘(金徽)가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먼저 운송분 연례 진상마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흥구마 53필이 본 관아에 들어와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이름 적어 올립니다.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으며, 예전에는 공마가 반드시 풀이 자라날 때인 이른 가을에 올라왔다. 올해는 어찌하여 지금에야 비로소 올라 왔는가? 본 관아에서 살펴보아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김휘, 제주, 진상마, 흥구마.

❖ 順治 十五年 戊戌 九月 日

- 金徽,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後運歲貢馬二百匹內, 二匹病留淳昌, 二匹病留龍潭, 一匹病留沃川, 本寺點捧實數一百九十五匹, 及上年大靜領來色吏闕失追徵馬一匹, 竝爲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효종 9년(1658) 무술년 9월 일

□ 제주 세공마를 별단(別單)으로 올린다는 사복시의 계

- 김휘(金徽)가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뒤에 올라온 세공마 200필 중, 2필은 병으로 순창(淳昌)에 두고, 2필은 병으로 용담(龍潭)에 두고, 1필은 병으로 옥천(沃川)에 두어 본 관아에 봉입되어 점검받은 실수는 195필입니다. 또 지난해 대정(大靜)에서 올라온 색리가 잃어버린 추정마 1필까지 모두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하여 올립니다.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김휘, 제주, 순창, 용담, 옥천, 대정.

❖ 順治 十五年 戊戌 九月 七日 辛丑

- 李廷夔啓曰, 卽見濟州別進上單子, 則大殿封進單子, 不爲着署, 殊無詳察之意, 濟州牧使李禴請推考. 傳曰, 允.

❖ 효종 9년(1658) 무술년 9월 7일(신축)

제주목사 이괴(李禴)의 추고를 청하는 이정기(李廷夔)의 계

- 이정기(李廷夔)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특별한 진상 단자를 곧 보니 대전(大殿)에 봉진하는 단자인데, 서명을 하지 않아 자세히 살핀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괴(李禴)²⁸⁰를 추고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이정기, 제주목사, 이괴.

280) 이괴(李禴): 원문에는 이회(李繪)로 되어 있다. 이괴의 오기임.

❖ 順治十五年 戊戌 十一月 十七日 庚戌

○ 上御熙政堂. 引見, 領議政沈之源, …… 吏曹判書宋時烈, …… 兼春秋李廷機入侍. …… 宋時烈曰, 安東爲府, 卽嶺南之大都護也. 物衆地大, 事務煩劇, 蘇東道曾有成績, 故擬望受點矣. 今聞前爲濟州牧使時, 重得土疾, 數年調治, 今雖少差, 似難治劇云. 改差何如? 上曰, 依爲之. …….

❖ 효종 9년(1658) 무술년 11월 17일(경술)

□ 희정당에서 신하들을 인견하여 소동도(蘇東道) 제주목사시 상황 등을 논의함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²⁸¹⁾에 거동하여 신하들을 불러보았다. 영의정 심지원(沈之源)²⁸²⁾ <중략> 이조판서 송시열(宋時烈)²⁸³⁾ <중략> 겸춘추 이정기(李廷機)²⁸⁴⁾ 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송시열이 말하기를, “안동(安東)은 영남의 대도호부입니다. 나는 물건이 많고 지역 또한 넓으며 사무가 번거롭고 복잡한 곳입니다. 소동도(蘇東道)²⁸⁵⁾가 일찍이 성적이 있어서 천거를 받고 낙점되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예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있을 때 토질을 심하게 얻어 수년간 몸조리하다가 이제 비록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다스리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교체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희정당, 심지원, 송시열, 이정기, 소동도, 안동, 제주목사.

281) 희정당(熙政堂): 보물 제815호. 창덕궁의 내전에 속한 건물이었다가, 조선후기 편전으로 사용함.
282) 심지원(1593~1662): 본관 청송(靑松). 자 원지(源之). 호 만사(晩沙). 1620년(광해군 12)에 정시문과 급제. 1623년 인조반정 이후 관직에 진출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 효종 때 삼정승을 두루 거침. 현종 때 서인의 영수로 송시열(宋時烈)의 뜻을 따르면서도 남인 조정(趙綱)을 적극 구원 하였다. 영천의 송곡서원(松谷書院)에 제향. 저서 《만사고(晩沙稿)》.
283) 송시열(1607~1689): 본관 은진(恩津). 자 영보(英甫). 호 우암(尤菴). 시호 문정(文正). 김장생(金長生)과 그의 아들 김집(金集)의 문인. 27세 때 생원시에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논술하여 장원급제. 서인, 노론의 영수로 1689년(숙종 15) 경종의 세자 책봉에 시기상조론을 펴며 상소하다 제주에 유배되고, 다시 서울로 압송되다 정음에서 사약 받고 죽음. 문묘에 배향. 문집 《송자대전(宋子大全)》.
284) 이정기(1613~1669): 본관 영천(永川). 자 자신(子愼). 호 만옹(漫翁). 장현광(張顯光)의 문인. 1648년(인조 26) 식년문과 급제. 1658년(효종 9) 정랑에 오르고 서흥부사, 충주목사를 지냄.
285) 소동도(1592~1671): 본관 진주(晉州). 자 자유(子由). 호 면와(眠窩). 1635년(인조 13) 증광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의주부윤 역임. 제주목사 역임(1653.10.~1655.9.). 익산지방의 대표적인 명문출신으로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몸소 실천하였으며,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

1659年



❖ 順治 十六年 己亥 一月 十六日 戊申

- 司僕寺啓曰, 大臣·備局堂上引見時, 領中樞府事鄭□所啓, 今年失稔, 濟州尤甚, 島中之民, 雖有馬匹, 無路轉賣, 事極矜憐. 臣方待罪太僕, 知有珍島海南等屯牧, 應有上納之穀. 以此送于本州, 使之換買飢民所賣馬匹, 則雖與白給有間, 而其於救飢之道, 似爲便好矣. 上曰, 依爲之, 而馬匹之價, 從優給之, 可也. 【以上司僕寺臚錄】

❖ 효종 10년(1659) 기해년 1월 16일(무신)

□ 제주 마필을 진도와 해남 등에 환매하는 문제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불러들여 만나실 때 영중추부사 정□(鄭□)²⁸⁶가 아뢴 바 금년은 흉년인데 제주(濟州)가 더욱 심하여 섬 안 백성들이 비록 마필이 있어도 되팔 길이 없어서 형세가 매우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신이 태복시에서 근무하며 진도(珍島), 해남(海南) 등지에 둔목(屯牧)이 있어서 응당 상납할 곡식이 있을 터 이로써 제주에 보내고 굶주린 백성의 마필과 교환하도록 한 즉 비록 서로 거저 주는 경우가 그 사이에 있어도 그것이 굶주림을 구제하는 방도로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마필의 가격은 넉넉한 가격으로 쳐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제주, 진도, 해남.

286) 鄭□: 鄭太和(1602~1673). 《조선왕조실록》 효종 10년 1월 16일 기사에 의하면 영중추부사로 정태화가 언급되고 있다. 정태화는 본관 동래. 자 유춘(囿春). 호 양파(陽坡). 시호 익헌(翼憲), 뒤에 충익(忠翼)으로 바꿈.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5대손. 정유길(鄭惟吉)의 증손. 1628년 별시문과에 급제. 영의정 역임. 현종 묘정 배향. 저서로 《양파유고》, 《양파연기》가 있음.

❖ 順治 十六年 己亥 二月 二十四日 乙酉

○ 李尙眞, 以司饗院官員, 以提調意啓曰, 伏見濟州牧使李禴, 正月初三日報本院之文, 則戊戌年進上柑橘, 自九運至二十運, 去十一月內, 監封載船, 而不得順風, 尙未發船. 封載日久, 慮或有傷, 數回開見, 則每閣四五介, 或致傷, 卽爲改封上送, 而莫重進上, 非徒過節, 前頭得風遲速, 亦不可知, 日氣漸暖, 慮有漸致傷破之弊, 惶恐待罪事, 狀啓云云. 卽捧其先到十一, 【缺數字】二十五十六十九二十等六運三殿進上, 及十一月朔【缺二三字】進上, 則每閣腐朽完合者, 似當一樣, 而或相懸殊, 有不【缺三四字】曉, 而不得已先爲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以上燼餘】

❖ 효종 10년(1659) 기해년 2월 24일(을유)

□ 제주목사 이괴(李禴)의 감귤 진상 지연 사유를 전하는 사옹원제조의 계

○ 이상진(李尙眞)²⁸⁷이 사옹원 관원으로써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삼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괴(李禴)가 정월 초3일 본 관아에 보고한 문서를 보니 무술년(1658, 효종 9)에 진상한 감귤을 9운(運)에서 20운까지 지난 11월 내에 내용을 조사하여 봉해 배에 실었는데 순풍을 만나지 못해 아직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봉하여 배에 실은 지 날이 오래되어 생각해보니 혹 상해 있을까 여러 번 열어서 본 즉 실은 매 각(閣)마다 4~5개는 혹 상하여 곧 뜯은 것을 다시 봉해 올려 보내 막중한 진상품이 절기에 지나쳐 앞으로도 바람에 따라 느낌과 빠름 또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 생각건대 점점 상해 버리는 폐단이 있어서 황공하여 대죄하는 일을 장계로 올린다고 운운 하였습니다. 곧 바쳐서 먼저 도달한 11, 【여러 글자가 빠짐】12, 15, 16, 19, 20운 등 6운은 삼전(三殿)²⁸⁸ 진상품이고, 11월 초하루의 【2~3자가 빠짐】 진상품은 매 각마다 썩고 완전한 것이 한결같은 듯하나 혹은 서로 현격하게 달라 쓸 수 없어서 【3~4자가 빠짐】 부득이 봉입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이상진, 사옹원, 제주목사, 이괴, 감귤 진상.

287) 이상진(1614~1690): 본관 전의(全義). 자 천득(天得). 호 만암(晩庵). 시호 충정(忠貞).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 급제. 효종 때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으로 재임하며 시사(時事)에 직언해 왕의 신임을 얻음. 숙종 때 이조판서, 우의정 역임. 1689년 인현왕후 폐위 문제에 부당함을 간하다가 유배됨. 1695년에는 청백리(清白吏)에 선출됨.

288) 삼전(三殿):王大妃殿,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을 이르는 말.

❖ 順治 十六年 己亥 三月 三日 甲午

- 京畿監司書目, 廣州呈, 以弒主罪人連香等, 令該曹處置事. 濟州牧使書目, 教授河晉善罷黜事.

❖ 효종 10년(1659) 기해년 3월 3일(갑오)

교수 하진선(河晉善)의 파직을 아뢰는 제주목사의 서목

- 경기감사의 서목에 광주(廣州)의 청원서로 주인을 살해한 죄인 연향(連香) 등은 해당 부서에서 처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서목에는 교수 하진선(河晉善)²⁸⁹⁾을 파직하는 일을 아뢴다.

〈제주학연구센터/ 흥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경기, 광주, 연향, 제주목사, 하진선.

289) 하진선(1609~?): 본관 진양(晉陽). 자 정보(貞甫). 부친은 선무랑(宣務郎) 하종해(河宗海). 1642년(인조 20) 문과식년시 급제. 교서관 정자를 거쳐 1649년(인조 27) 성균관 전직에 등용됨.

❖ 順治 十六年 己亥 閏三月 二十八日 戊子

- 大司諫曹漢英, 司諫李慶徽, 獻納閔維重啓曰, 臣等昨將司僕養馬鬻子納馬事, 請罷僉正柳頰, 而伏承聖批, 以諸島場馬遺失之代, 徵以本色, 自是常規, 似非柳頰之峻法爲教. 此緣臣等, 論其曲直, 有欠詳悉, 致勤聖教, 不勝瞿然之至. 臣等謹考大典續錄廐牧條, 各牧場故失, 遺失馬價, 上等十六疋, 中等十二疋, 下等八疋. 又聞司僕流例, 除濟州外, 各場遺失馬, 毋論上中下等, 皆徵價十五疋, 或徵以馬帖而已. 至如責納代馬, 前所未有的, 而自柳頰始, 其心在於夸衒己能, 而其害至於使人父不保子, 此豈非頰之所作俑, 而峻法之罪, 焉得免乎? 臣等論啓主意, 不但以徵馬爲非法, 其所可駭可惡者, 實在於迫人鬻子, 以人馬畜也. 設令徵馬, 在法當然, 苟有人心者, 不忍使至於此, 況有所不然者乎? 此而不罪, 則其爲王政之累, 何異於廐有肥馬, 而野有餓孳者乎? 此事驟聞, 雖若不近, 而藉藉傳說, 不啻目見, 臣等豈敢以疑事強聒至此哉? 請司僕僉正柳頰罷職不敘. 且令本寺, 出與其馬於差馬, 使之還贖其子, 而失馬徵價, 更依舊規處之. 武臣之佐貳西銓, 其選至重, 豈可人人輕授, 有同循例除拜者哉? 兵曹參判柳赫然除授之後, 物議皆以爲不合, 請命遞差. 答曰, 不允. 柳頰事, 謂之過當, 則猶之可也. 謂之衒能, 則似未妥當矣. 今聞大臣之言, 則頗有曲折, 姑先推考. 【缺一字】之可也.

❖ 효종 10년(1659) 기해년 윤3월 28일(무자)

□ 사복시의 양마, 육자의 납마 일로 류정(柳頰) 및 류赫然(柳赫然)의 처벌을 청하는 조한영(曹漢英) 등의 계

- 대사간 조한영(曹漢英), 사간 이경휘(李慶徽)²⁹⁰⁾, 헌납 민유중(閔維重)²⁹¹⁾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무릇 사복시의 양마, 육자의 말을 납부하는 일로 검정 류정(柳頰)²⁹²⁾을 파면토록 청하여, 삼가 전하의 비답을 받들었는데 여러 섬의 목장

290) 이경휘(1617~1669): 본관 경주(慶州). 자 군미(君美). 호 묵호(默好), 춘전거사(春田居士). 시호 익헌(翼憲). 이제현(李齊賢)의 후손, 부친은 형조판서 이시발(李時發). 1644년(인조 22) 정시문과에 급제. 춘추관기사관으로 《인조실록》 편찬사업에 참여함. 경기감사, 이조판서 역임.

291) 민유중(1630~1687): 본관 여흥(驪興). 자 지숙(持叔). 호 둔촌(屯村). 시호 문정(文貞).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부친. 1651년(효종 2) 증광문과 급제. 대사성, 호조판서 역임. 1681년(숙종 7) 국구(國舅)가 되자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에 봉함. 효종 묘정 배향. 경서에 밝았으며, 문집으로 《민문정유집(閔文貞遺集)》 10권 10책 있음.

292) 류정(1609~1687): 본관 전주(全州). 자 공직(公直). 호 오무당(五無堂). 1638년(인조 16) 정시문과 급제. 부안, 순천, 무안 등지의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워 칭송

말을 잃어버린 대가는 미곡으로 징수하여 이를 항상 된 규칙으로 하며 류정의 엄격한 법은 아닌 듯하다고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 등이 그 옳고 그름을 논할 때 상세히 아는데 빠짐이 있을까 임금의 교서에 성실히 다하며 지극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삼가 《대전속록(大典續錄)》²⁹³⁾의 구목(廐牧) 조를 살펴보니 각 목장에서 사고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말이 있을 경우 그 값은 상등 16필, 중등 12필, 하등 8필입니다. 또 사복시의 관행을 듣건대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목장에서 잃어버린 말은 상등, 중등, 하등을 막론하고 모두 15필을 징수하거나 혹은 마첩을 징수할 뿐입니다. 책임 물어 납부할 때 말로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바이며, 류정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 마음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있어서, 그 피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데 이르니 이 어찌 류정이 나쁜 전례를 만든 바²⁹⁴⁾가 아니겠으며 엄격한 법에 대한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논계(論啓)²⁹⁵⁾하는 취지는 말을 징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고 나쁜 것은 참으로 육자(鬻子)를 겁박하여 인마를 기른다는데 있습니다. 실령 말을 징수하는 게 당연한 법이라 해도 참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기에 차마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하물며 그렇지 않은 바가 있겠습니까? 이는 죄가 아니지만 왕정의 누가 됨이 어찌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들에는 굶주린 자가 있는 것²⁹⁶⁾과 다르겠습니까? 이 일을 갑자기 들으니 비록 가깝지 않아도 전하는 말이 자자하니 다만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라도 신 등이 어찌 감히 의문의 일로써 힘써 떠들썩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겠습니까? 청컨대 사복검정 류정을 파직하고 서용치 않기를 바랍니다. 또 본 관아에 명령을 내려 차이가 나는 말에 대해 그 말을 내게 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되갚게 할 경우 잃어버린 말에 대해 징수하는 가격은 다시 옛 규례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병조에서 무신의 좌이(佐貳)²⁹⁷⁾

함. 사헌부지평, 봉상시정 등 역임.

293) 대전속록(大典續錄):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성종 22)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집 편찬한 법전. 육전(六典)에 관한 사실을 정리한 책. 이극중(李克增) 등이 편찬함. 1543년(중종 38) 대전속록 편찬 이후 약 50년간의 현행 법령 등을 수집 정리한 대전후속록이 편찬되자 대전전속록으로 불림.

294) 나쁜 전례를 만든 바: 작용(作俑).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하던 목우(허수아비)를 만든다는 뜻. 《맹자》(양혜왕 상)에 “공자가 말하기를, 처음 (순장에 쓰일) 나무 인형을 만든 사람은 그 후손이 없을리라(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라 함.

295) 논계(論啓): 대간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신하들의 잘못을 논박하여 보고함.

296) 출전: 《맹자(孟子)》〈양혜왕상(梁惠王 上)〉 “임금의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을 굶주리고 들에는 굶주려 죽는 시체가 있다(庖有肥肉 廐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殍).”

297) 좌이(佐貳): 6조의 참관과 참의를 아울러 이르던 말.

는 그 선발이 매우 중한데 어찌 사람마다 가벼이 제수하여 관례대로 제수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병조참판 류혁연(柳赫然)²⁹⁸은 제수한 후에 모두 합당치 않다고 물의를 빚으니 청컨대 교체하는 명을 내리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류정의 일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한 즉 마땅히 옳다. 재능을 드러내 자랑한다고 한 것은 타당치 않은 듯하다. 지금 대신의 말을 듣건대 자못 곡절이 있을 터 짐짓 먼저 추고하는 것이 【1자가 빠짐】가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조한영, 이경휘, 민유중, 류정, 대전속록, 제주, 류혁연.

298) 류혁연(1616~1680): 본관 진주(晉州). 자 회이(晦爾). 호 야당(野堂). 시호 무민(武愍). 1644년(인조 22) 무과 급제. 효종 때 이완(李浣)과 더불어 북벌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김수항(金壽恒) 등의 문신들로부터 탄핵을 받기도 함. 이후 어영대장, 공조판서, 한성판윤 역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숙청될 때 이에 연루되어 경상도 영해로 유배.

❖ 順治 十六年 己亥 閏三月 二十八日 戊子

- 上御熙政堂, 召對入侍. 領議政鄭太和, 左議政沈之源, 益興君洪重普, 江都留守徐元履, 參贊官李慶億, 持平李翊, 侍讀官李殷相, 檢討官任翰伯, 記事官孟胄瑞, 史官呂聖齊·鄭重徽. …… 太和曰, 小臣雖不入於白簡, 而本寺大小之事, 臣皆自斷, 何敢諉之於下僚, 而晏然行公乎? 臺論即爲允從, 則狼狽不至此甚, 而一邊論啓, 一邊行公, 全無顧忌, 不無後弊, 且世子會講不遠, 欲於明日, 行相會禮, 而臺評適發, 勢難冒出, 敢爲控辭矣. 大概臺論, 非失實也, 而聖批, 以不近爲教, 臣欲略陳曲折, 而有若爭辨者然, 事體未安, 故不敢矣. 臺論所謂法無微布者, 是矣. 以法論之, 則濟州馬外, 皆徵布矣. 前年箭串馬所放者五疋, 無置處, 而牧子則亦人也. 欲免其罪, 願爲立馬, 而其中尹新立稱名者, 曾亦用奸換馬, 見露之後, 未免重究, 故恐有如前嚴治之舉, 不待嚴督而代納矣. 其後柳頰, 見臣而言曰, 其中一人, 有鬻子買馬之說矣. 臣答以事甚矜惻, 而官納生徵之際, 誘以鬻子以納者, 皆可不捧乎? 不無後弊, 難於撓貸云矣. 上曰, 非謂臺論全然失實也. 鬻子之說, 似不近理, 故所以云云也. 法典雖有濟州馬代納之規, 而頃見濟州牧李蒼啓本, 則牧子徵馬者, 必以本色代立, 故至於鬻母以納, 比於鬻子, 尤慘矣. 事極寒心, 每欲言之耳. 且濟州馬品劣者, 皆由於本色馬代立之故也. 聞牧子等, 貿納於陸地以納云. 蓋緣不問其良, 惟取其色之致也. 太和曰, 牧子輩, 欲免其罪, 不以爲遺失, 故必以本色馬代納矣. 上曰, 自前不必以本色馬代納事, 累次分付, 未知其舉行也. 太和曰, 世子會講迫頭, 此時辭免, 事甚未安, 而【缺一字】官既被重論, 臣忝在首席, 何可晏然而已乎? 上曰, 【缺四字】其間曲折, 唯聞鬻子之說, 所可驚惻, 故【缺八九字】, 世子會講, 停止久矣. 吏判每以【缺十餘字】引入耶? 太和曰, 臣亦知其事勢之如此, 而【缺十餘字】侍必爲所以耶? 慶億曰, 兩司輪回而【缺數字】府當次, 故不入矣. …… 【以上燼餘】

❖ 孝宗 10年(1659) 기해년 윤3월 28일(무자)

□ 희정당 소대에서 류정(柳頰)의 일에 대해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와 논의함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신하들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는데,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심지원(沈之源), 익흥군 홍중보(洪重普)²⁹⁹⁾, 강화유수 서원리

299) 홍중보(1612~1671): 본관 남양(南陽). 자 원백(遠伯). 호 이천(梨川). 시호 충익(忠翼).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 급제. 1650년(효종 1) 수찬으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함. 도승지, 대사헌, 우의정 역임. 그는 정초군(精抄軍)을 조직하여 왕이 거동할 때에 호위하게 하였는데, 이는 숙종 때에 와서 금위영(禁衛營)으로 개칭됨.

(徐元履)³⁰⁰, 참찬관 이경억(李慶億), 지평 이익(李翊)³⁰¹, 시독관 이은상(李殷相)³⁰², 검토관 임한백(任翰伯)³⁰³, 기사관 맹주서(孟胄瑞)³⁰⁴, 사관 여성제(呂聖齊)³⁰⁵ 정중휘(鄭重徽)³⁰⁶가 입시하였다. <중략> 정태화가 말하기를, “소신이 비록 백간(白簡)³⁰⁷을 들이지 않았으나 본 관아의 대소의 일들은 신이 모두 결정하는데 어찌 감히 하급관리에게 맡겨서 느긋하게 공무를 집행하겠습니까? 대간의 논박은 남의 말에 따른 것인 즉 낭패가 이리 심한데 이르지는 않으나 한편으로는 논계(論啓)³⁰⁸요, 한편으로는 공무집행에 온전히 기피함을 돌아봄이 없어서 훗날의 폐단이 없지 않고, 또 세자 회강(會講)³⁰⁹이 멀지 않아 내일 하고자 하여 상견례를 거행하는데 대간의 논평을 맞닥뜨리니 형세가 이를 무릅쓰고 나아가기 어려워 감히 사임을 아뢰입니다. 대개 대간의 논박이 진실을 숨기는 것은 아니나 전하의 비답은 가깝지 않은 것으로써 교서를 내리니 신이 대략 옳고 그름을 진술하려해도 분별을 다투는 자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의 본체가 편치 않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대간의 논박은 이른바 법에 포를 징수함이 없다는 것이

300) 서원리(1596~1663): 본관 달성(達城). 자 덕기(德基). 호 화곡(華谷), 견지(見志). 1627년(인조 5)에 생원시에 장원, 뒤에 효종의 사부가 됨. 1636년 병자호란 뒤 볼모로 심양에 간 봉림대군(효종)을 모시며 신임을 얻음. 강화유수, 호조참판 역임. 과거를 거치지 않고 생원에서 관직에 등용, 호조참판까지 이르는 매우 드문 벼슬길을 걸음.

301) 이익(1629~1690): 본관 우봉(牛峰). 자 계우(季羽). 호 농재(農齋). 시호 문정(文貞).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1657년(효종 8) 알성문과 급제. 대사간, 이조판서 역임. 송시열이 사직할 때 함께 사직하였으며, 기사환국 이후 송시열이 사사될 때 장흥부로 귀양 가서 배소에서 죽음. 《수교집록(受教輯錄)》 편찬에 참여함.

302) 이은상(1617~1678): 본관 연안(延安). 자 열경(說卿). 호 동리(東里). 시호 문량(文良). 이정구(李廷龜)의 손자. 1651년(효종 2) 별시문과 급제. 대사간, 도승지 역임. 송시열(宋時烈)이 복상문제로 유배당하자 벼슬을 사직함. 김만중(金萬重)의 장인. 저서 《동리집》, 《동리소설》.

303) 임한백(1605~1664): 본관 풍천(豊川). 자 경익(景翼, 慶翼). 호 남곡(南谷). 1642년(인조 20) 식년문과 장원급제. 1644년 소헌세자가 심양에 볼모로 갈 때 함께 배종. 1659년(현종 즉위) 홍문관교리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함. 길주목사 역임.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지님.

304) 맹주서(1622~?): 본관 신창(新昌). 자 휴징(休徵). 1654년(효종 5) 식년문과 급제. 호조참의, 안동부사, 황해도관찰사 역임. 안동과 황해도에서는 선정관으로 칭송됨.

305) 여성제(1625~1691): 본관 함양(咸陽). 자 희천(希天). 호 운포(雲浦). 시호 정혜(靖惠). 1654년(효종 5) 정시문과 급제. 이조판서, 삼정승 역임. 소론 출신으로 남인과 여러 번 의견 충돌함. 남인들이 성혼(成渾), 이이(李珣)를 문묘에서 출향(黜享)하려 하자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출 소식에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림. 저서 《운포집》.

306) 정중휘(1631~1697): 본관 해주(海州). 자 신백(慎伯). 호 돈곡(敦谷). 1657년(효종 8) 식년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때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 경상도관찰사 재직시 왜구 방어 목적으로 성주(星州)에 독용산성(禿用山城)을 축조. 도승지, 경기도관찰사 역임.

307) 백간(白簡): 관리를 탄핵하는 상소문.

308) 논계(論啓): 대간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신하들의 잘못을 논박하여 보고함.

309) 회강(會講): 왕세자가 매월 두 차례 사부 이하 여러 관원을 모아 놓고 경서를 강론하는 것.

이것입니다. 법으로 논한다면 제주(濟州) 말 외에는 모두 포로 징수합니다. 지난해 전곶(箭串)의 말 잃은 것을 5필로 하여 다른 처리가 없었던 것은 목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면하고자 말을 내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윤신립(尹新立)이라 칭하는 자가 일찍이 또한 간교한 피를 써 말로 교환하여 혜택을 받은 후에도 엄중한 조사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날의 엄한 다스림의 시행과 같은 것이 있을까 두려워 엄한 감독을 기다리지 않고 대납했습니다. 그 후 류정(柳頌)이 신을 보고 말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이 육자가 말로 바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여 신이 답하기를, ‘일이 매우 불쌍하고 가여워 관에서 억지로 징수하여 거둘 때 육자가 거두도록 유도하면 모두 바치지 아니하겠는가? 훗날의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³¹⁰⁾보다 어렵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논박은 전연 진실을 숨기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육자의 말이 이치에 가깝지 않은 듯하기 때문에 운운한 것이다. 법전에 비록 제주 말은 대신 납부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괴(李膺)³¹¹⁾의 장계를 잠시 보면 목자가 말을 징수하는 것은 반드시 곡물로써 대신 내게 하기 때문에 육자의 어미에게 납부하도록 이르는 것은 육자에 비하여 더욱 참혹하다. 일이 매우 한심하여 이를 말하고자 할 뿐이다. 또 제주 말이 품종이 떨어지는 것은 모두 곡물로 말을 대신 내게 하기 때문에 연유한 것이다. 목자 등에게 들으니 육자에 말을 팔아 납부한다고 한다. 대개 말의 우량품을 묻지 않은 연유로 오직 곡물을 거두는데 다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정태화가 말하기를, “목자 무리들은 그 죄를 면하고자 하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곡물로써 말을 대신 내게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부터 꼭 곡물로 말을 대신 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누차 분부하였는데 그 시행을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태화가 말하기를, “세자 회강이 닳쳤는데 이 때 일을 보지 못하고 물러나 일이 매우 편안치 않습니다. 대간의 엄중한 논박을 이미 받았으니 신이 욕되게 맨 뒷자리에 앉아 어찌 태연자약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이에 곡절이 【4자가 빠짐】 다만 육자의 말은 놀랍고 측은한 바 그 때문에 【8~9자가 빠짐】하고, 세자 회강은 정지한 지 오래 되었다. 이조판서가 항상 【10여 자가 빠짐】으로써 끌어들어야겠는가?”라고 하였다. 정태화가 말하기를, “신 또한 일의 형세가 이와 같음을 알아서 【10여 자가 빠짐】 모셔 반드시 이런 까닭으로 삼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경억이 말하기를, “양사(兩司)에서 차례로 돌면서 【여러 글자가 빠짐】 순번의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들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310) 요대(撓貸): 요대(饒貸)와 같은 뜻인 듯하다. 요대(饒貸)는 ‘너그러이 용서함’의 뜻.

311) 원문에는 이회(李薈)라 되어 있으나 당대의 제주목사는 이괴(李膺)임.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회정당, 정태화, 심지원, 홍중보, 서원리, 이경역, 이익, 이은상, 임한백, 맹주서, 여성제, 정중휘, 제주, 전곳, 윤신립, 류정, 제주목사, 이괴.

❖ 順治 十六年 己亥 四月 二十日 庚戌

○ 下直, 旌義縣監金益基.

❖ 효종 10년(1659) 기해년 4월 20일(경술)

□ 정의현감 김익기(金益基)의 하직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익기(金益基)가 임지로 떠난다고 인사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6〉

△ 검색어: 정의현감, 김익기.

인명 색인

ㄱ

갑동 91
강승 42
강우혁 42
강항 207
구의준 142, 158, 167, 171, 174, 187,
188
권극중 109, 150
권대운 20
권우 191
기진홍 17, 18, 20, 37, 40
김곡 97
김대생 123
김려 84, 104
김림 143
김삼달 61
김서 97
김소 17
김수 112
김수익 25, 63, 68, 75, 79, 87
김수향 175
김식 91
김여량 61
김여수 27, 28, 30, 34, 41, 47, 49, 98,
135
김여운 33, 34, 37, 40

김예건 155
김익기 232
김익희 140
김자점 33, 47
김정현 40
김좌명 131, 140
김지성 191
김진 169, 171
김효성 97
김휘 213, 216, 217

ㄴ

남노성 145
남성 140
남중희 128, 129, 165
남해우 93

ㄷ

류정 227, 231
류혁연 227

ㄹ

맹주서 231

민유신 198
민유중 227

ㅅ

박경웅 97
박사명 61
박상준 123
박상질 143
박생 112
박서 79
박이립 97
변국한 212
변급 195, 199, 200

ㅈ

서원리 231
서필원 179
서형리 97
성진문 175
소동도 141, 168, 219
송규렴 140
송시열 37, 219
송시철 128
송지렴 157
신경호 73
신면 33
신준 140
신진익 22
신천익 18

신호 42
심노 162, 163
심대부 27, 28
심득행 72
심세정 20
심일준 42
심지원 140, 155, 219, 231

ㅇ

안여공 166
안집 29, 56, 57, 60, 63, 87
안충로 97
양적 27
엄정구 33, 74, 75
여성제 140, 166, 231
연향 224
오정위 191
우규 127
원두표 33, 51, 87, 131, 135, 139, 144,
155
유계 20
유심 93
유정익 22, 24
유창 161
유천기 97
유환처 45
유황 73
윤겸 72
윤선도 37, 40
윤신립 231
윤이지 79

윤전지 212
 윤정창 156
 이경억 80, 103, 171, 204, 231
 이경여 51
 이경휘 227
 이괴 201, 204, 218, 223, 231
 이기징 142
 이두양 194
 이민적 164
 이상달 201
 이상직 194
 이상진 223
 이석 159, 160
 이성휘 182
 이순 97
 이시만 33, 37
 이시방 118, 140, 184
 이시빈 191
 이시해 33
 이예남 147
 이완 140
 이우신 177
 이원진 29, 115, 126, 131, 134
 이은상 231
 이이준 33
 이익 231
 이익형 157
 이정기 106, 203, 218, 219
 이정영 27, 28
 이정현 97
 이지항 27, 28, 33
 이진행 45
 이탁남 97

이해관 195
 이해창 33, 59
 이행진 33
 이형익 49
 이후원 79
 임대직 152
 임의남 213
 임한백 231

ㄸ

장석 112
 장응일 44, 72
 정래창 175
 정명립 97
 정백순 42
 정사한 164
 정승명 37
 정언황 68, 70, 71, 72
 정유성 14, 140
 정중휘 231
 정태화 98, 118, 231
 조계원 76, 177
 조벽 97
 조빈 20
 조상주 215
 조석윤 46
 조정립 40
 조정황 53, 110
 조한영 182, 184, 227
 주훈복 112

국

최석우 140
최지남 178
최치강 87
최향남 99
최혜길 79
최호 175

홍

하진선 42, 224
한여윤 162

한정일 127
한진기 204
한홍일 134
허적 140
홍경우 97
홍명하 140
홍여하 140
홍우량 44
홍전 65, 66, 67
홍중보 231
홍처대 144
홍처량 27, 28, 174
황인서 177
황호 33

역 주 자

홍 기 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김 일 우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소장 · 이사장
백 종 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 창 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제주역사 자료총서 3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I

- 孝宗代 -

발행인 강 기 춘
발행일 2017년 6월 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 (064) 726-5623 팩스 : (067)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일신옵셋인쇄사 TEL. (064) 758-1500

ISBN : 978-89-6010-549-2 93090

- 이 책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